

대학원 세션

“93년생 한·여·컴”:  
세대와 영역을 넘어선  
이립<sup>而</sup>立<sup>立</sup>과 도약

**일시** 2023년 4월 8일(토) 11:40~18:00

**장소**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주최/주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후원** 한국방송공사 **MBC** **EBS**  **Timing4All**  **SK telecom**  **posco**  **포스코이앤씨**  **E**  **CJ**



#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0주년 기념 봄철 학술대회

## “93년생 한·여·کم”: 세대와 영역을 넘어선 이립(而立)과 도약

■ 일 시 : 2023년 4월 8일(토) 11:40~18:00

■ 장 소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11:40~12:10	등록 및 안내(행사장 입구) 개 회(302호)					
12:10~12:25	[학회장 인사] 홍지아(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조직위원장 인사] 김수정(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학술대회 조직위원장)					
12:25~12:30	세션 준비 및 이동					
장 소	세미나실(302호)	세미나실(309호)	세미나실(404호)	세미나실(405호)	세미나실(406호)	세미나실(111호)
	<b>후원세션1(KBS)</b>	<b>후원세션2(MBC)</b>	<b>후원세션3(EBS)</b>	<b>대학원 세션 (A-1)</b>	<b>대학원 세션 (B-1)</b>	<b>총서세션</b>
	사회: 김훈순(이화여대)	사회: 백미숙(서울대)	사회: 정인숙(가천대)	사회: 최선영(연세대)	사회: 조연하(이화여대)	사회: 박동숙(이화여대)
	1. KBS 역사드라마의 변용과 변화: 1964~2022 발표: 주창운(서울여대)	1. 옥야멘토링 프로그램과 FREAK SHOW 발표: 문현영(육군사관학교) 토론: 김현경(서울여대) 이실희(용인대)	1.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ESG 실천방안 모색 발표: 우형진(한양대)	1.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이렉트 시네마와 한국 다큐멘터리의 재현 방식과 차이: 장 피에르 다르렌, 내일을 위한 시간 <2014>, 임흥순 - 위로공단 <2015>을 중심으로 발표: 최선희(고려대 박사과정) 토론: 강신규(한국방송통신대)	1. 디지털 유해 콘텐츠 차단에 대한 국내외 해외의 비교분석 연구 발표: 임세린(고려대 박사과정) 토론: 이영희(한양대)	집필진: 강혜원(성균관대) 김은진(부산대) 문현영(육군사관학교) 박소영(중앙대) 이소현(상명대) 이희은(조선대) 정영희(고려대) 최은경(한신대) 최이숙(동아대) 한희정(국민대) 홍지아(경희대)
	2. 드라마 <연모>의 트랜스아이덴티티 서사와 윤리적 주체의 탄생 발표: 신정아(한신대)	2. 오은영의 '진단' 서사와 수용에 담긴 전문가성과 자기통치 프레임의 해체: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유튜브 채널 댓글 텍스트 분석 발표: 이종명(강원대) 토론: 박지영(서울대) 유지윤(아신대)	종합토론: 김선미(고려대) 신삼수(EBS) 이지은(법무법인세중) 이혜미(한국콘텐츠진흥원) 정수영(MBC)	2.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일본인의 드라마 시청 태도 연구 : 애플 TV '파친코'를 중심으로 발표: 서예경(고려대 석사과정) 토론: 하효숙(협성대)	2.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실현: 기사 삭제, 열람 차단의 법제화를 위한 개념 정의 및 제안 발표: 김미라(고려대 박사후) 토론: 정지영(이화여대)	
제1세션 12:30~14:00	종합토론: 김수미(고려대) 윤복실(서강대) 윤재혁(KBS드라마센터) 이중수(한양대)			3. 한(韓) 중(中) 민주주의 콘텐츠에서 재현된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 환상 주제분석(FTA)을 중심으로 발표: 왕이닝(한양대 석박사 통합과정) 토론: 김형신(고려대)	3. 디지털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분석 및 비판적 고찰 발표: 고재은(고려대 석사과정) 토론: 곽현자(방송통신위원회)	
14:00~14:15	휴 식					
	<b>커뮤니케이션-젠더연구회 세션</b>	<b>뉴미디어연구회 세션</b>	<b>미디어비평연구회 세션</b>	<b>대학원 세션 (A-2)</b>	<b>대학원 세션 (B-2)</b>	
	사회: 이경숙(고려사이버대)	사회: 손승혜(세종대)	사회: 정영희(고려대)	사회: 정희경(서울미디어대학원대)	사회: 배진아(공주대)	
	1. 유튜브에서의 수행적 커뮤니티의 작동 방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운동 인플루언서 '몸 만들기' 담론을 중심으로 발표: 강혜원(성균관대) 토론: 김성은(군산대) 한희정(국민대)	1. 메타버스 성범죄 위험 해석: 제페토의 여성 청소년과 성인 이용자 비교 연구 발표: 박소영(중앙대) 토론: 나은희(한국외국어대) 조은영(채널A)	1. 웹소설 수용에 나타난 사랑의 표상 발표: 김수아(서울대) 고윤경(서울대) 토론: 김수정(중앙대) 정수경(국제법률경영 대학원대학교)	1. '신당역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싼 여성 혐오 표현 분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핫게시물 중심으로 발표: 이시윤(고려대 석사) 토론: 윤호영(이화여대)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박차림(고려대 박사과정) 토론: 김희경(미디어매우연구소)	
	2. "고민 없이 맛있는 식탁을 차려보세요" 푸드 콘텐츠 크리에이션 플랫폼 이용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개인화, 미학화, 젠더화 차원에서 이용자 크리에이션 사례 분석 발표: 김지현(한양대) 토론: 김재희(모자이크연구소) 장은미(서강대)	2. Data로서 공영방송 뉴스 영상 아카이브의 새로운 도전, 변화의 시작 발표: 현기택(MBC) 토론: 조수선(대진대) 최효진(한국외국어대)	2. 표층어 말소리의 변화: 남녀 아나운서의 운율 변화 발표: 이나라(고려대) 토론: 김지은(숙명여대) 이희은(조선대)	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SBS <골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제능> 축구 편을 중심으로 발표: 이혜선(서강대 박사후) 토론: 김지원(단국대)	2. 조직 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연구: 재택근무 정책의 특성을 중심으로 발표: 최예슬(고려대 석사) 토론: 조윤경(가천대)	
제2세션 14:15~15:45				3. 뉴스 정적적 차원의 읽기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함양 발표: 정선임(서강대 박사과정) 토론: 이숙정(중앙대)		
15:45~16:00	휴 식					
	30주년 기념 대주제 세션(131호)					
제3세션 16:00~17:40	1부. 있다: 1993년부터 2023까지 - 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박동숙 위원장 인사말 - '있다' 프로젝트 릴레이 인터뷰: 윤희중(이화여대), 진행: 유세경(이화여대) 2부. "93년생 한·여·کم": 세대와 영역을 넘어선 이립(而立)과 도약 사회: 정기현(한신대) 발표: 유선영(전 성공회대) 종합토론: 김경희(한림대), 김숙(컬처미디어랩), 김지희(서울대), 이동후(인천대), 이윤소(여성민우회)					
17:40~17:50	폐 회					
17:50~	<30주년 기념식> 및 만찬(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워커히 힐)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0주년 기념 봄철 학술대회

**제1세션**  
**12:30-14:00**

**405호**

**대학원 세션 (A-1)**

---

사회 : 최선영(연세대)

- 1.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시네마와 한국 다큐멘터리의 재현 방식과 차이 :**  
장 피에르 다르덴, 내일을 위한 시간 <2014>, 임흥순 - 위로공단 <2015>을 중심으로  
발표 : 최선희(고려대 박사과정)  
토론 : 강신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일본인의 드라마 시청 태도 연구 :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를 중심으로**  
발표 : 서예경(고려대 석사과정)  
토론 : 하효숙(협성대)
- 3. 한(韓) 중(中) 민족주의 콘텐츠에서 재현된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 :**  
환상주제분석(FTA)을 중심으로  
발표 : 왕이닝(한양대 석박사 통합과정)  
토론 : 김형신(고려대)





#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이렉트 시네마와 한국 다큐멘터리의 재현 방식과 차이 : 장 피에르 다르덴, 내일을 위한 시간 <2014>, 임흥순 - 위로공단 <2015>을 중심으로

최선희(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 국문초록

영화 탄생의 첫 메타포는 노동과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노동은 수세기 동안 전개해 온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대상이 되어왔다. 노동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 수단 혹은 성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노동 현장을 영화적 현실 공간으로 설정하는 노동 영화(labour films) 중, 벨기에 출신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Jean-Pierre Dardenne)과 룩 다르덴(Luc Dardenne)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Deux jours, une nuit)>(2014)과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위로공단>(2014)을 소환하여 노동에 대한 논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각 영화 속 인물에 집중하여, 메타포 적인 방식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재현해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하는 인간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개념을 차용하여 두 영화의 노동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다르덴 형제<내일을 위한 시간>, 노동자 영화, 한국 다큐멘터리,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임흥순 <위로공단>

## I. 들어가며-영화적 현실 공간, ‘노동의 장’

영화는 탄생의 순간부터 노동과 노동자의 이미지에 크게 매혹되어 노동의 모습을 담아 왔다. 필름카메라이자 인화기, 영사기이기도 한 시네마토그래프의 발명을 통해 최초의 영화를 제작 상연한 루미에르

형제의 예에서도 노동은 수세기동안 전개해 온 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1895년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뤼미에르 형제는 최초의 영화로 기록된 작품들을 상영했는데 그중에는 도시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한 꺼번에 퇴근하는 모습을 담은 <공장을 나오는 사람들>(1985년)은 단 일 분 밖에 되지 않은 영상이지만 공장에서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대의 새로운 노동 양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퇴근 후 여가 시간을 갖게 된, 그래서 영화의 잠재 관객이 된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준다.<sup>1)</sup> 다큐멘터리의 전통을 구성하고 있는 영화들은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

특히나 다큐멘터리는 운동 뿐 아니라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sup> 빌 니콜스의 "모든 영화는 다큐멘터리다"<sup>3)</sup>라는 주장과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의 "모든 영화는 픽션영화다"<sup>4)</sup>라는 말은 일견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다르지 않다. 극영화에도 일정한 다큐멘터리 서사가 존재하고, 다큐멘터리에 어느 정도의 극화가 용인되기도 한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범주들은 경계가 모호"<sup>5)</sup>한 것만큼은 명확하지만, 이 둘 사이의 배합 비율에 따라 수많은 변형된 서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다르텐 형제는 시멘트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해 마련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주택단지, 파업현장, 공장들을 돌며 카메라로 그 현실에 개입하는 것이 의무라고만 생각해 이후 수십편이 넘는 비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 후 극영화를 제작하는데 이 역시 그들의 '리얼리즘'적 다큐멘터리에서 극영화로 넘어오면서의 발전되는 요소를 표현한다.<sup>7)</sup> 임흥순은 설치미술가 출신의 감독으로 극영화적인 미장센과 편집기법의 적극적으로 차용한 실험영화의 미학적 관습을 공유<sup>8)</sup>한다. 개인으로서 여성노동자의 사적(동시에 공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 천착하는 극영화나 다큐멘터리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노동은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특히 현실의 포착에 천착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100년 넘게 우리 삶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포착해왔다.

노동자의 역사는 한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끝없는 연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종류는 더욱 정교화된 용어로 나타난다. 그 종류로는 단순 노동자로 시작하여 감정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돌봄 노동자,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산재 노동자에 이어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언어가 탄생되었다. 노동자를 수식하는 용어만으로도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노동자는 과거부터 현재, 나아가 미래사회까지 연결되는 삶 자체인 단어인 것이다. 이렇듯 노동자는 현대인의 삶을 직설적으로, 내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단초가 된다. 헬무트 슈나이더(Helmuth Schneider)

1) 조혜영, 「노동의 기록과 미학화된 카메라: 2010년대 한국 노동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9권 1호, 2016, 274쪽.

2) 빌 니콜스 저,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2005, 27쪽.

3) 위의 책, p. 65.

4) 크리스티앙 메츠·기이 고티에 저, 김원중·이호은 역,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53쪽.

5) Carl Plantinga, Rhetoric and Representation in Nonfiction Fil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2쪽.

6) 프랑수아 니네 저, 조하림·박희태 역,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와 그 아류들』, 예림기획, 2012, 67쪽.

7) 씨네 21 No. 441. [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591](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591)

8) 최소망·강승목,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와 〈위로공단〉의 한국 여성노동자 타자화」, 씨네포럼 제27호, 2017, 225쪽.



에 따르면, 노동하는 인간의 표상(volstellung)은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 행위인 노동의 결과로 구현된다.<sup>9)</sup> 이는 노동이 인간 삶의 재생산을 보장한다는 점과 노동의 발전이 사회·경제·문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류의 역사를 노동의 역사로 대치한 해석이다. 노동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 수단 혹은 성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노동 현장을 영화적 현실 공간으로 설정하는 노동 영화(labour films) 중, 벨기에 출신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Jean-Pierre Dardenne)과 룩 다르덴(Luc Dardenne)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Deux jours, une nuit)>(2014)과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위로공단>(2014)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노동에 대한 논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각 영화 속 인물에 집중하여, 메타포 적인 방식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재현해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영화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미와 이미지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살피는 것은 앞으로 다가 올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통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르덴 형제가 영화에서 소환한 노동 현장과 임흥순 감독이 표현하는 노동의 관점을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시점에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영화는 노동자에 대해 노동의 역사,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돌봄의 대상 등 정형화된 인물로 재현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를 다루는 두 개의 재현양식, 영화로서의 <내일을 위한 시간>과 다큐멘터리적 접근방식을 보이는 <위로사회>의 작품 재현 방식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노동자 중심 작품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재현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노동하는 인간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문명은 태초부터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왔다. 과거의 사냥과 채집활동에서부터 농부, 장인, 현재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핵심적 부분을 위해 존재해 왔다.<sup>10)</sup> 이러한 노동에 대한 이미지는 수많은 문화 매체들이 소재로 차용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보편적인 주제가 된 지 오래다. ‘노동’에 대해 터부시하던 주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본질적 특징이 되었고, 호모 사피엔스 대신에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가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었다.<sup>11)</sup> 호모 라보란스는 노동하는 인간을 뜻하며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의

9) 김소영, 「다르덴 형제의 영화적 현실 공간, ‘노동의 장’에 나타난 변증법적 헤게모니: <로제타>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90호, 72쪽.

10) 제러미 리프킨 저, 이원기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5, 59쪽.

11) 손철성, 「노동의 종말과 호모 라보란스의 위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236쪽.

문제는 칼 마르크스(Karl H. Marx)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은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입장과 노동행위가 계급권력 속에서의 사회에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계론을 제시하였다.<sup>12)</sup> 마르크스가 말한 호모 라보란스 측면은 노동행위에 대한 경계의 측면을 드러낸다.<sup>13)</sup>

노동자는 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고, 그가 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면 낼수록 그 자신은 그만큼 무가치하고 시시한 것이 되고, 그 생산물이 문명적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더 야만이 되고, 노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노동자는 무력하게 되고, 노동이 지적이 되면 될수록 노동자는 지성이 결여된 것이 되어 자연의 노예가 된다. 분명히 노동은 부자를 위해서는 놀랄만한 작품을 생산하지만, 노동자 자신에게는 결핍을 생산한다. 그것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움막을 생산할 뿐이다. 그것은 미(美)를 생산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불구를 생산한다. 그것은 노동 대신 기계를 생산하지만 노동자의 일부는 야만스런 노동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다른 일부를 기계로 만든다. 그것은 정신을 생산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정신박약과 크레틴병(cretin 炳: 신체발육부전과 정신지체 증상)을 생산한다.

위의 인용문은 수동적인 노동자의 역할과 노동 환경 안에서 구속된 노동자 존재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은 생존을 위한 육체적 소비임과 동시에 자아를 사회와 세계 속에 참여시켜 삶의 부여하는 능동적 역할을 가지기도 한다.<sup>14)</sup>

다르덴 형제의 <내일의 위한 시간>과 임흥순의 <위로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에 구속된 노동자의 수동적 입장이다. 그들은 매일, 매달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은 무력하게 되어, 결국 실업의 소식을 듣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는 무력감에 굴복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의 의미를 보여준다.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의 노동조건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의 위한 시간>과 <위로사회>에서는 한나 아렌트(Hanna Arendt)의 노동의 확장된 의미와 의도를 공유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인간의 근본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짓고 노동을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상응 활동으로 간주하며 노동은 곧 삶 자체라고 일컫는다. 작업 역시 인간실존의 형태로 되풀이되는 생활주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행위는 인간 사이에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으로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구와 동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이를 인간 행위의 조건인 다

12) 안승범, 「다르덴 형제 영화에서 '노동'의 의미와 형식미학」, 제12권 9호, 2012, 97쪽.

13) 칼 마르크스, 김문헌 역, 경제학·철학초고/자본론/공산당선언/철학의 빈곤, 동서문화사, 1994, 67-68쪽.

14) 김소영, 「다르덴 형제의 영화적 현실 공간, '노동의 장'에 나타난 변증법적 헤게모니: <로제타>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90호, 78쪽.

원성으로 보았다.<sup>15)</sup>

사회화된 인류는 오직 한 가지 이해관계만이 존재하는 사회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의 주체는 단일의 인간이나 복수의 인간이 아닌 복수의 계급 또는 인류이다. (중략) 반면에 우리는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 노동을 제거하는 것이 더 이상 유토피아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노고와 고통을 완화시키는 길을 발견하여 그 천재성을 입증해 보였다. 왜냐하면 지금조차도 노동은 장차 살게 될 세계에서 행할 것이나 생각할 것을 나타내는 너무나 당당하고 야심에 찬 단어이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노동하는 인간 호모라포르انس에서의 노동을 활동적 삶의 근본활동이자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라고 규정한다. 다만 아렌트는 노동을 절대화되거나 단일한 활동일 아닌 인간의 활동양식을 세 차원의 공존성을 주장한다. 주지하자면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은 노동행위에만 침착해서는 안되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한 노동이 필요하며 자신의 세계가 필요하며,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노동은 필연성이지만 그 다음에는 작업이 존재하고 이후 행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렌트가 마지막에 두 작품에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연대의식을 의미한다.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의 해고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연대가 중요시 되다면 〈위로사회〉에서의 연대는 단합적 연대를 포함한다.

사실상 두 작품에서는 큰 틀에서 일차원적인 노동에서 확장되어 개인의 정서적 독립과 단체적 연대를 통한 위로를 통해 성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들은 노동의 주체로 용인하기 위한 두편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비대중적 상업 영화에서 노동의 재현은 아주 조심스럽거나 더 정확히는 다루는 것조차 꺼려지는 일이었다. 사정이 이리하다 보니 영화연구에서 여성 노동과 그 재현의 쟁점은 주류 연구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sup>16)</sup>

영화에서는 캐릭터를 구분 짓는 일차적인 요소는 외양이지만 개성을 드러내는 특성, 내적 자질도 중요하다.<sup>17)</sup> 캐릭터의 특성은 영화 속 다른 캐릭터와 구별되는 기준이다. 성별, 연령, 옷차림, 체격 등 신체적 특성은 관객에게 일차적으로 지각되는 기표이자 외형의 도상을 통해 캐릭터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다. 도상 기호로만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이보충된다. 심리적 특성은 정서, 감정, 욕망 등 캐릭터의 내면을 강조하는 지표다.<sup>18)</sup> 캐릭터의 사회적 위치, 계층, 역할, 학력, 인간관계 등을 이해시키는 요소다. 이러한 요소들은 영화의 캐릭터를 유형화하는 기준으

1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2006, 390-391쪽.

16) 강나영, 「전후 한국영화의 여성 기사노동 재현과 시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 *현대영화연구*, 46호 2022, 24쪽.

17) 이상진, *캐릭터, 이야기 속의 인간*, 에피스테메, 2019, 26쪽.

18) 권지현, 「영화에 나타난 노인 캐릭터의 재현방식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3호, 2020, 3쪽.

로 활용되기도 한다.<sup>19)</sup> 다큐멘터리의 경우 제작자는 타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어떤 주제나 쟁점, 어떤 사람들이나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의식은 그러한 노력에 공정 중요성이라는 외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곧, 어떤 사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스토리 전개나 시적 분위기 조성, 내러티브의 구축을 포함하는 일이다. 모든 다큐멘터리가 이러한 자세를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통적인 구성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I speak about them to you)”라는 표현이 제작자, 대상, 관객 간의 삼자 관계를 표현하는 공직의 특징이자 “그것은 그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It speaks about them or it to us).” 는 화자와 관객간의 분리를 배반한다. 결국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거나 알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20)</sup> 영화는 노동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한다. 하지만 영화가 재현한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달리 말하자면, 노동자를 규정하는 사회의 고정관념들이 영화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자의 고정관념은 영화의 캐릭터를 통해 대중에게 재인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살펴볼 <내일을 위한 시간>의 노동 현장에서 드러나는 노동과 노동자의 양상을 통해 호모 라보란스적 측면에서의 노동자의 의미를 소환해 보고자 한다.

### III. <내일을 위한 시간>의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 자기화, 수용, 인내, 극복

노동자에 대해 네 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독이 있다. 프랑스 영화감독 형제인 장 피에르 다르덴과 뤽 다르덴이다. 다르덴 형제는 주택단지, 파업현장,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현실 개입을 의무로 여겼다.<sup>21)</sup> 그들은 칸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면서 이들 형제의 영화의 특유한 구성과 주제에 관심을 환기시킨다.

다르덴 형제의 아홉 번째 장편 영화인 <내일을 위한 시간>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세계의 비참(La misère du monde)(1993)에 포함된 미셸 피알루(Michel Pialou)의 「대표자의 혼란」에 나온 실제 사건을 각색한 작품이다.<sup>22)</sup> 노동자 재현의 아포리아에 직면하는 것이기도 한다. <내일을 위한 시간>의 원제는 Two days one night으로 번역하면 ‘1박 2일’으로 ‘시간’을 강조한다. <내일을 위한 시간>에 등장하는 노동자 열여섯 명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신분을 지닌다. 이 영화는 노동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개체적 노동자인 산드라에게 얽힌 동료인 노동자들, 중간 관리인, 고용주인 사장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관계를 조명한다. 산드라(마리옹 꼬띠아르 역)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

19) 권지혁, 「영화에 나타난 노인 캐릭터의 재현방식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3호, 2020, 50-70쪽.

20) 빌 니콜스 저,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2005, 47-55쪽.

21) 씨네21, 장 피에르 다르덴 (Jean-Pierre Dardenne), [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591](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591)

22) 김소영, 「다르덴 형제의 영화적 현실 공간, '노동의 장'에 나타난 변증법적 헤게모니: <로제타>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90호, 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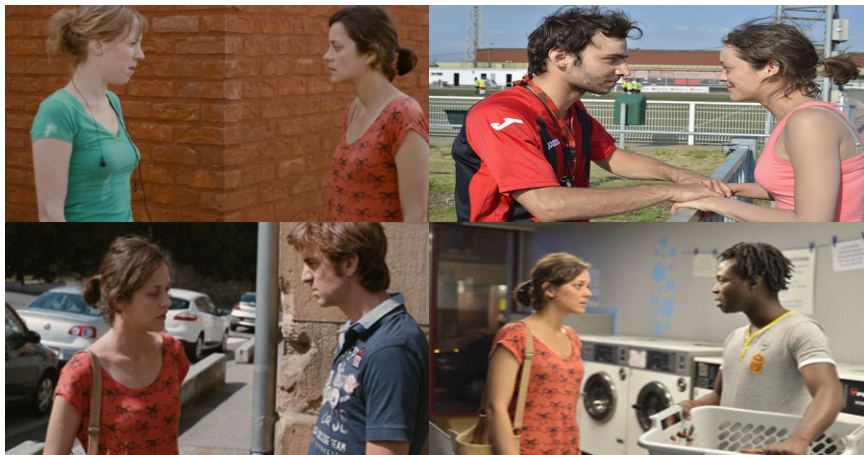
을 꾸리고 있다.

그녀의 직장은 태양광 전지의 유리판을 만드는 공장이다. 산드라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복직을 신청하지만 사장은 그녀 없이도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사실에 공장 동료들에게 비인간적인 투표를 부치게 한다. 바로 보너스와 그녀를 양자택일에 두는 것이다. 1000유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해고된 산드라는 좌절감과 비참함에 더욱 더 메말라간다. 동료의 복직보다 보너스를 택한 사람들의 속상과 태도는 천차만별이며 그들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 산드라는 이 과정에서 사람으로 인해 모멸감을 느끼고 사람으로 인해 격려를 받으면서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성인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산드라가 처한 상황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최윤경(2017)은 <내일을 위한 시간>과 한국의 영화 <카트>를 비교하면서 굴욕을 내면화 한 산드라의 우울증에 주목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연대하기 어려운 노동자 사이의 젠더적 차이와, 그 차이를 주조하는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sup>23)</sup>

영화에서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이 아닌 3박 4일의 시간이 흐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목을 1박 2일이라고 한 것은 산드라의 복귀에 대한 재투표가 결정된 금요일과 투표를 한 월요일보다 우울증과 과반수 투표와 맞서 싸운 주말이라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영화 밖에서 시작되는 산드라의 새로운 한 주는 더 이상 오늘이 아닌 내일일 것이다.

**<그림 1> <내일을 위한 시간> 해고 이후 산드라의 행동 재현들.**

**복직을 위해 동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자기화, 수용**



카메라의 움직임은 곧 영화 속 세계의 움직임이다. 영화 속에서 이유 없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존재해 서는 안되고 존재하지 않는다. 산드라의 복직이나, 보너스의 지급이나를 선택하는 과정은 민주적인 방

23) 최윤경(2017), 「한국과 프랑스 영화에 나타난 연대 찾기 비교 연구: <카트>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2017년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학술자료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39-50쪽.

법인 투표로 결정된다. <그림 1>에서처럼 산드라는 자신의 복직을 위해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를 인정받았고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내일을 위한 시간>속의 영화 내 공간은 주인공 인물이 처한 내적인 상황과 연관을 맺으면서 노동자의 권리 이행의 쫓는다. 산드라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개인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화를 이행한다. 개인의 공간은 삶의 의지나 희망이 결여되고 오로지 식사와 수면이 구현되는 일상의 공간을 포착한다. 다소 유약한 형태의 산드라에게 노동은 생존 욕구 그 이상을 의미한다. 즉,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 주인공 산드라에게 노동자의 함의는 고용주의 노동자간의 권력 관계에서 말하는 수동적 노동자 모습, 종속된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전자의 노동자가 수동적 피지배계층으로 등장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산드라는 무력감을 극복한 자기 수용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인내를 통한 담대한 사회화를 거친다.

여보, 우리 잘 싸웠지?

나 행복해

**<그림 2> 회사의 복직 제안을 거절한 후 회사를 나오는 산드라  
유약했던 개인의 모습에서 인내를 통한 자기 극복**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온 산드라가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마지막 대사는 그녀가 해고 이후의 산드라의 단단함을 보여준다. 카메라와 멀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핸드헬드지만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그림 2>에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두 갈래의 갈림길 중에서 왼쪽으로 향한다. 차를 타지 않은 채, 타이어 자국이 많은 오른쪽 길이 아닌 왼쪽 길로 혼자 뚜벅 뚜벅 걸어간다. 그녀의 세계는 좀 더 단단하게 굳혀졌다. 영화 속에는 많은 대립이 존재한다. 의무론과 목적론의 대립, 인간과 자본의 대립, 평등과 자유의 대립.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번쩍 들지 않은 않는다. 그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켜준다. 사회 속에서 잊으며 살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것, 산드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지켜낸 것,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존엄'과 '희생'이란 것을 끄집어낸다. 자본 앞에 의지할 곳은 오로지 인간의 인간성과, 존엄, 승고를 보여준다.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 산드라의 모습은 노동자의 유연화된 개인화를 구체화시키기

도 한다. 안상원(2018)은 〈내일을 위한 시간〉 속의 유연화된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가 어떻게 불안과 탈진 속에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전망에 주목한다.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상실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이는 산드라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간의 관계 재구축과 윤리적 선택을 취하는 개인화를 조명하면서 결국 우리사회 전반에서 반복되는 윤리와 도덕 등의 영역에서의 문제 제기는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내일을 위한 시간〉을 연대에 초점에 맞춰 살펴본 최윤경(2018)은 노동자 개인이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약해지면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익과 윤리적 책임의 선택에 대해 다루면서 오늘날의 연대가 가능한 것이지에 대해 유의미한 성찰을 제기한다. 개인 노동자가 타인의 협력을 구하며 연대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회복해 나가고 개인들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 조율을 중시한다.<sup>25)</sup>

다르덴 형제는 결국 주체적 결정을 하는 산드라를 통해 노동자의 위상에 변형을 가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료 알퐁스가 자신의 복직을 위해 투표해준 사실을 알고,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와 자신의 복직을 맞바꾸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지지해준 행위에 대한 배려이자 공생을 위한 선택이며, 이는 다르덴 형제의 여러 영화들에 나타난 타자를 향한 윤리성과 맞닿아 있다. 이는 아렌트가 강조한 인간의 조건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의 활동은 생명의 조건에 필요하고 작업의 활동은 세계성의 조건에, 행위의 활동은 다원성에 조건에 부합한다. 노동은 결국 인간의 유일한 활동이 아니라 다른 여러 활동 양식들 중에 일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말해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sup>26)</sup>

다르덴 형제는 이러한 아렌트의 성찰을 환기시키며 작품세계 속의 현실을 예리하게 재단하였다. 그들의 촬영 기법은 다큐멘터리 시네마 기법의 촬영에 속하는데 다큐멘터리 시네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현실의 외관 뒤에 존재하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영화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다르덴 형제는 극영화로 전향한 이후에도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감정의 오묘함과 심리의 복잡함을 카메라와 현장의 사운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면서 다큐멘터리 시네마의 특징적 촬영 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영화의 엔딩샷은 세계로 나아가는 산드라를 향한 관객의 동반자적 시선과 연결된다. 산드라의 마지막 대사는 그녀가 주체적 개체이자 자아로 변형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결국 산드라는 전화 한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자기화의 과정과 어려움의 극복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저항을 자기 인내를 통한 내면의 극복의 형태로 호모 라포란스를 소화해 내었다.

24) 안상원, 「교양교과에서의 노동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제8집, 2018, 112쪽.

25) 최윤경, 「영화에 나타난 연대의 추구 비교 연구 - 〈카트〉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문화회, 74권, 290쪽.

26)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2006, 35-38쪽.

27) 박희태, 「픽션으로 다큐멘터리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 - 〈클라스〉 분석을 통해 살펴 본 허구와 실제의 경계」, 영상문화, 20, 2012, 211-212쪽.

#### IV. <위로공단>의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 집단화, 연민, 위로, 연대

최근 몇 년 사이 동시대적 경향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들이 양적으로 축적되었다.<sup>28)</sup> 다큐멘터리에 독립이라는 표현을 칭하거나 독립 영화 내지 독립 다큐멘터리라 일컫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거친 역사적 아픔으로 인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거의 존재하지 못한 까닭이다. 1980년대부터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는 미중 생존권 투쟁의 현장과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중영화’, ‘노동자 영화’로 불리며 사회운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다.<sup>29)</sup> <위로공단><sup>30)</sup> 역시 하나의 예시적 독립 다큐멘터리로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기억을 다룬다. 시간 순으로 보자면 동일방직, YH무역 농성, 구로동맹파업에 이어 기륭전자, 한진중공업,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 캄보디아 유혈사태, 그리고 다산 콜센터와 항공사 승무원, 대형마트 직원의 문제까지 폭 넓게 전개된다. 사건 당사자의 인터뷰, 실제 사건 영상, 그리고 작가의 상징적 장치들이 어우러지면서 전개되는데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국면들을 조명한다.

내러티브는 기승전결식이 아닌 아카이브적인 연대기의 에피소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과거와 현재의 다르지 않는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보여주면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여성 노동자 22인의 인터뷰와 관련된 실험적 영상으로 구성되었다.<sup>31)</sup>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목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진실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여겨진다. 빌 니콜스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내레이션, 직접성과 즉시성을 통해 리얼리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시네마 베리테(cinema verite), 즉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 혹은 연출자가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 대상에 대한 연출자의 인식 및 미학적 관점을 반영해 사건과 진실을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sup>32)</sup>

<위로공단>은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모했지만, 과거 공장 속의 여공1, 여공2는 현재의 빌딩 숲 속 미생1, 미생2로 이름만 바뀐 모습을 전달한다.<sup>33)</sup> 나이키 공장에서 일해도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수 없었던 어제의 그녀와 슬퍼도 웃어야만 하는 감정 노동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오늘날의 노동자까지 40여 년을 아우르는 이들의 과거와 현재가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진다.

28) 이도훈, 「말들의 효력 혹은 위력: 인터뷰 중심의 독립다큐멘터리에 대하여」, 오쿨로 편집동인, <http://www.okulo.kr/2017/03/critique-001.html>

29) 박희태, <영화의 역사: 독립다큐멘터리>

30) <위로공단>은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은사자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주목할 점은 ‘미술전’에서 상을 수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로공단>은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던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전체에 미술적인 감각과 분위기가 곳곳에 잘 어울려져 있다. 실제로 미술전시회에서 <위로공단>은 다큐멘터리 전체가 상영되었고 미술관에서 영상물 전체가 상영되었다.

31) 이선주, 「삶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미적 실험: <위로공단>」, 현대영화연구, 23호, 2016, 163쪽.

32) 빌 니콜스 저,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2005, 167-210.

33)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A/06265#>



임흥순 감독은 미술감독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는 “미술이든 영화든,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서양화에서 시작해 커뮤니티 아티스트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오게 된 데에는 그러한 고심이 내 작가 인생을 전반적으로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의 영역은 모호해졌지만 내 작품들의 주제는 선명해졌다.”<sup>34)</sup>과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특정 관점에서 그 쟁점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행인 가족생활, 사회 복지 등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바로 그 영토 위에 우리를 끌어 들인다.

빌 니콜스가 “언어가 주제에 부여하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시각적 청각적 재현을 부여하는가에 있다”<sup>35)</sup>고 했듯 임흥순 감독은 자신의 인생의 메타포를 기저로 하나의 미학적 전개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40년 넘게 봉제공장의 ‘시다’로 생활을 해 왔고 백화점 의류매장,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을 해 온 여동생의 삶으로부터 영감 받은 작품이다.<sup>36)</sup> 어머니와 여동생의 가족사로 시작해 ‘대안적 역사쓰기’로서의 여성 노동운동을 쓰고 있는 이 해체와 확장의 작업을 기존의 한국 독립 다큐의 역사와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림 3〉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브릿지 / 감옥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들



〈위로공단〉은 극영화적인 미장센과 편집기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실험영화의 미학적 관습을 전유하는 서사구조와 영상재현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식적 장치들과 이질적 재료들을 배합하면서도 이것들을 공적 역사에서 억압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안적 역사서술과 아카이빙<sup>37)</sup>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38)</sup> 〈위로공단〉의 다양한 아카이빙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을 시대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노동자의

34) SBS인터뷰, ‘위로공단’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영화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020152](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020152) 2015.08.25.

35) 빌 니콜스 저,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2005, 121-127쪽.

36) 위로공단, <https://librewiki.net/wiki/%EC%9C%84%EB%A1%9C%EA%B3%B5%EB%8B%A8>

37) 디지털 환경과 아카이브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디지털과 아카이브 활용은 대중의 역사적 관심, 아카이브 접근의 용이성, 영상 편집기술의 발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인 접속의 가능성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 박희태 〈영화의 역사: 편집다큐멘터리의 쟁점들〉

38) 최소망·강승목,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와 〈위로공단〉의 한국 여성노동자 타자화」, 씨네포럼 제27호, 2017, 225쪽.

실상을 재현한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관통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인권의 부재로 일갈한다. <위로공단>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고 이후의 권리 요구 현장 재현, 가난, 지옥, 고통, 자괴감, 희망, 연대, 위로 등의 관념적 요소들로 응축되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인간답게 일을 하며 살고 싶은건 모두의 소망이다. <위로공단>의 시퀀스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비평정적 상태에서 불행을 겪었던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8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그녀들의 적대자가 직장과 남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 전체라고 증언한다.

그때 당시에 최저 임금이 10만 원이었는데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입곱 살 먹은 같이 일하던 동생이 그러는 거죠. 아,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

나이키를 만들지만 월급으로는 나이키를 신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다는 인터뷰는 해고의 과정과 해고 이후의 재현은 충격적이다.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하던 그녀들은 발 벗고 나섰지만 돌아왔던 것은 해고 통지와 함께 감옥에서의 삶이었다. 진짜 감옥은 바로 공장이었던 것이다. 시퀀스 앞에서의 불행이 지속되면서 그녀들의 엽힘은 상황이 시대가 바뀌어도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한다. 특히 이 시퀀스들 속에서는 해고, 질병, 수감, 정신적 고통, 수치심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서적 상처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이 겪은 실제 사건의 양상들이 다양하게 재현된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는 진술은 캄보디아의 예로 노동의 데칼코마니를 보여 준다. 아래 <그림 4>에서 보여지는 캄보디아의 여성 노동 현장은 수십 년 전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 적은 시급과 감옥과도 같은 노동 환경은 흡사 우리나라의 과거의 거울을 보는 듯하다. 그곳의 여성 노동자들의 하나같이 표정이 없다. 다시 돌아온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림 4> 과거와 다르지 않은 현재의 노동 데칼코마니



〈그림 5〉는 한진중공업 용접공이었던 김진숙씨의 모습이다. 특히 〈위로사회〉속의 해고 이후의 노동자의 모습은 〈내일을 위한 시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다. 〈내일의 위한 시간〉에서의 노동자의 해고 이후의 모습이 유약한 자기화에 대한 수용에 따른 인내의 시도 과정이었다면 〈위로사회〉의 해고 이후의 모습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모습이다.

〈그림 5〉 해고 후의 노동자 행동 재현(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크레인 시위 장면)/  
다산콜센터 직원이 고백하는 현대의 ‘콜순이’



이후 등장하는 쇼트들은 가족이 벗겨진 가축들이 널려 있는 재현이다. 이는 사람이 곧 돼지로 표현된 은유의 재현이 될 것이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빌미로 독재를 정당화하던 시절, 단지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기본권을 요구한 한 인간의 인권 따위는 돼지만도 못하다는 점을 의미한다.<sup>39)</sup>

공순이는 콜순이로 바뀐 것뿐이다.

다산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위와 같은 말을 던진다. 전화를 사이에 두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과 성적인 희롱을 일삼는 사람들 속에서 감정 노동은 고통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서울시의 대량 해고 결정에 직면해서는 일자리를 잃게 된 현실을 한탄한다.

〈위로공단〉은 여러 개의 병렬구조들이 쌓여 구성됨으로써 제목에서 암시하는 ‘위로’의 가능성을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sup>40)</sup> 이들은 “르네 마크리트의 연작 〈The Lovers〉 속 두 남녀처럼 〈그림 6〉에서의 흰색 복면을 쓰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선다. 마그리트의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부터 ‘똥물투척사건’<sup>41)</sup>의 비참함이 더해진 이러한 퍼포먼스는 여성 노동자들 간의 정서적 연대를

39) 최소망·강승목,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와 〈위로공단〉의 한국 여성노동자 타자화」, 씨네포럼 제27호, 2017, 243쪽.

40) 이윤중,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2010년대 한국영화 속 여성 프레카리아트 재현」, 석당논총, 2017, 375쪽.

41) 경향신문, 민주노조 세운 여공들...똥물도 이들의 저항 정신은 막지 못했다. 2020.12.1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2161430001>

표현하기 위한 영화적 효과”<sup>42)</sup>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위로사회>에서의 노동 행위는 인간의 소외와 인간성 박탈과 관련되어 있다. 마르크스적인 해석과 논의가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사회>의 주된 시퀀스들 노동자와 고용주의 철저한 이분법적 분리와 계급화, 노동자의 권리나 박탈은 모두 고용자에게 주어진다. 이로 인하여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노동자는 생존에 목숨을 거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호모 라보란스의 개념을 박탈당한 에니몰 라보란스(Animal Laborans)에 가까운 대비의 지점이다.<sup>43)</sup> 이는 비인간화시키는 노동과 고된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인간을 뜻하는 ‘노동하는 동물’을 지칭하는 에니몰 라보란스의 전략을 의미한다. <위로사회>에서의 등장인물들은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신체 작업과 정신 작업의 구별로도 귀결될 수 있다. 아렌트에 따르면 신체 작업과 정신작업의 구별은 그 기원이 중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근대적 현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원인을 가진다고 말한다.<sup>44)</sup>

결국 <위로사회>는 시퀀스에 담긴 공장의 집단 노동자의 모습에서 서로에 대한 연민에서 나아가 스스로와 타인을 위로하는 연대를 상징한다.

#### <그림 6> 노동자들의 정서적 ‘연대’



그렇다면 과거의 날과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새롭게 탄생한 노동의 상흔은 ‘감정 노동자’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탄생시켰고 연대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 연결성을 갖는 대립적 서사구조를 들어내며 상생의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위로공단>에는 옛 구로공단의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수출의 여인상’의 제막식 장면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제막식 장면을 거꾸러 돌려 등장시킨 이후 과거 구로공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라진 수출의 여인상이 복원되는 모습, 마지막에는 여인상 근방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이 집회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노동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42) 이도훈, <위로공단>: 노동의 풍경, 말들의 풍경, 독립영화, 45호, 2014, 116쪽.

43) 채진원, 「프락시스(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횡단성(transversality)」, 철학사상, 제33권, 2009, 275-276쪽.

44)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2006, 147쪽.

있는가? 2010년대 중반의 노동의 모습을 나타내는 <위로공단>의 모습에서 약 10년이 지난 2020년대의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가 하면 노동 노마드적 특징을 띠면서 노동 현장은 연동되고 있다. 40여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백은 공동체를 위한 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과정일 것이다.

## V. 나가며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노동 현장을 영화적 현실 공간으로 설정하는 노동 영화(labour films) 중, 벨기에 출신 감독 장 피에르 다르텐(Jean-Pierre Dardenne)과 뤽 다르텐(Luc Dardenne)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Deux jours, une nuit)>(2014)과 임흥순의 <위로공단>(2014)을 소환하였다.

‘노동’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노동의 집약체일지도 모르겠다.

본론의 분석을 바탕으로 두 편의 영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대조적 양상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 안정감있는 프레임의 미디엄 쇼트가 자주 등장하고 클로즈업이 극도로 활용된 <내일을 위한 시간>의 촬영 기법은 인물의 존재론적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반면 <위로공단>은 한편의 미학적 아카이브를 보여준다. 여러 노동자들의 인터뷰 사이사이에 떨어지는 꽃잎, 줄 맞춰 걸어가는 일개미, 가발공장의 마네킹, 하늘을 뒤덮은 새떼, 눈을 가린 소녀 같은 퍼포먼스 등의 영상을 삽입하며 시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sup>45)</sup>

<내일의 위한 시간>에서의 노동현장은 개인화 된 한 명 한 명을 접촉하는 노동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유약한 개인의 극복 과정을 통한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 노동자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주인공 산드라는 소진되고 지친 이미지으로 묘사된다. 무력감에 느끼는 주인공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전화 한통으로 받은 해직 통보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복직의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한 인간의 인내를 통한 자기 극복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의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입장과 다양한 노동자의 이면과 노동 현장을 펼쳐 보인다. 결국 다르텐 형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영화적으로 주목시키면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인간 삶의 형태인 노동, 작업, 행위를 통한 조화를 상기시킨다. 즉,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로의 사유를 공유한다.

반면 <위로사회>속의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은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 전락된 일면을 일갈한다.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위로하지 않는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감독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도 포함된다. 임흥순 감독은 자기의 가족도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었고 그녀들의 희생에 의해 지

45) 조혜영, 「노동의 기록과 미학화된 카메라- 2010년대 한국 노동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9권 1호, 2016, 289쪽.

금의 자기가 존재함을 알렸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장과 노동이라는 생존 감옥에 갇힌 여성근로자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만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수모와 고통의 이야기와 집중과 분열의 장면들을 계속 충돌시켜 '생각하기'를 강요한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인터뷰와 영상을 통해 재현하면서 그들의 주체의식과 유대를 넘은 연민은 곧 위로와 연대로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내일의 위한 시간>과 <위로사회>의 두 작품의 공통점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미래지향적이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해고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될 수도 있다는 재현은 각 사회적 환경과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현실이 된다. 해당 영화들이 주장하는 주체의식을 묶어주는 공통의 주제 접근은 파편화되고, 비정규직화되는 이 시대에 노동을 포착해 주목할 수 있고 '일'과 '노동'에 대해 현실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노동자를 소재로 한 모든 영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재현 방식 스타일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역시 부족하며 단지 두 편의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 영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자면, 결국 진정한 연대는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다름을 넘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자라는 주체의식을 통해 노동자의 현실을 포착하고 유용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나영, 「전후 한국영화의 여성 가사노동 재현과 시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 현대영화연구, 46호 2022, 24쪽.
- 김지혜, 〈임흥순 감독, 위로공단'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영화〉 in SBS연예뉴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020152](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020152), 2015. 08.25. (2022년 12월 23일 확인).
- 김소영, 「다르덴 형제의 영화적 현실 공간, '노동의 장'에 나타난 변증법적 헤게모니: 〈로제타〉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90호, 72쪽.
- 박희태, 〈영화의 역사: 독립다큐멘터리〉 수업 자료  
 「픽션으로 다크멘터리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 - 〈클라스〉 분석을 통해 살펴 본 허구와 실제의 경계」, 영상문화, 20, 2012, 211-212쪽.
- 빌 니콜스 저,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2005. 27쪽, 65쪽.
- 손철성, 「노동의 종말과 호모 라보란스의 위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씨네 21 No. 441.  
[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591](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591)
- 이도훈, 「말들의 효력 혹은 위력: 인터뷰 중심의 독립다큐멘터리에 대하여」, 오쿨로 편집동인, <http://www.okulo.kr/2017/03/critique-001.html> (2022년 12월 22일 확인)
- 이상진, 캐릭터, 이야기 속의 인간, 에피스테메, 2019, 26쪽.
- 이선주, 「삶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미적 실험: 〈위로공단〉」, 현대영화연구, 23호, 2016, 163쪽.
- 이윤중,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2010년대 한국영화 속 여성 프레카리아트 재현」, 석당논총, 2017, 375쪽.
- 이주현,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위로공단〉, in 〈씨네21〉, 2015. 8.12. (2022년 12월 22일 확인)
- 안상원, 「교양교과에서의 노동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제8집, 2018, 112쪽.
- 조혜영, 「노동의 기록과 미학화된 카메라: 2010년대 한국 노동 다크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9권 1호, 2016, 274쪽.
- 최소망·강승목,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와 〈위로공단〉의 한국 여성노동자 타자화」, 씨네포럼 제27호, 2017, 225쪽.
- 최윤경 (2017), 「한국과 프랑스 영화에 나타난 연대 찾기 비교 연구: 〈카트〉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2017년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학술자료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7, 39-50쪽.

크리스티앙 메츠·기이 고티에 저, 김원중·이호은 역,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53쪽.

탁지영·송윤경, 「민주노조 세운 여공들...똥물도 이들의 저항 정신은 막지 못했다」 in 경향신문, 2020.12.16. (2022년 12월 23일 확인)

칼 마르크스, 김문현 역, 경제학·철학초고/자본론/공산당선언/철학의 빈곤, 동서문화사, 1994, 67-68쪽.  
프랑수아 니네 저, 조화림·박희태 역,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와 그 아류들』, 예림기획, 2012, 67쪽.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위로공단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A/06265#> (2022년 12월 23일 확인)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2006, 390-391쪽.

Carl Plantinga, Rhetoric and Representation in Nonfiction Fil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2쪽.



#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일본인의 드라마 시청 태도 연구 :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를 중심으로

서예경(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 국문초록

전 지구적으로 K-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지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문화가 세계로 전파여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가운데, 불편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봉착해 있는 일본에서는 한일 역사적 콘텐츠를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인 2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1910년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를 바탕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탄압, 강제노역, 관동 대지진 학살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룬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를 중심으로 일본 수용자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드라마의 몰입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정도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핵심어: 역사 인식, 한일 관계, 파친코, 일본인, 일본인 시청자, 시청 동기, 몰입

## 1. 서론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인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근접한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물론이고 유교 권역이라는 문화적 동질성, 인종적 유사성, 정서적 밀접성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한일 관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 관계이다. 과거 한일 간의 식민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역사적 특수성은 현재까지도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국의 친밀도를 규정하는 데에도 반일, 반한 감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

\* syk02412@gmail.com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사무국(womencom@daum.net)

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논쟁은 현재까지도 침묵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일본 제품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제품의 목록을 알려주는 <노재팬>이라는 웹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비단 한국에서만 반 일본 정서가 고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겨울 연가’가 방영되면서 일본을 주축으로 한류가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되어 왔지만, 일본에서도 이른바 ‘혐한’ 담론이 불거져 나왔고 한국에 대한 강한 반한 감정을 표현해 왔다. 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일본 매스컴 내에서 혐한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2년으로 이후 총 3단계를 걸쳐 확대되었다. 1단계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2단계는 ‘만화 혹은 출판 혐한류’, 마지막인 3단계를 2012년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천황 사과 요구 발언 이후라고 정리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까지도 혐한 정서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예로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국인 국제학교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SNS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인을 향한 증오심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sup>2)</sup> 더 나아가 이번 연구의 소재인 TV 드라마 ‘파친코’도 일본 내 혐한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이 파악되고 있다. 드라마 ‘파친코’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Apple TV+를 통해 방영된 작품으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Min Jin Lee)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Apple TV+ ‘파친코’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삶과 일본, 미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인공 선자의 부모, 선자, 선자의 아들, 선자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삶을 교차로 다룬 드라마로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면서 각국에서 평단의 호평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K-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지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 내에서는 ‘혐한류’와 ‘반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즈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파친코’가 정작 작품에 영향을 준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현지 반응을 전한 바 있다.<sup>3)</sup> ‘파친코’가 일본에서 외면받는 원인 중 하나로 가디언즈는 ‘일본 주류 사회의 역사 인식과 우익 성향의 언론 보도’를 꼽았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오랜 집권 동안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와 강제 노역 등을 부정하는 시도가 축적되어 일본인들 사이에서 기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이에 토코 오카 노리마츠 국제 평화 박물관 네트워크(INMP)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국민 사회 전체에 편협한 분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 사이에서 자신들이 제일 조선인을 차별한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

1) 일본 내 혐한 현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NARS 현안 분석】 vol. 21, 박명희, 2018.

2) “한국인과 대화 한 번 안 해보고,,, 오사가 방법 ‘혐한’ 이유는 오직 sns”,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2.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719183968893>

3) “재일 조선 4대 가족 이야기 ‘파친코’ 세계적 인기… 일본 반응은?”, 라디오코리아, 김나연 기자, 2022. 04. 21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86457>

하였다.<sup>4)</sup>

하지만 1988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단계적 일본문화개방정책을 통해 한일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주류 시장에서 미디어 연계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sup>5)</sup> 특히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2010년을 기점으로 K-POP이 재확산하면서 일본 내 한국의 콘텐츠가 갖는 영향력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이렇게 한일 양국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역사적,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문화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보편적으로 문화콘텐츠는 문화 할인율이 낮아서 역사적 특수성이 콘텐츠를 향유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편이었다. 실제로 영화 '밀정', '암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한국 제작자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을 제작할 때도 일본 극우 세력의 비난이 일긴 했지만 거세게 번지진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이례적이다. '파친코'가 공개된 직후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시각이 거세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제작된 K-드라마도 아닌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을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한국에 대한 반감을 혐한류로 표출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제 3자인 다국적 기업인 애플(Apple TV+)이 제작하고 유통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지엽적인 과거사가 세계적으로 조명되고 확산하는 것에 심기가 거슬렸기 때문이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에게 가한 탄압, 강제 노역, 관동 대지진 학살 등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룬 드라마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를 중심으로 일본 수용자의 역사 및 한국 인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드라마의 몰입에 관여하는 정도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그 안에서 작용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역사적 사실이 역사 콘텐츠를 수용하는 일본 시청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사회 문화적 인식을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일본 시청자의 문화콘텐츠 수용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할인 이론에 따른 한류 현상을 확인하고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차원들의 구성 요인들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인 수용자들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애플 TV '파친코' 콘텐츠의 몰입하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명의 일본인 시청자를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지적되어 온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역사 콘텐츠 제작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4) '파친코' 전 세계 호평에도...외신이 밝힌 '日 나홀로 외면' 이유,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2022.04.24.,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2416161629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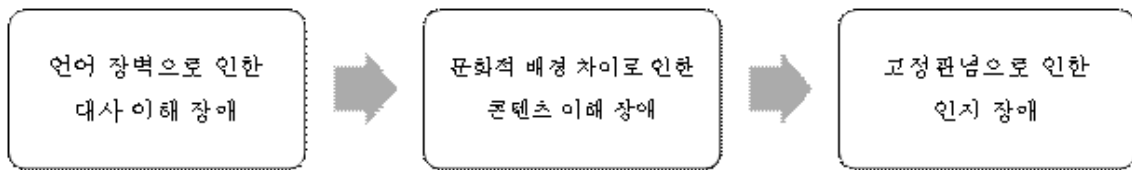
5) K. Iwabuchi, "한류가 제일 한국인과 만날 때- 초국가적 미디어 교류와 로컬 다문화 정치의 교착", 프로그램/텍스트, 제11호, 87-120, 2004.

## 2. 이론적 배경

### 1) 문화 할인 이론에 따른 한류 소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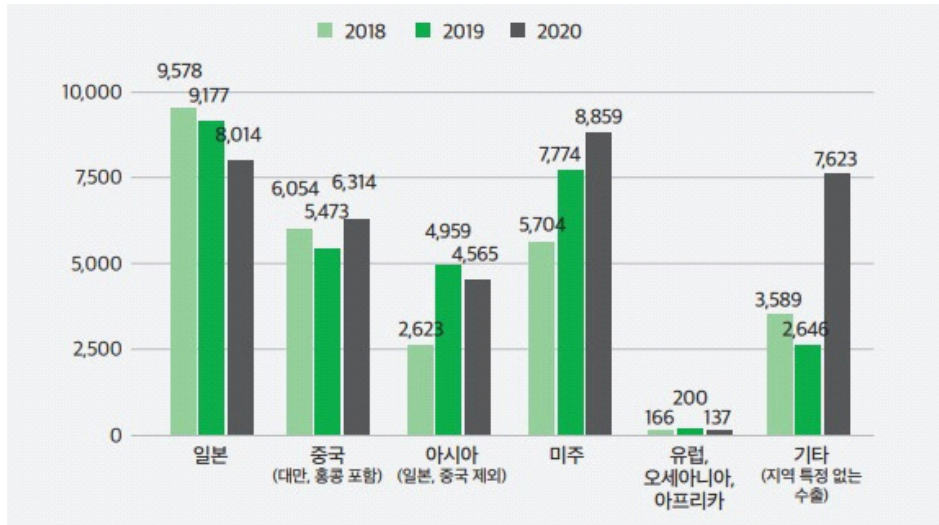
오늘날 ‘문화 할인’ 현상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용자가 문화를 접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파되는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문화 할인 이론은 호스킨스와 마이러스(Hoskins&Mirus, 1988)가 제시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에 기초하여 제작된 문화 상품이 모국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가면서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신념, 생활 방식 등의 차이로 상품의 가치나 소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른 지역의 수용자들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 가치관, 신념 체계 그리고 관습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한류 콘텐츠 수용의 문화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한류 콘텐츠를 수용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 할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그림 1]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어의 다양성이다. 언어는 수용자가 문화 작품을 접할 때 겪게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한류의 다양한 콘텐츠의 대사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않은 내용과 번역의 편차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배경 차이이다. 같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문화 상품에 대해 비슷한 심미관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심미관과 부합하는 상품들을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신의 심미관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심지어 배척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한 이해의 편차이다. 치하이르한(2021)에 따르면 가치관의 차이는 ‘문화 할인’의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모든 민족은 그들만의 영속된 사고방식과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과 다른 문화 상품을 접하게 되면 선입견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방송 프로그램 국가별 수출액(2018~2020년),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상기와 같은 이유로 문화할인율은 각 문화권 간 대중문화 교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림 2]를 참조하여 소비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는 열정적인 팬덤이 존재하는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 Netflix Japan에서 '왜 나는 한국 드라마에 빠졌는가(どうして私は韓ドラマにハマったのか)'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넷플릭스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영상은 한국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로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며 이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문화할인율이 낮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류 콘텐츠 소비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문화적 거리가 멀어 인기를 끌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미주와 유럽,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변화이다.

박승현, 장정현 (2014)는 자국 내의 역사적 경험을 다루거나 현실적 생활양식을 내포하는 영화들은 해외의 수용자가 자국의 수용자만큼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애플 TV '파친코'는 공개 이후 키노라이츠(Kino Light) OTT 통합 랭킹 1위를 차지하며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 (Rotten Tomatoes)'의 신선도 지수는 100%, 대중이 평가하는 팝콘 지수는 92%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파친코'는 언어의 장벽, 사회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 할인율을 뛰어넘는 작품이라 판단할 수 있겠다.

본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 대상자인 일본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인 근접성은 물론 한자 문화권이라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적 할인율이 낮다. 하지만 역사적 콘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 문화적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일 간의 정치적·역사적 갈등, 일본 사회 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쟁점

이나 갈등에서 비롯한 우경화 현상,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외교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도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문화적 할인율이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에 미치는 다양한 의미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줄 것이다.

## 2) 이용과 충족 이론

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 동기를 조사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이론적 접근이 바로 이용과 충족 이론일 것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미디어 혹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매체 접촉과 매체 소비를 통해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수요를 만족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이론은 일찍이 방송학 영역에서 1960년대부터 다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방송학 영역의 연구는 이용자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바라보았으며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주요 관심은 대중 매체가 어떻게 수용자들의 태도, 관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카츠(Katz, 1973)는 미디어 이용자들은 결코 매스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의 매체 소비 행위는 서로 다른 이용 동기에서 시작해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카츠와 스테판(Katz, Stephenson, 1973; 1988) 등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점점 더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이용자의 능동성' 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 후 이용과 충족의 연구 방법으로 '이용자의 능동성'을 최초로 방송학 연구 영역에 도입했으며 이용과 충족의 연구 방법은 미디어 소비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성적인 자아 감지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즉, 이용자들은 개개인의 선택 과정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 수요 및 비교 방법에 만족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1970~1980년대 연구자들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동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콘텐츠 선택 동기 및 콘텐츠 이용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따라 이용과 충족 이론은 연구의 성과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라스웰(Laswell, 1948)은 거시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3가지 작용을 설명하였다. 즉, 사회 환경을 감시하고 조화롭게 하며 사회 유산을 후대에 전파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사회학자 라이트와 라스웰(Wright, Laswel, 1959; 1948)는 3가지 작용과 함께 네 번째 콘텐츠 작용으로 '오락 제공'을 추가하였다. 또한, 미디어학자 맥퀘일, 블루머와 브라운(McQuail, Blumler, Brown, 1978)은 선행 연구의 콘텐츠 작용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4가지 중요한 원인(집중력 분산, 개인 관계, 개인 통합, 환경 감독)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 이론은 우선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같은 미디어를 매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Serverin & Tankard, 2001), 해당 관점은 TV 시청 동기와 장르별 시청 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김정기(2004)는 미디어 이용과 만족에 관한 수 많은 연구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매

체는 TV라고 주장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그린버그(Greenburg, 1974)는 영국 학생 726명을 대상으로 31개의 TV 시청 동기 측정 항목을 이용한 연구에서 '학습', '자극', '습관', '긴장 해소', '동반자 역할', '현실 도피', '시간 보내기' 등 7개의 시청 요인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 루빈(Rubin, 1979)은 그린버그(Greenbug, 1974)의 시청 동기 측정 항목을 24개로 수정하여 '시간 보내기/습관 시청', '학습을 위한 시청', '현실 도피', '자극 동기', '긴장 해소' 등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다양한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 나타난 이용 동기들을 살펴보면

1. 학습과 정보 습득 목적 동기(Learning/Information)
2. 1차원적인 즐거움과 재미에서 비롯된 오락적 동기(Entertainment)
3. 특별한 목적이 없는 습관적 동기(Habit)
4. 흥분과 공포와 같은 감정적 자극을 기대하는 동기(Exciting/Arousal)
5. 혼자라는 기분을 잊고 친구나 동료 같은 느낌을 얻으려는 동반자 동기(Companion)
6. 휴식과 기분 전환 동기 (Relaxation)
7. 일상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현실 도피 동기(Escape)
8. 특별한 일 없이 시간 보내기(Time Pass)
9. 친교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 동기(Social Interaction)
10. 성적 호기심과 같은 성적 흥미 동기(Voyeurism)
11. 환경 감시 동기(Surveillance)
12. TV 등장인물과의 상호 교류를 느끼기 위한 준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Parasocial Interaction)
13. 특정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기 위한 동기(Specific Content)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991; Bants, 1982; Compesi, 1980; Perse, 1986 1985).

이 중 가장 큰 시청 동기는 오락, 휴식과 관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불어 정보 습득 혹은 감시 차원의 시청 동기들도 선행 연구들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드라마 시청자들이 그들 주변의 사람과 직장, 사회와 관련 있는 안건(혹은 사안들), 상식(예: 역사) 등을 드라마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수용자는 사회적 상호 작용 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수용자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미디어를 취사선택하고 이용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해외 시청자들에 대한 한국 드라마의 시청 동기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해외 시청자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 동기 선행 연구

저자	시청 동기	연구 대상 및 분야
임형민·박주연 (2011)	문화적 호기심, 콘텐츠 우수성, 문화적 유사성, 배우 매력도, 관계적 요인	한국 드라마 (중국인 일본인 시청자)
왕진·서상호 (2016)	드라마 구성 선호, 감정 이입 및 간접 경험 사회 교류, 드라마 제작자에 대한 관심, 여가 및 습관	한국 드라마 (중국인 시청자)
이사·박상희 (2017)	문화적 호기심, 드라마 매력도, 문화적 유사성, 관계적 요인	한국 드라마 (중국인 시청자)
이양환 (2014)	오락 및 휴식, 배우 동경	한국 드라마 (필리핀 베트남 시청자)
문효진·안호림 (2016)	정보 습득, 드라마 경쟁력, 휴식, 사교, 배우의 매력성	한국 드라마 (영국 프랑스 시청자)

국내 드라마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들의 시청 동기 연구는 동아시아 시청자 연구를 진행한 임형민, 박주연(2011), 왕진, 서상호(2016), 동남아 시청자 연구를 진행한 이양환(2014), 유럽 국가 시청자 연구를 진행한 문효진, 안호림(2016) 등이 있다. 임형민, 박주연(2011)은 한국 드라마를 한 편이라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일본 대학생 146명과 중국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문화적 호기심’, ‘콘텐츠의 우수성’, ‘문화적 유사성’, ‘배우 매력도’, ‘관계적 요인’ 등의 시청 동기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시청자들은 배우의 영향력만으로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으며 오히려 드라마의 완성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중국 시청자들은 배우 선호도 및 드라마의 외적인 요인들을 이유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왕진, 서상호(2016)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과 한국 시청자의 시청 동기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선호’, ‘감정 이입 및 간접 경험’, ‘사회 교류’, ‘드라마 제작자에 대한 관심’, ‘여가 및 습관’ 등 중국 시청자들의 5개 시청 동기를 도출하였으며, 한국 시청자 시청 동기는 ‘드라마 구성에 대한 선호’, ‘정보 획득’, ‘여가 및 습관’, ‘화제성’, ‘드라마 제작자’ 등의 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특정 드라마에 대한 중국 시청자와 한국 시청자의 시청 동기 차이를 밝혔다. 이양환(2014)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적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각 나라 시청자들마다 확연히 다른 시청 동기를 파악하였다. 베트남 시청자들의 경우 ‘오락 및 휴식’ 동기가 가장 컸으며 필리핀 시청자들의 경우는 ‘배우 동경’의 동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는 가볍고 재미있는 요소가 포함된 드라마가, 필리핀 시장에서는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배우에 초점을 둔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유통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문효진 안호림(2016)의 유럽 지역의 한류 팬덤(영국인, 프랑스인 147명)을 대상으로 한 시청 동기 연구에서는 ‘정보 습득’, ‘드라마 경쟁력’, ‘휴식’, ‘사교’, ‘배우의 매력성’ 등이 시청 동기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한국 드라마 시청 동기와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공감성’, ‘자국 드라마와의 차이’, ‘한국 드라마 소재가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짜임새와 높은 완성도’ 등과 관련된 ‘드라마 경쟁력’ 요인이 한국 드라마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해외 시청자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 동기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 시청자들의 경우 문화적 유사성, 문화적 호기심, 관계적 요인이 공통적인 시청 동기의 양상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해외 시청자의 경우에는 1차원적인 '오락적' 동기가 주된 시청 동기였으며 한국 배우의 동경심 또한 콘텐츠의 주된 시청 동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서구 시청자들의 시청 동기 중 가장 큰 특징으로 '드라마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나 지식이 없어도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핵심적인 시청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는 시청자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및 장르별 시청 동기가 형성되며, 이에 따른 목적 지향적인 미디어의 이용 행태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해외 시청자들의 드라마 시청 동기에 따른 행위의 차이가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이용과 충족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시청자들이 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고 있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미디어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양적 설문 조사가 아닌 질적 인터뷰 방식을 통해 일본인 시청자들의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 시청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그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3) 몰입

몰입은 인간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순수한 내적 보상에 의한 자발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몰입' 개념은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90; 1997)의 플로우(Flow) 이론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97)는 몰입을 행복의 개념과 연관 지어 설명하며, 행복을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라 정의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97)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깊이 빠져드는 몰입(Flow)의 후행 감정으로 설명했다. 몹시 어려운 곡을 연주해낸 음악가가 자신이 해낸 것을 되돌아보며 가슴 벅참을 느끼는 것처럼 몰입에 뒤따르는 행복감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내적인 동기로 설명하는 몰입(Flow) 이론은, 특별한 외부적 동기가 없어도 사람들은 재미나 흥미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보상을 얻고, 그 경험은 내적 동기화가 이루어져 이후에도 지속해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동기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는 결과, 즉 외적 보상에 따르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내적 보

상이 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할 수 있다(Deci, 1975; Weiner, 1980). 내적 동기는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로서 호기심(Curiosity), 놀이(Play), 즐거움(Enjoyment), 재미(Fun) 흥미(Interest)를 뜻한다(Malone, 1981; Deci&Ryan, 1985; Csikszentmihalyi, 1988). 이러한 내적 동기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충족하고자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반 몰입에 관한 연구는 향해, 등산, 체스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질을 분석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몰입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영역을 넓히면서 공부나 과업(일), 미디어 시청, 대화 등 일상적인 일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의 질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건터와 크리스토퍼(Gunter & Christopher, 1997)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그 프로그램에 몰입하여 시청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선주(2005)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시청자는 개인적인 관련성을 전제로 드라마를 시청하기보다 흥미나 재미가 시청의 근간이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 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몰입을 정의했다. 반면, 칙센츠미하이(Chikszentmihalyi, 1975)는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은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정신 집중이 요구되지 않는 활동이기에 대체로 사람을 이완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몰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지희(2009)는 몰입은 개인의 경험적 측면에서 어떤 활동을 집중해서 할 때, 슬픈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감정 이입할 때, 예술적이거나 영적인 추구를 하며 깊이 있는 몰두를 할 때 우리는 모두 ‘몰입하고 있다’라고 정의했다.

특히 영상 미디어는 수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대리적으로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매체라 할 수 있다. 영상 미디어의 대표적인 매체인 텔레비전과 OTT 플랫폼 콘텐츠는 매체적 특성, 이용적 특성, 내용적 특성에 따라 몰입 경험의 정도가 사용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와 연결되어 발생하는데 이에 근거하여 김성필, 김종숙 그리고 이민순 (2013)은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콘텐츠 내용에 몰입할수록 등장인물의 연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극중 인물의 관심을 공유하여 긍정적 감정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규명했다. 또한, 루빈(Rubin, 1985)은 시청자와 등장인물 간의 인간적 상호 관계를 ‘준 사회적 상호작용 (Para-social interaction)’라 정의하며 텔레비전 시청의 주요 동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청 효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질만(Zillmann, 1991) 역시 이러한 감정 교류는 드라마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설명하면서 감정 이입(empathy)을 통해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드라마 스토리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로빈 넬슨(Robin Nelson, 1997)은 현대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을 ‘감정 주의(Emotionalism)’이라 주장했다. 현대 TV 시청자들은 무엇인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를 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노스텔지어, 욕망, 야망과 정체성 등)의 고조를 경험하는 즐거움과 몰입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 드라마는 콘텐츠 내에서 제공하

는 즐거움의 순환의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며, 시청자에게 즉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강렬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용자는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드라마를 수용할 때 즐거움을 느끼면서 주의 집중 및 시간 왜곡 등을 같이 느끼고 몰입의 정도도 증가한다. 이렇듯 주의를 집중하여 등장인물에 감정 이입을 극대화하는 것은 등장인물과 시청자의 공통적인 특성이 공유되어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시청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몰입 또는 감정 이입 행위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드라마 이용 동기 및 장르 선호도는 내적인 동기화, 즉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배경인 문화적 할인과 이용과 충족 이론을 연계하여 일본인 시청자들의 성향, 욕구, 선택 행위가 역사 콘텐츠의 몰입도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과거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인식이 애플 TV '파친코' 시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해외 시청자들은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그룹마다, 국가마다 시청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수용자들은 어떠한 시청 동기를 가지고 애플 TV '파친코'를 시청하는지 알아보고자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일본인 수용자들이 애플 TV '파친코'의 어떠한 장면 혹은 등장인물에 강한 몰입과 공감을 느꼈는지 파악하고자 세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수용하는 데 있어 일본 시청자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네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네 가지 연구 문제로 일본 시청자들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 콘텐츠인 '파친코' 수용에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파친코' 시청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연구 문제 2. 일본인 시청자들은 애플 TV '파친코'의 시청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일본인 시청자들의 애플 TV '파친코'의 어떤 부분에서 공감 또는 몰입하였는가?

연구 문제 4. 역사 콘텐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청자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본 시청자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 콘텐츠 수용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애플 TV '파친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진행에 앞서, 그레이(Gray, 2017)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팬이 아닌 수용자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 콘텐츠 또한 수용자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팬층'이 아닌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일본인 남녀 20인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별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연령층을 나눠 골고루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응답자의 다양성을 위해 '한일 교류회 유니원', '서울 메이트 한일 교류' 커뮤니티에 가입된 일본인들과 현지 일본인들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여 '파친코'를 시청한 적이 있는 일본인이나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지에 있는 일본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선 동시 통역사와 함께 zoom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 방법을 계획하는 데 있어 초반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고려해 봤지만, FGI 연구 방법은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자료가 도출되어 구성원 개인들의 실제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본 연구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불편한 역사적 사실을 다룬 콘텐츠의 수용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기에 연구 참여자 중 리더격의 참여자가 대화를 독점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가능성을 고려한바, 심층 인터뷰 연구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소수의 참여자와 특정 주제나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개인의 의견, 경험 또는 감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보이스와 닐(Boyce & Neale, 2006)이 주장했듯이 이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전에 탐구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내부자 관점(Emic Perspective)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류 드라마 중 역사 콘텐츠를 중점으로 일본인 시청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의미를 끌어내고자 심층 인터뷰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일대일의 반 구조화된 방식(Semi-Structured Interview)로 구성할 예정이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알맞게 사전에 인터뷰 가이드 작성이 필요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일본 내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대중적인 '야후 재팬(Yahoo Japan) 뉴스에서 '파친코' 또는 '협한류'를 검색어로 출력되는 기사 중 기획 기사 및 평론들을 참고 자료로 삼아 상호 보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 문제와 인터뷰의 질문 방향 및 내용은

1.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식
2. 역사 인식

3. '파친코' 감상

4. '파친코'로 인한 한국의 인식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4가지의 질문 유형을 바탕으로 다음 표와 같이 세부 질문지를 작성하여 일본 시청자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의 작용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문 내용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콘텐츠 시청 동기	1. 한국 드라마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2. 어떤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십니까?
		3. 한국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본 내 한국 콘텐츠의 사회적 수용도	4. 한국 드라마 중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드라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일본 드라마와 비교할 때, 한국 콘텐츠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 한국 드라마의 어떤 요소가 일본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역사 인식	역사 인식	7. 평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8. 평소 교육 중 역사 과목이나 전문적인 역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관	9.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 한 일 역사적인 사건 중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 한 일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2.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평소의 생각 (한일전, 소녀상, 불매 운동, 독도 문제 등)은 어떠십니까?
'파친코' 감상	'파친코'에 대한 시청 동기 및 몰입도	13. '파친코'를 시청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4. '파친코'의 등장인물 중 어떤 등장인물에게 가장 깊은 몰입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파친코'의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6. '파친코'의 어떤 지점에 공감과 재미를 느꼈으며, 공감의 배경이 되는 개인적 경험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친코' 시청과 역사 인식 관계성	17. '파친코'에 공감하지 못했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8. '파친코' 에피소드 중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고, 평소 알고 있던 내용과 공통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9. '파친코'의 에피소드 중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고 평소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0.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파친코'를 감상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파친코'를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이십니까?

'파친코'로 인한 한국의 인식 변화	22. '파친코'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일 관계를 다른 사건이 있어도 추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파친코'로 인해 한국을 인식하는 데 있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인식했으며 그렇게 인식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 '파친코'로 인해 한국을 인식하는 데 있어 달라진 점이 없다면 그렇게 인식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 향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한류 콘텐츠를 시청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한류 콘텐츠가 한국 또는 일본의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와 문화 할인율의 이론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류의 열풍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일본 내 한국 콘텐츠의 수용도를 살피고자 첫 번째 유형과 같은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인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을 살피기 위해 역사 지식과 역사관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는지,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소녀상, 독도, 불매 운동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 3번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 이론, 몰입 이론을 바탕으로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를 시청하게 된 다양한 관계성을 살피기 위해 세 번째 유형과 같은 질문들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로 인해 한국을 인식하는 데 달라진 점, 향후 역사적 콘텐츠가 한국의 이미지에 미칠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 4. 연구의 필요성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드라마 시청자들의 역사 인식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 콘텐츠 수용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애플 TV '파친코'를 시청한 일본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한국 역사 콘텐츠 수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인식을 조사해 볼 예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본인 시청자들 2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 20명의 진술이 일본 내 역사 콘텐츠 수용 현상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재현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취약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일본 시청자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역사 콘텐츠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의 발전적인 성과를 논의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김형선(2013)은 현재 한류 드라마는 일본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서구의 것과 또 다른 문화적 근접성,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 크며, 이러한 요인들이 일본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정민(2013)은 일본의 '혐한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상당수 국민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일본인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예전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더불어, 김미선, 유세경 (2014)는 일본 시청자들의 한일 역사 인식은 한국 드라마 수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양국의 역사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한국 드라마에 더욱 몰입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처럼 한일 간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일본 시청자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역사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애플 TV '파친코'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도희·이정숙 (2021).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아동심리치 료학회지, 16(1), pp. 81-107.
- 김미선·유세경 (2014). 일본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한국 드라마 시청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5), pp. 44-54.
- 김성필·김송죽, & 이민순 (2013). 한류 이미지가 한국교육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대학생들의 몰입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pp. 460-474.
- 김형선 (2013). 일본 내 '한류(韓流)드라마'의 이해와 전망 : 일본 한류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日本における「韓流ドラマ」の理解と未 : 日本の韓流「門家」との深層インタビューを中心に.
- 박소정·장인희·홍성경 (2021). 일본 내 글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수용. 한국언론학보, 65(3), pp. 122-162.
- 박승현 & 장정현 (2014).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수용: 한국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할인현상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pp. 511-551.
- 손지희 (2009). 몰입경험의 교육적 가치.
- 오인규·김인숙 (2016). 민족감정의 극복과 한류 소비현상 - 한류 드라마의 반일·반중 묘사와 일본·중국 관객의 반응 -. 한일경상논집, 71, pp. 71-93.
- 유승관 (2009). 한·일 양국 수용자의 드라마 시청과 국가이미지 형성에 대한 비교 연구. 방송통신연구, 193-220
- 이양환 (2014). 한국드라마 해외 온라인 시청자들의 시청동기와 한국드라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한국 이미지의 연관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 ), pp. 273-297.
- 임형민·박주연 (2011). 한류 콘텐츠인 드라마 시청 동기와 문화 선호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4), pp. 371-395.
- 정영희 (2020).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4), pp. 132-166.
- 정수영 (2017). '신한류'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수용 및 소비 방식은 한류 드라마와 어떻게 다른가? - 일본의 인터넷 게시판 분석 및 FGI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5호, pp. 61-100
- 주정민 (2016). 한류 콘텐츠의 확산 및 지체 요인과 지속 가능성. 디아스포라연구, 10(2), pp. 321-345.
- 하승희 (2022). 한류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타나는 일본 내 북한 인식의 변화 : 일본인 전문가 서면인터뷰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31(0), pp. 137-178.
- 홍경수·정영희 (2021). 청년세대의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 연구 :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공감과 재미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2), pp. 330-369.



- 왕권(Wang, Jun) & 서상호(Seo, Sang-ho) (2016). 중국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동기 연구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53(), 89-114.
- 張로사 (2020). 일본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위치성과 역사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역사교육*, 153(), pp. 163-209.
- Boyce, C., & Neale, P. (2006).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 guide for designing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for evaluation input (Vol. 2)*. Watertown, MA: Pathfinder international.
- Csikszentmihalyi.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Basic Books.
- Csikszentmihalyi.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Csikszentmihalyi. (1975). .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San Francisco: Jossey-Bass
- Gray, J., Sandvoss, C., & Harrington, C. L. (Eds.). (2017). *Fandom: Identities and communities in a mediated world*. NYU Press.
- Gunter, B., Furnham, A., & Beeson, C. (1997). Recall of television advertisements as a function of program evalu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31(5), pp. 541-553.
- Herting, J., & Greenburg, R. (1974). Determining Continuing Education Needs and Interests. *NUEA Spectator*, 38(15), 7-14.
- Hoskins, C., & Mirus, R. (1988).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s. *Media, Culture & Society*, 10(4), pp. 499-515.
- Lasswell, H. 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The communication of ideas*, 37(1), pp. 136-139.
- Katz, E., Blumler, J. G., & Gurevitch, M. (1973). Uses and gratifications research.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7(4), pp. 509-523.
- Nelson, R. (1997). *TV drama in transition: Forms, values and cultural change*. Springer
- Rubin, A. M., Perse, E. M., & Powell, R. A. (1985). Loneliness, parasocial interaction, and local television news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2), pp. 155-180.
- Severin, W. J., & Tankard Jr, J. W. (2001). *Communication Theory: Origins, Methods, and Uses in*.
- Zillmann, D. (1991). Empathy: Affect from bearing witness to the emotions of others.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es*, pp. 135-167.



# 한(韓) 중(中) 민족주의 콘텐츠에서 재현된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 : 환상주제분석(FTA)을 중심으로

왕이닝(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1. 들어가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족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로부터 후퇴, 고립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같은 사조가 부상했다. 대중들 역시 한국의 유튜브인 '국뽕' 콘텐츠와 중국의 '신주류 영화(新主流電影)'와 같은 민족주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의도적으로 '대중적 정서(popular sentiments)'를 동원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언어적 제국 경화(Linguistic re-bordering)' 같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부활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의 감정구조(Williams, R., 1954)가 꼭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공간에서 민족주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을 구축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고 역사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Lippmann, W., 2021).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화상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소통할 필요가 없어졌다.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현실의 장소가 가진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소셜미디어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형식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라고 할 수 있다(Foucault, 1967). 대중이 실제로 존재하고 활성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헤테로토피아적 환상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재현성 (representation)'이라는 민족주의 콘텐츠의 특성과 소셜미디어의 '헤테로토피아'적 환상성을 연결한다면 더욱 다각화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담론 속에서 환상주제가 집단 의식으로 이해되어가는 과정을 환상주제분석(Fantasy Theme Analysis, FTA) 연구방법(Cragan & Shields, 1995)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수사학적 관점에서 미디어

\* ynwang@hanyang.ac.kr

현상의 질적 층위를 탐구하기에 적합한 질적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환상주제분석(FTA)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유튜브인 ‘국뽕’ 콘텐츠와 중국의 ‘신주류 영화(新主流電影)’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심화되는 민족주의 콘텐츠의 문제를 더 깊이 사유하고 신자유주의 사회의 불안정성, 계층적 불평등과 미디어 공론(公論場) 기능이 쇠퇴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2. 미디어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이 장에는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B)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이론을 기반으로 미디어 발전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간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B)은 민족은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로서, 본성적으로 제한적이며 주권을 지닌 것으로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Anderson, B., 2018). 특히 앤더슨은 정체성의 역사적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민족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조건 외에도 사회 구조적 요인도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 기술 복제, 인간 언어 숙명의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다(신용하, 2006).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면서 영화와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매개 환경이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월터 리프먼(Lippmann, W.)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확실한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린 상(像)이나 주어진 그림에 바탕을 둔다고 가정한다(Lippmann, W., 2021). 즉, 사람들이 항상 자신이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이 내적 표현의 의사 환경(擬似環境, Pseudo-Environment)이나 생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Lippmann, W., 2021). 온라인 공론장에서 대중들은 민족주의 콘텐츠에 대해 토론하면서 특정 사건을 상상하는 과정이 바로 현대 사회의 ‘상상의 공동체’이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도구적인 차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적 기억을 쉽게 확산시킬 수 있는 매체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임한솔·정창원, 2020). ‘대중적 정서(popular sentiments)’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면서 국민 주체는 ‘좋아요’, ‘답변락’, 그리고 ‘리트윗’ 등을 통해서 디지털 가상 공동체(digital emotional 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국가 주체와 전문가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사와 기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체적인 생산자(prosumer)가 되었다(류석진, 2020). 온라인 공동체는 공동체 내부에서 정보나 경험 공유뿐 아니라 자아 표현과 타인과의 관계형성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임한솔·정창원, 2020). Margreth, L.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문맥에서 감성(emotion)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는 토대라고

하였다. 매개 생산을 통해서 감정(emotion)을 생산하는 방법,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수용자들의 감정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감정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Margreth, L., 2018). 따라서 '대중의 정서(popular sentiments)'를 자극하고 동원하는 것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 감정 공동체(Emotional Communities)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정 공동체(Emotional Communities)는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의 관심, 공통의 가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다(Barbara, R. H., 2006). '공동체'는 사회성과 감정의 관계성을 중요시한다(Barbara, R. H., 2006).

### 3. 새로운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로서의 대중 매체

민족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서 공간이나 입지, 위치성(positionality), 장소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도린 메시·박세훈, 1996). 한국과 중국에서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는 이미 지리적 요소를 넘어서 미디어 공간에서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를 형성한다. '헤테로토피아'는 공간의 '분할된 시간'과 '영속의 시간성'을 동시에 담는다. 이 공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인 서로 다른 시간의 질서 아래 살던 자기 배려 주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김분선, 2017).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66년 12월 라디오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의 또 다른 용법을 제시했다(Michel Foucault, 2014). 애초부터 언어는 공간과 얽혀 있다고 주장했던 푸코가 처음 헤테로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담론 차원에서였다(한희정·장은미, 2017). 또한 1967년 베를린 강연에서 "우리 시대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공간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다른 공간들(Of Other Spaces)'에서 예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말과 사물」에서는 언어적 의미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설명한다(Michel Foucault, 1986; 김분선, 2017 재인용).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인 것이다(한희정·장은미, 2017). 한국의 유튜브인 '국뽕' 콘텐츠와 중국의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를 비롯해 민족주의 콘텐츠는 실제 세계와는 '다르지만' 다양하며 모순적인 방식으로 현실 세계와 연결된다.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나 공동체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비롯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상상이 이루어진다(Fernback, J., 1997).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새로운 형식의 '헤테로토피아'으로서 종종 국가는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고 대표된다.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는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재현의 주체이고 특정 형식의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 미디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정한 미디어 형태를 드러낸다(Fernback, J., 1997). 즉, 특정한 공동체나 국가는 언어 및 미디어와 같은 특정 대중문화적 관행을 중심으로 상징화되

고 생산된다.

온라인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대중은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공론장(公論場)을 형성했다. 대중은 이슈 혹은 관심사에 따라 결집하며 지역 국가 심지어는 전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담론의 장인 다양한 수준의 공론장(公論場)이 있다. 공론장(公論場)은 현대사회에서 격렬한 토론과 사유를 위한 대안적인 영역을 대표하고 있다(Downing, J., 2001). 온라인 공동체는 ‘헤테로토피아’로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Fernback, J., 1997). 온라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상징적인 환경은 사람의 인격, 신념,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을 심오하게 형성하며 소집단 내부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Fernback, J., 1997). 미디어 재현이 구축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공간과 유토피아와는 구분되어 현실적인 동시에 신화적인 다른 공간이 되며 이 공간은 여타의 장소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헤테로토피아의 이질화가 가능하다(한희정·장은미, 2017; 허경, 2011).

## 4.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 (1) 연구 방법 : ‘환상주제분석(Fantasy Theme Analysis, FTA)’

본 연구는 환상주제분석(Fantasy Theme Analysis, FTA)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물질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결합하여 한국의 유튜브인 ‘국뽕’ 콘텐츠와 중국의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들의 댓글, 메시지, 토론 등을 분석하였다.

환상주제분석(FTA)연구 방법은 수사학적 관점에서 질적인 연구 방법을 취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낯선 분석 방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찬아, 2006) 환상주제분석(FTA) 연구 방법은 애초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 로버트 베일스(Robert Bales)가 1970년 출판된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Behavior* 책에서 소집단 환상의 역동적인 과정을 언급하면서 등장했다(Bormann, E. G., 1962). 해당 방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수사학 이론 간의 교류와 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Bormann, E. G., 1962). 각 공동체 내부에서 대중이 특정한 사회 현실에 대해 명확한 인식하지 못할 때, 대중은 항상 자신의 수사적 상상력(rhetorical vision)을 통해서 자유롭게 상상된다(Bormann, E. G., 1962).

또한 로버트 베일스(Robert Bales)에 의하면 매스미디어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대중이 대면으로 토론을 통해서 환상을 나누는 것처럼 대중이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환상을 나눈다고 한다(Bormann, E. G., 1962). 따라서 본 연구는 환상주제분석(FTA) 중에서도 환상 유형을 인물 주제

(Character theme), 장소 주제(Setting theme), 행동 주제(Action theme)로 나누어 한국의 유튜브 '국뽕' 콘텐츠와 중국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의 콘텐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국뽕'에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서의 댓글과 중국의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도우반(豆瓣)을 이용하여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에 관련된 콘텐츠 수용자의 토론과 댓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공동체는 어떤 측면에서 푸코가 말하는 '담론'이 될 수 있다. 즉, 언어와 자신의 사고방식을 공유함으로써 통제하거나 훈육하는 기능이 있다(Barbara, R. H., 2006). 특히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중은 이슈 혹은 관심사에 따라 결집하며 지역 국가 심지어는 전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한다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공론장(公論場)이 있으며 공론장(公論場)은 현대사회에서 격렬한 토론과 사유를 위한 대안적인 영역을 대표하고 있다(Downing, J., 2001). 즉, 대중의 환상은 대중 매체로 드러나고 국가 구성원들의 환상에 개입하여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지속시켰다(Bormann, E. G., 1962). 소집단 문화는 과거에 대한 환상이 확립되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한다(Bormann, E. G., 1962). 따라서 파편적일지라도 수용자의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한(韓)·중(中) 민족주의 콘텐츠에 대해 공론장(公論場)에서의 재현이 포착하는 일이 중요하다.

## (2)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환상주제분석(FTA)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팬데믹에서 시작한 시간 즉, 2019년 12월 31일 이후,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 콘텐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뽕' 콘텐츠와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미디어 공간을 통해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민족주의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은 매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나라별로 민족주의 콘텐츠를 존재하는 원인은 어떤 방식으로 민족주의 콘텐츠에 의존하여, 생산 혹은 유통하면서 민족주의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를 비롯하여 '디지털 자본주의(digital capitalism)'와 공동체를 상상하는 공간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배양처이자 유통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앤더슨적'인 민주주의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류석진, 2020).

본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유튜브 '국뽕' 채널 중에서 상대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고 특히 주류 언론사의 보도 기사 중에서 나타난 '국뽕' 채널들 중 'Alpago شناسي 지식랩프'<sup>1)</sup>, '어썸 코리아 Awesome KOREA'<sup>2)</sup>, '크리스[구 소련여자]'<sup>3)</sup> 3개를 선택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신주류영화(新主流電

1) 채널 정보. <https://www.youtube.com/@alpagosinasi> (검색 일자: 2023년 3월 19일)

2) 채널 정보. <https://www.youtube.com/@awesomekorea> (검색 일자: 2023년 3월 19일)

3) 채널 정보. <https://www.youtube.com/@seoulbitch> (검색 일자: 2023년 3월 19일)

影’ 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봉된 민족주의 영화 중에서 수익률이 1~2위인 〈장진호(長津湖)〉와 〈장진호: 수문교(長津湖之水門橋)〉 영화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다. 1단계는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와 중국에서 많이 사용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도우반(豆瓣)에서 댓글 및 메시지를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2단계에는 민족주의 콘텐츠와 관련된 댓글 및 메시지에서 강조된 환상 주제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3단계에는 추출된 환상 주제가 수렴되는 수사학적 유형을 찾아내서, 기본개념 - 환상주제, 상징된 단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4단계에서는 수사학적 유형별로 구조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시 구분하여, 의미를 구성했다. 5단계에는 수사학적 유형에 대한 역학 구조를 연결하여 설명했다.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0주년 기념 봄철 학술대회

**제1세션**  
**12:30-14:00**

**406호**

**대학원 세션 (B-1)**

---

사회 : 조연하(이화여대)

**1. 디지털 유해 콘텐츠 차단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비교분석 연구**

발표 : 임세린(고려대 석사과정)

토론 : 이영희(한양대)

**2.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실현 : 기사삭제·열람 차단의 법제화를 위한 개념 정의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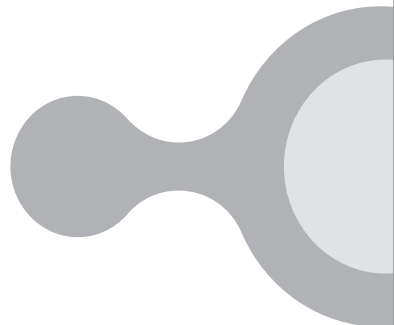
발표 : 김미라(고려대 박사수료)

토론 : 정지영(이화여대)

**3. 디지털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분석 및 비판적 고찰**

발표 : 고채은(고려대 석사과정)

토론 : 곽현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 유해 콘텐츠 차단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비교분석 연구

임세린(고려대학교 석사과정 3학기)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내와 해외의 디지털 플랫폼 유해 콘텐츠 차단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통지와 조치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해 콘텐츠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고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균형 있는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만을 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도모하는 적절한 신고-조치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에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국내 임시 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으로 차용 할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어: 플랫폼규제, 임시조치, DSA, 네트워크집행법, Notice and Action

## I. 서론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과 유용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정보의 확산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였기에 자신의 의견, 사상, 생각 등을 인터넷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든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앞선 많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듯이 이와 같은 발전이 반드시 순기능만 불러 일으킨 것은 단연코 아니었다. 인터넷 특성상의 익명성·비대면성에 기대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특히 최근에는 혐오표현(hate speech)과 같은 인격권이 철저히 침해당하는 경우가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내외에서는 이러한 해로운 현상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법률상의 제도들을 수립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2007년 개정법에서 도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임시조치’이고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본질적인 면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삭제 요청과 무관한 ‘임의의 임시조치’ 위헌성, 그리고 임시조치 이후의 정보 게재자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손꼽아 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장과 임시조치를 포함한 제44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온라인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국내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notice and takedown” 제도를 통해 위법한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NetzDG)’상의 1~6영역, 그리고 미국의 저작권법상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등이 있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이다.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가 애플 아마존 구글 트위터 등 세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시키기 위해 통과시킨 것인데, 특히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한 제14조에 의하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 혹은 단체가 불법 콘텐츠로 여겨지는 정보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notice and action)을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해외의 유해 콘텐츠 차단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국내의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하여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점으로 참조할 부분이 있을 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또한 어떠한 함의점을 가질지에 대해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해외의 유해 콘텐츠 차단 제도 현황은 어떠 한가?
- 연구문제 2: 국내의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디비피아(DBpia), 리스(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내용분석을 실시했고 유럽의 디지털법안을 분석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 II. 해외의 유해 콘텐츠 차단 제도

### 1. EU-Digital Service Act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sup>1)</sup>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sup>2)</sup>이라는 두 가지의 법률의 초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DSA의 규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DSA는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통일된 행위규칙을 정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은 발표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유럽연합 시장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병준, 2021, 183쪽)

DSA는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임원칙과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의 처리,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공급자의 책임, 제3자 공급자의 심사 의무 및 온라인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정립 키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이병준, 2021, 183쪽). 따라서 DSA의 주된 목적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유럽연합 내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뢰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서 유럽연합 내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제1조 제2호).

DSA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 ②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③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수·전성호, 2020, 15쪽). 이 중 해당 연구에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에서 제14조, 통지 및 조치(notice and action) 메커니즘<sup>3)</sup>을 중심으로 소개 할 것이다.

#### 1) 통지와 조치(notice and action) 메커니즘

제14조에 의하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혹은 단체가 불법 콘텐츠로 여겨지는 정보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의미를 덧붙이자면, ‘통지’는 불법적인 콘텐츠의 제거 내지 비활성화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을 의미하고, ‘조치’는 그에 상응하여 내려진 불법적

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COM(2020) 825 final.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digital markets act), COM(2020) 842 final.  
3) 신고 및 조치 메커니즘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콘텐츠의 제거 내지 비활성화에 대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이병준, 2021, 192). 구체적으로는 개인과 단체는 불법 콘텐츠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신고는 제5조상 실제 인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sup>4)</sup>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신고한 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을 알리고 반복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메커니즘은 기존의 전자상거래지침<sup>5)</sup>에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정되었던 notice and take down 절차를 '통지와 조치 메커니즘'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법안에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적인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내지는 비활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특정하여 불법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통지의 제출 방법을 구축하고 ② 이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수신확인을 하여 ③ 해당 통지를 기준으로 검토한 후 지체없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조에서는 통지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거 또는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이후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조치에 따른 결정의 이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적인 내용을 담았어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신고자와 불법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콘텐츠의 과잉 차단 현상(이병준, 2021)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he Greens/EFA group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이하 녹색당으로 명칭 하겠다)가 DSA의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 및 콘텐츠 조정에 대한 최종 입법안을 발표하였다.<sup>6)</sup> 이들은 DSA가 민주적이고 안전한 더 나은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적절히 보호되는 동안 불법 콘텐츠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DSA를 바탕으로 Greens/EFA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 작업의 기초가 될 EU의 전체 메커니즘에 대

4) 제5조, 호스팅. ① 불법 행위나 콘텐츠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 혹은 콘텐츠가 명백한 사실관계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② 인지한 즉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책임 면제가 된다.

5) EU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은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립하고, 정보의 저장과 같은 그 외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https://www.greens-efa.eu/mycontentmyrights/notice-and-action/> 홈페이지에서는 유튜브 트위터 메타(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용자 불만, 불법 콘텐츠 알림, 이용약관에 따른 콘텐츠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안을 구축하는 것이 작은 업무가 아니었다고 한다. 해당 입법안의 초안은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개 논평을 위해 공개되었고 한달 동안 시민사회, 산업, 학계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었다.

한 최초의 포괄적인 틀을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콘텐츠라 하면 You tube, Instargram, Twitter 및 Tik Tok과 같은 플랫폼 들에서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콘텐츠를 일컬을 수 있다. 문제점은 해당 콘텐츠 들은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반면, 합법적인 게시물, 비디오, 계정 및 광고는 제거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도록 두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당은 디지털 서비스 법(DSA)이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법과 콘텐츠를 표시하고 제거하는 방법(notice and action)에 관한 법률을 현대화 할 것이라고 보았다.

## 2) The Greens/EFA 최종 입법안

The Greens는 “정보사회서비스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조치 절차 및 약관에 따른 콘텐츠 조정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procedures for Notifying and Acting on Illegal Content and for Content Moderation under terms and Conditions by Information Society Services)”이라는 최종 입법안을 게재하였다. 본 규정은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호스팅하는 불법 콘텐츠 및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 및 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입법안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제2장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알림(notifying allegedly illegal content), 제3장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acting on allegedly illegal content)의 제7조 통지자가 신고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acting on illegal content notified by notifiers)와 제11조 이의제기 통지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counter notice)이다.

제2장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알림’에서 규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자신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며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고(통지) 방법에 대해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가능한 경우 법적 근거와 함께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에 대한 설명 및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인지 또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② 불법으로 의심 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명확한 표시(URL 및 타임스탬프) 등이 있다.

제3장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는 불법이거나 혹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만 적용이 된다. 이어서 제7조에 따르면 통지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통지 대상이지만 명백히 불법이 아닌 콘텐츠는 권한 있는 당국의 합법성 평가로 넘어가고 평가기간 동안에는 해당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은 합법성 평가가 보류 중인 동안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후 관할 기관의 삭제 명령을 받았다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제3장 제11조 ‘이의제기 통지에 대한 권리’에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절차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신속하게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의제기 신청서에서 해당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통지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에 대해 부당한 지체 없이 복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2. 독일 - 네트워크집행법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6월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이하 ‘SNS’라 한다)에 있어서의 법 집행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DG, 이하 ‘망 집행법’, ‘네트워크집행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SNS 사업자 중 대표적인 페이스북(현 메타)의 이름을 따서 페이스북법(Facebook-Gesetz)<sup>7)</sup>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안은 2015년 당시 독일 연방 법무소비자부 장관인 하이코 마스<sup>7)</sup>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당시 소셜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범죄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국가가 직접 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망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개요였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맞붙었다. 찬성 측은 SNS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이 위법한 게시물로 인해 더 이상의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되고 해당 불법적인 게시물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였고 반대 측은 인터넷 게시물의 규제로 인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집행법은 양쪽의 견해와 이익을 형량 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황태희, 2018, 226쪽).

위법한 게시물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정 내지 게시판에 임의로 작성한 게시물로서 그 내용이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21개 범죄<sup>8)</sup>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화 사유가 없어야 한다. 우선 민주적인 법치국가 위협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위헌조직 선전물),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공연하게 범죄행위를 선동하는 게시물,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의 평온을 교란시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범죄단체 조직 및 테러단체 조직, 국민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잔혹성을 담은 내용을 배포하는 내용을 담거나, 타인의 종교적 신조 혹은 종교단체

7) 하이코 마스는 소셜네트워크에서 중요 발언을 전파하는 혐오범죄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위법한 게시물을 제대로 삭제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해당 기업에게 정치적 입법을 통한 책임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8) 독일 형법 제86, 86a, 90, 90a, 111, 126, 129-129b, 130, 131, 140, 166조, 184조 및 184d조, 제185-187조, 제201a조, 제241조 또는 제269조에 해당하는 죄.



를 모욕,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 촬영한 것을 전송,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그리고 가짜뉴스에 해당할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게시물도 포함된다(신상현, 2017, 81쪽).

이러한 네트워크 집행법은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시통신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적인 통신에 이용 혹은 특정 게시물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사업자에게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연히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도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된다(황태희, 2018, 233쪽).

제 2항에 의하면 사업자(혹은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용자(혹은 제3자)가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② 어떠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지 ③ 이용자가 이의제기 신청을 한 후 해당 게시물이 삭제·차단 이 되기까지 어느정도 걸렸는지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 3항은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이를 처리 하는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를 인식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 혹은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게시물이 ‘명백히 위법한 게시물(Einen Offensichtlich Rechtswidrigen Inhalt)’ 인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혹은 차단되어야 하며, 만약 명백히 위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 지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자율규제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 혹은 차단하여야 한다(황태희, 2018, 234쪽).

### 1)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독일 연방의회가 2020년 6월 18일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용자들의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규정과 자신의 게시물이 적법하지 않게 신고된 이용자에게 대한 ‘이의신청(제기) 절차’, 그리고 SNS 사업자의 더욱 강화된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 법 시행 이후 독일에서 벌어진 혐오 사건<sup>9)</sup>과 유럽연합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시행 경과를 보면 입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 특히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많은 비판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SNS사업자가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 혹은 차단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벌금 부과 위

9) 2019년 6월 독일의 중소 도시 카셀의 시장이 신나치주의자에게 살해당하는 엄중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어 해당년도 9월에는 할레 유대교당 테러로 2명이 살해되었으며 2명이 부상되었다. 독일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명백하게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나치의 역사’가 되새김질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연대 추모 행사에 직접 참석하였고 “나와 정치인들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그것이 쉽지 않으며,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연설 하였다. 독일 법무부의 혐오 및 극우범죄 대처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판단 없이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해 버리는 ‘과잉차단(Overblocking)’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집행법 시행 후 이뤄진 평가에서는 신고에 의한 과잉 차단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심나리, 2019, 85쪽), 그 이유는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집행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10)</sup>

개정안은 주로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적법하지 않게 자신의 게시물이 신고 당해 삭제·차단당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이유진, 2020, 110쪽). 즉 개정 전인 2018년부터 시행된 법률은 게시글이 위법이라는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신청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SNS이용자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이와 같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SNS 사업자의 삭제·차단 결정 사항을 메일로 안내 받으면 해당 메일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유진, 2020, 111쪽). 이에 이의신청을 통한 재검증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한 검사자와는 다른 검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 III. 국내 임시조치제도의 운영

#### 1. 임시조치 제도의 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로부터 삭제요구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당한 자로부터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러한 대응조치를 ‘임시조치’라고 한다. 제4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10) 연방 법무장관은 네트워크 집행법 이행 태만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유튜브와 트위터 등과 비교해 위법한 게시물 신고처를 찾기 힘들게 배치 해놓는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44조의3에서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요청 없이도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가 있다.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상의 notice and takedown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와(황창근, 2009, 257쪽). 이는 단지 절차상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일 뿐, ‘통지 및 제거’ 절차를 국내의 법률에 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김기중, 2012, KISO저널)이 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나 혹은 전송의 중단을 요청(notice) 하게 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요청에 따른 중단의 조치(takedown)을 취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상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해당 제도는 재게시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제 전송자는 복제 전송의 중단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전송을 재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11)</sup> 이에 국내의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재게시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임시조치와 notice and takedown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2. 임시조치제도의 시행 현황

네이버, 다음은 국내 대표적인 포털로 임시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약관에서 ‘게시중단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위조상품 판매, 기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재게시 요청과 관련해서는 게시중단 고객센터에서 요청 방법, 사유별 요청 기간, 재게시 요청 철회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약관 제11조 제5항에서 임시조치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권리침해에 대한 사이트를 두고 있다. 신고 처리 절차는 네이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두 포털 사이트 모두 복원신청(재게시청구)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임시조치가 단행되면 30일 동안은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무조건적으로 차단되며 임시조치 기간 동안에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혹은 게시물복원 신청(재게시청구)이 있으면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게시물은 복원이 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기간 이후 영구히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에 임시조치 제도가 공익의 목적을 위한 건전한 비평까지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11)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동시행령 제42조.

12) 네이버 게시중단 서비스 안내 사이트(<https://inoti.naver.com/guide/purpose.nhn>) 참조.

비판점이 현재 임시조치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포털사이트의 연도별 임시조치 단행 건수들과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정리해 보았을 때 임시조치 단행 건수는 연간 40만건 이상에 달하며 특히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점은 이의신청 현황도 그와 비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보게재자의 복원신청이 임시조치에 비하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진우, 2018, 127쪽). 해당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용자의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 받고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약관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복원신청이 없으면 임시조치 경과 이후 자동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현재 로서의 일반적인 처리 방침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다음>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유의사항에서 '정당한 침해 사유없이 권리침해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건전한 비판인 경우에는 삭제신청 접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털 사업자도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 3.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어서 제44조의 3 임의의 임시조치는 해당 항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한 근거로는 우선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sup>13)</sup> 게시물에만 한정하여 신고에 의한 처리절차 및 사업자가 임의로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르게 해석하면 사업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지체 없이 미리 포착하여 삭제 혹은 차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는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더불어 이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도하게 삭제·차단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시진국, 2009, 353쪽).

두번째로는 방어권의 부재이다. 앞선 많은 선행연구들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게재자에게도 권리

1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권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임의의 임시조치에서도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2항과 5항에 의하면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소명을 통해 해당 표현물의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을 규정할 뿐 임시조치 이후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는 법적인 절차 및 정보게재자의 반론권 혹은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예로 들어 네이버의 경우에는, ‘게시중단 조치에 대해 원 게시물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 게재가 명예 등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자신의 부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며 이의 신청을 해올 경우엔 소정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을 해제하거나 그 복제 전송을 재개한다<sup>14)</sup>’고 명시해 두었다. 더불어 현행법상 정보게재자의 게시물이 복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무조건 30일(임시조치 기간) 이후에 재게시 되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지나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귀결되어진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소명’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사실상 단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박진우, 2018, 130쪽). 이는 앞선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도 꾸준히 비판 받아 온 문제점인데 그 이유로는 한 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보게재자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립되고 각자의 권익이 서로 충돌하는 법률 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주장만으로 한쪽이 제재를 받도록 강제성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다시 임시조치로 돌아오면, 현재 이 제도는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간단한 소명만을 통해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상태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어권과 같은 정보게재자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주체절차가 성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심우민, 2014, 222쪽)이 짙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V. 임시 조치 제도의 개선점

지금까지 유럽연합과 독일의 유해·불법 콘텐츠 차단 메커니즘(notice and action)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국내의 권리침해성 게시물 차단을 행하는 임시조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까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임시 차단과 관련된 국내의 판례 혹

14) <https://inoti.naver.com/guide/rightRule>

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논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점을 두기 위해 해외의 유해 콘텐츠 차단 방식과 비교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단순 소명만을 가지고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의 입법안 제2장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에 대한 설명 및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인지 또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소명’하게끔 한 후, 해당 콘텐츠를 차단할 것인지 정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를 임시 조치 제도에 대입해보았을 때,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권리침해성 글이 아닐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합법성 평가(예로 들어 자율규제기관)로 넘어가게 하고, 평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용자들이 해당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 기간 혹은 평가가 보류 중인 동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차단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후 게시글이 명백하게 권리침해성 글임이 판단된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과 같이 30일 이내로 처리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집행법처럼 ① 명백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차단 ②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동안 이를 삭제 혹은 차단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두번째로는 방어권, 혹은 이의제기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도 정보게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이용자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절차 규정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정보게재자의 방어권은 더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근거로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해보자면 DSA의 15조를 참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게재자에게 게시글이 임시 조치된 결정의 이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함을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후 녹색당의 제3장 제11조 ‘이의제기 통지에 대한 권리’에 의하면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참조해 보자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 차단 조치를 받은 정보게재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절차를 구축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집행법 개선안의 내용처럼, 게시물 차단 결정 사항을 알리는 화면에서 바로 이의신청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과 같이 최대한 간편하게 과정을 마련하는 것 또한 주요 개선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권익이 균형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혹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어도 이와 무관하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게시글을 차

단하는 것이 아닌, DSA와 네트워크집행법이 규율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 하는 것이 더욱 타당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임의의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적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들을 현행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를 남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두지 않고 최대 15일 정도로 단축시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으로 피해가 가게끔 해야 한다.

## V. 논의 및 결론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가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보게재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약,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일방적 소명만으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나타나는 권익의 불균형성과 같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다. 그렇기에 2008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최근 유럽의 DSA와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그리고 그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유해 콘텐츠·게시물 차단 메커니즘과 과정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유럽연합 DSA의 제14조 통지와 조치(notice and action)메커니즘과 제15조 이의제기권, 그리고 녹색당의 최종 입법안인 ‘정보사회서비스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조치 절차 및 약관에 따른 콘텐츠 조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과 그 개정안, 특히 자신의 게시글이 부당하게 차단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부여 함으로써 권익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두개의 주축을 두고 비교분석 하여 국내의 임시조치 제도가 실질적인 개선점으로 차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 조치는 권리침해자의 ‘단순 소명’만 의해서 차단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당한 게시글이 명백히 위법한 게시물인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체적으로 소명’ 하게끔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한 방안으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사실상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 정보게재자의 방어권 혹은 이의제기권의 신설이다. 물론 방어권의 부재는 선행연구들 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점이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히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에만 그쳤었다. 하지만 DSA의 제15조, 녹색당의 최종 입법안 그리고 네트워크 집행법의 개정안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과정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참고 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유럽 연합의 DSA는 시행 전이고 네트워크 집행법 개선안도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의결되어 연구에 참고할 사례와 문헌들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 신고 시스템을 효율적이게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공한 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명시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국내의 임시 조치제도 또한 그 흐름에 맞춰 모든 플랫폼 이용자들의 인격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김기중 (2012).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KISO저널> 통권 제7호.
- 김민호·김현경 (2014). 임시조치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강화 시행방안 마련 연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방송통신위원회, pp. 26-41.
- 김현귀 (2014).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와 표현의 자유. <법과사회>, 제46호, pp. 298-324.
- 김현수·전성호 (2020).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pp. 4-15.
- 노동일·정완 (2020). 소셜미디어 중개자의 법적 책임.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 pp. 3-33.
- 문재완 (2013). 인터넷상 권리침해의 구제제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향후 과제.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pp. 111-129.
- 박경신 (2009). 인터넷 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pp. 7-45.
- 박신욱 (201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확장과 관련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pp. 269-304.
- 박진우 (20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11권 제4호, pp. 117-149.
- 시진국 (2009).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저스티스>, 114호, pp. 328-259.
- 신상현 (2017).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pp. 62-90.
- 신혜진 (20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 동향> 통권 제72호, pp. 187-225.
- 심나리 (2019).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1년, 혐오표현 규제책으로서의 평가. <언론중재> 통권 150호, pp. 80-95.
- 심우민 (2014).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1호, pp. 200-230.
- 이병준 (2021).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pp. 181-210.
- 이상운 (2020).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D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pp. 301-333.
- 이유진 (2020).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 발의: SNS사업자 책임은 더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더

- 철저히. <언론중재>, pp. 106-117.
- 이정훈·김두원 (2016). 잊힐 권리의 논의와 관련한 형사법적 소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0집 제2호, pp. 365-390.
- 이재진·이정기 (2012).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6권 3호, pp. 51-84.
- 진상욱 (2010).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 <법학연구>, 제39집, pp. 110-130.
- 최나진 (2016).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아시아의 법학>, 제10권 제2호, pp. 70-90.
- 황태희 (2016). 인터넷 게시물 규제와 이용자보호: 독일 망 집행법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pp. 225-253.
- 황창근 (2009).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pp. 253-280.
- 황창근 (2017).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2호, pp. 1-30.
- 황창근 (2019).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KISO Journal], 제34권, URL: <https://journal.kiso.or.kr/?p=9413>
- 황태희(2016). 인터넷 게시물 규제와 이용자보호: 독일 망 집행법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pp. 225-253.
- The Greens/EFA- <https://www.greens-efa.eu/mycontentmyrights/notice-and-action/>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to blocking digital harmful content.

Lim Se-Ri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overseas digital platform harmful content blocking systems to identify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notice and takedown. Among foreign countries, Europe in particular imposes strong obligations on platforms to block harmful phenomena occurring on the Internet and attempts to block harmful content in various ways, such as establishing a 'notice and action mechanism'. They are also creating a more balanced notification system to ensure the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whose content is removed due to a notification, and providing an effective internal complaint handling system for service users to submit complaints. However, Korea does not yet regulate an appropriate notice and action mechanism that promotes the convenience and rights of users, so through this analysi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notice and takedown system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eyword : Platform Regulation, Notice and Takedown, Digital Services Act, NetDG, Notice and Action



#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실현 : 기사삭제·열람차단의 법제화를 위한 개념 정의 및 제안

김미라(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기사삭제·열람차단 법제화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법리적, 가치적 충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사삭제·열람차단 가이드라인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사삭제·열람차단은 아직 청구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및 검색엔진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 피해구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통된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없기 때문에 언론사와 검색엔진사업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기사삭제·열람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기사삭제·열람차단도 잊힐 권리를 온전히 실현한다고 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사삭제·열람차단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기사삭제 사례 및 적용범위, 근거 등을 검토하여 기사 원문 보존에 관한 사항, 기사삭제·열람차단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 정보 자체에 관한 사항, 정보가 공표된 맥락 및 정보 출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사삭제·열람차단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잊힐 권리의 실현으로 기사삭제·열람차단에 주목하고, 실효적인 차원에서의 기사삭제·열람차단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 연구의 제안점이 현장에서 잘 작동된다면 향후 법제화가 진행될 때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잊힐권리, 기사삭제청구권, 열람차단요구권, 링크삭제청구권, 디지털피해구제

\* rainbow8304@korea.ac.kr

## 1. 서론

2022년 4월 5일 KBS <시사기획 창>은 '서울신문 최대주주 호반건설, 무더기 기사삭제 사태,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라는 타이틀로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언론사 기사삭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22년 1월 16일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일괄 삭제된 기사는 2019년 7월 부터 약 5개월간 서울신문이 보도한 '호반건설 대해부' 기획기사 57건으로, 호반건설 그룹의 편법 승계와 부당 거래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방송 직전에 호반건설 측은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57건의 기사가 일괄 삭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사건의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반건설 측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세계일보, 2022. 4. 5). 그렇다면 서울신문의 기사삭제 사례는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일까? 50건 이상 기사가 대량으로 지워진 것은 분명 상례(常例)에는 벗어난 일이지만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 기사삭제(미디어 오늘, 2016. 7. 22)', '네이버, 축구연맹 비판 기사삭제(엠스플뉴스, 2017. 10. 20)' 등 기사삭제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사삭제는 일상적인 일임에도 공통된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인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에 따르면 기자의 94%가 기사삭제 요청을 받았고, 이 중 41.7%가 기사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19.6%가 기사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삭제의 이유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저작권 침해, 오류 및 오보, 상부지시, 광고, 취재원과의 관계 등인 것을 감안할 때 언론사의 기사삭제는 통상적으로 합의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이외에도 기사삭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상 정보보호 청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 등을 관련 근거로 한 사법기관의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때 기사열람차단이 적용되는데,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상에서 해당 기사가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기사를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사삭제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언론 피해 상담건수 10,491건 중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례는 1,191건(약 11.35%)이며, <2021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3,302건 중 피해 구제된 사례 1,702건에서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례는 426건(약 25%)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기사열람차단이 청구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한 피해구제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상황에 의해 기사삭제, 열람차단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내부의 기준도 미비하고 심지어 언론사 간의 기준도 상이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

사삭제나 열람 차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박아란·김현석, 2021)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에 대한 잊힐 권리 수단으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권,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의 정보의 삭제요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같이 개별법상의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규들은 ① 검색엔진에서 노출되는 개인 정보는 검색엔진이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 배제를 요청하기 어렵고 ② 해당 정보를 제3자가 유포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 개인의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으면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으로는 잊힐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된다고는 보기 어렵다(최진웅, 2020). 아울러 기사삭제청구권 또는 기사열람차단 요구권으로 불리는 기사삭제에 관한 권리는 유럽연합에서 이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하나로 법제화<sup>1)</sup>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해결하지 못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제화에 관한 찬반 논의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언론 보도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차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논쟁적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삭제청구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충돌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사삭제 입법이 진행된다면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써 기사삭제청구권, 열람차단 요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제화의 토대가 되는 기사삭제의 개념 및 요건, 기사삭제청구권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사삭제청구권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만 관한 가이드라인은 홍숙영(2014)이 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에서 7가지 요건을 제시한 것 이외에 기사삭제 청구권 연구의 하위 단락에서 간략하게 제안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제안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언론의 가치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전문위원회(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에 의거)가 2014년 11월 26일 구글 vs. 스페인 판결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각국의 정보보호기관이 정보주체의 검색 제거 요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13가지 기준)을 채택해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사삭제청구권 가이드라인은 기사삭제청구의 요건(기사삭제의 대상, 기준, 적용 범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법제화 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사삭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1)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센터 참조.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을 포함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도 기사삭제 요구권은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상 정보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기사삭제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기사삭제를 논의할 때 기사 원문까지 삭제하는 경우와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할 때 노출되지 않게 하는 열람 차단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제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의 기사삭제에 관한 사례와 삭제 판단 근거를 알아본 뒤 우리나라의 기사삭제 사례와 삭제 판단 근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유럽과 한국에서의 기사삭제 법규와 사례를 근거로 잊힐 권리 실현에서의 기사삭제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사삭제 요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잊힐권리로써 기사삭제에 관한 기본 논의

인터넷의 상용화, 검색엔진의 고도화, 기록보관시스템인 아카이브의 발전으로 검색엔진에 남아있는 개인정보가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었고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논의 되었다.<sup>2)</sup> 잊힐 권리에 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유럽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각국의 관련 재판 속에서 또는 연구자들의 논의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때문에 잊힐 권리라는 용어도 삭제할 권리(the right to delete), 망각권(the right to oblivion), 사라질 권리(the right to disappear)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함인선, 2012). 오늘날의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제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도에 어긋나거나, 정보주체의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허완중, 2021). 잊힐 권리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면 권리 주체가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본인에 대한 정보자료를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수 있고 정보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 삭제나 검색차단, 변경된 정보의 공시와 같은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으로써 기존의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잊힐 권리는 필연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삭제 또는 이미 공표된 정보에 대한 삭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은 물론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범죄자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해 잊힐 권리가 남용될 소지도 있으며 둘째, 국가가 잊힐 권리를 남용할 경우 잊힐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 감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셋째, 역사의 진실성과 사실성, 보존성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넷째, 언론사들의 자사

2) 기사삭제는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가 검색엔진 구글(Google)의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생산 기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잊힐 권리는 그 취지에 대한 공감, 끊임없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법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각국의 판례와 연구자들의 논의 정도에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잊힐 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기사삭제 청구권의 법제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잊힐 권리는 크게 정보의 원천을 삭제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사삭제도 원문 삭제와 검색결과 배제로 구분할 수 있다(최진웅, 2020). 원문 삭제란 정보의 원천까지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였을 경우, 정보주체가 게시한 정보를 제3자가 공유한 경우 원문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색결과 배제란 검색 서비스에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제3자가 게시한 경우 또는 뉴스 및 기사가 이에 해당 된다. 즉 원문 삭제가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정보의 원본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검색결과배제는 검색을 통해 나타나는 정보(일반 콘텐츠 및 뉴스 기사 포함)의 링크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삭제는 바로 후자인 검색결과배제에 해당된다. 기사삭제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인 기록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언론 보도는 헤드라인의 폭력성과 검색의 접근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검색결과배제 즉 기사열람차단 등 미디어 노출을 막는 것만으로도 정보주체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접근의 용이성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망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정애령, 2019). 또한 열람차단은 행정기관의 문서 보관 기간 규정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하는 절충방안도 가능하다. 따라서 열람차단은 기사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기사의 보존과 접근성을 분리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에 제시된 기사삭제도 언론사 데이터 베이스가 아닌 구글 검색 결과에서 특정한 관련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검색결과배제인 열람차단에 해당된다(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잊힐 권리를 처음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vs. 스페인 판결의 의미와 GDPR 제17조의 삭제권(잊힐 권리)의 입법 목적이 검색엔진 운영자에 대한 링크삭제청구권임을 강조하며 잊힐 권리의 등장 배경과 그 필요성을 볼 때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목록에 대한 검색결과배제(열람차단요구권, 링크삭제청구권)를 중심으로 잊힐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한동훈, 2021). 궁극적으로 검색결과배제는 기사의 보존과 접근성을 분리함으로써 언론의 피해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기록물로서의 기사 가치도 보전할 수 있으며 법안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삭제·열람차단은 잊힐 권리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잊힐 권리에 해당하는 법 조항들이 기사삭제·열람차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보 주체와의 관련성을 지우는 검색 엔진의 링크 삭제는 기존 법률이나 법리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상 정정보도 청구,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 등을 근거로 기사삭제·열람차단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기사삭제에 관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사

안에 따라 한계점이 있고, 기사삭제·열람차단에 법을 적용할 때도 이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삭제·열람차단에 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며 입법 이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잇힐 권리 실현을 위해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에 삭제요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구태언, 2014), 잇힐 권리에서 기사삭제 청구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주정민, 2015), 잇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에서의 정보삭제 청구에 관한 주장(허완중, 2021), 디지털상 언론보도 피해구제수단으로써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에 관한 주장(박아란, 김현석, 2021), 실효된 형에 대한 삭제권(잇힐 권리)을 인정에 관한 주장(정소영, 2022) 등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 청구 법제화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법제화의 기준점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사삭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홍숙영(2014)의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sup>3)</sup>에 접수된 신청인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①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②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여부, ③ 기사 작성의 목적, ④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⑥ 공적 주체인지 여부, ⑦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를 기사삭제요구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의 도입과 포털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제도(개인이 삭제 요청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우선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의 보완을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사삭제 기준이 특정 사례의 한해서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누구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왜, 어느 범위(원문삭제 또는 접근권 제한)까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언론의 자유 침해와 타협을 볼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것 자체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홍숙영(2014)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불쾌한 감정 자극 여부, 기사 작성의 목적은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실에 반하는 기사 여부 또한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17조의 2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제시한 3가지 요건 ①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②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와 유사하며 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시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동일한 이유로 홍숙영(2014)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정보의 민감성’ ‘불쾌한 감정 자극 정도(인격권 침해)’ ‘사실에 반하는 기사’ 등의 표현은 개인정보의 핵심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진실성을 말하는지, 인격권의 침해는 어느 정도의 침해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적

3)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분쟁 조정 및 중재의 실무에서 기사삭제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인 기사삭제를 인정하고 있다.

용에서도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으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즉 가이드라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삭제요청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공인과 기업인이어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도 기사삭제요청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부담 가중과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사삭제 이후 언론사가 반드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 3. 유럽에서의 기사삭제와 삭제 판단 근거

#### 1)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판례에서의 삭제권

유럽사법재판소의 2014년 5월 13일 구글 vs. 스페인 판결에서 이용자가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 결과에 포함된 부적절하고 관련 없는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구글 vs. 스페인 판결이라고 부른다. 이 판결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 과거의 사회보장 분담금 채무 내역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청산된 채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삭제해달라며 2010년 3월 5일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과 구글 스페인을 상대로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곤잘레스의 구제 신청에 대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해당 정보를 게시한 언론사 라 방가르디아(La Vanguardia)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스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인터넷 검색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잊힐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을 구글 스페인 판결로 부르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약칭 '지침 95/46'이라고 하며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1981년 유럽평의회 협약 108(Convention 108)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OECD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8개 원칙(수집제한 원칙, 정보 정확성 원칙, 목적 특정 원칙, 이용제한 원칙, 안전성 확보 원칙, 공개 원칙, 개인 참가 원칙, 책임 원칙)은 지침 95/46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문재완, 2016).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 개인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특정 검색결과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정보처리의 부적합과 지침이 명하는 다른 합법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정보주체가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기사삭제에 해당하는 링크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4)</sup>

4) 유럽사법재판소 Judgment of the Court in C-131/12 . . .

구글 vs. 스페인 판결에서 쟁점사항은 첫째, 구글의 정보처리서버가 미국에 있는데도 유럽연합의 개인 정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인터넷 검색엔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셋째,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첫째,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가 유럽연합 밖에 있어도 검색엔진 운영자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유럽연합의 규범이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둘째, 검색엔진에서의 정보 검색, 기록, 편성, 수집 등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b)항이 규정하는 ‘처리’(processing)에 해당되며, 이때 검색엔진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d) 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진실된 정보로서 웹페이지에 합법적으로 공표되었어도,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일정시간이 흘러 정보주체가 잊혀지기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삭제청구권이나 처리거부권 즉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한동훈, 2021).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결과와 링크 정보가 적법한 기사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게시된 사실이 부정확 혹은 처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inadequate), 연관성이 없거나(irrelevant) 또는 관련성이 없어지거나 과도한(no longer relevant or excessive) 공개일 때, 정보주체는 검색결과와 링크삭제요구권인 잊힐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인호, 2020). 기사삭제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을 보면 2022년 12월 8일 구글은 삭제 요청자가 해당 정보가 명백히 부정확하다는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하면 검색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은 익명의 투자회사 그룹 임원 2명이 구글에 자신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룹의 투자 모델을 비판하는 기사가 뜨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삼으며 해당 정보와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썸네일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기사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한지 확실하지 않다고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입증은 사법적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고 판결하였다.<sup>5)</sup> 이로써 정보주체는 검색엔진 운영자를 상대로 검색엔진의 정보 링크 삭제를 청구할 때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덜 수 있게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사삭제에서 정보의 진실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과 연관이 없고, 정보를 공표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검색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판결을 통해 해당 정보가 명백히 부정확하다는 것을 정보주체가 입증할 수만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 없이 정보삭제 청구 및 삭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5) 유럽사법재판소 Judgment of the Court in Case C-460/20

## 2) 구글 vs. 스페인 판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의 삭제권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전문위원회(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에 의거)는 2014년 11월 26일 구글 vs. 스페인 판결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 채택하였다(한동훈, 2021). 구글 vs. 스페인 판결 이후 구글은 공식적으로 링크삭제 요청을 접수 받기 시작했으며, 이때 개인의 잊힐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보고서를 통해 링크 삭제와 관련하여 ① 정보주체에 관련된 사항, ② 정보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 ③ 정보가 공표된 맥락 및 정보 출처에 관련된 사항, ④ 시간의 흐름 등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김민정, 2015), 각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총 1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민정(2015a; 2015b)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① 정보주체와 관련한 판단기준 3가지 즉 판단기준1 검색결과가 자연인에 대한 것인지 혹은 검색결과가 정보주체의 이름을 통한 검색의 결과인지 여부, 판단기준2 정보주체가 정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혹은 정보주체가 공인인지 여부, 판단기준3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이 있으며, ② 정보의 내용에 관련된 판단기준은 5가지로 즉 판단기준4 정보의 정확성 여부, 판단기준5 정보가 정보주체의 명예와 관련성이 있고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판단기준6 개인정보지침 8조에서 규정하는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판단기준8 정보 처리가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야기하는지 혹은 정보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에 과도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판단기준9 검색 결과로 정보 주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정보인지 여부, 판단기준13 정보가 형사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이 있고 ③ 정보가 공표된 맥락 및 정보 출처에 관련된 사항은 판단기준10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공표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였는지 혹은 공개될 것이 의도되었는지 또는 정보가 공개될 것을 정보 주체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판단기준11 당초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공표되었는지 여부, 판단기준12 정보의 공표자가 개인 정보 공표를 위한 법적 권한 또는 법적 의무를 갖는지 여부 등이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사항은 판단기준7 최신의 정보인지 혹은 처리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의 있다. 이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이 정보주체의 링크 삭제 요청을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으며 개별 국가의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삭제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한 정보가 부정확한지, 부적절한지, 무관한지 또는 과도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검색결과에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사삭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근접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가명과 별명도 검색 링크 삭제에 해당되며,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 즉 정보주체가 공인인 경우 링크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정보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성정보다 링크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김민정, 2015b). 또한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검색결과에서 의견을 담은 정보와 사실적 정보는 구분해야 하며 정보

의 부정확성 및 부적합성이 높을 경우 링크 삭제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직업활동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직업이 공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직업활동에 대한 정보가 과도한지 그리고 정보주체가 여전히 동일한 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도 기준에 포함되며, 정보주체의 성적 지향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는 링크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김민정, 2015b). 정보 공표 및 정보 출처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가 최초의 정보 공표에 동의하였어도 추후 동의 철회를 할 수 없어 링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보호 기관은 해당 요청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목적으로 공표 즉 언론인에 의해 공표되었는지 여부는 하나의 고려사항일뿐 링크 삭제 요청 철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잊힐 권리에 따른 기사 삭제(링크 삭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 주체와 정보의 성질 즉 정보 자체의 특징에 따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시의성,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특징을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 기사삭제 가이드라인에 참고할 수 있다.

### 3) 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서의 삭제권<sup>67)</sup>

#### 6) 제17조 삭제권 ('잊힐 권리')

①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삭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처리자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개인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 (a) 개인데이터가 수집 혹은 기타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
- (b) 정보주체가 제6조 제1항 (a) 또는 제9조 제2항 (a)에 따라 처리의 근거가 된 동의를 철회하고,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한 다른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때;
- (c) 정보주체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처리를 위한 다른 우월적인 정당한 근거가 없는 때, 또는 정보주체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리를 거부한 때;
- (d) 개인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때;
- (e) 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는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그 개인데이터가 삭제되어야 하는 때;
- (f) 개인데이터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것인 때.

② 정보처리자가 그 개인데이터를 이미 공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위 제1항에 따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자는 이용가능한 기술과 이행 비용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그 개인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처리자들에게 알려져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그 개인데이터를 연결시키고 있는 링크나 그 개인데이터의 사본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그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표현 및 정보의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 (b) 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는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처리가 요구되는 그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 (c) 제9조 제2항 (h)와 (i) 및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 영역에서 공익을 위하여;
- (d) 제89조 제1항에 따라서 공익을 위한 자료보존 목적, 학술적 혹은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위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 (e) 법적 권리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하여

7) 이 연구에서 인용한 GDPR 제17조의 번역은 김송옥,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정보인권,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9, 89-90면 그리고 한동훈,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을 참조하였음

유럽의회는 2016년 4월 14일 기존의 개인정보지침을 대체하는 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sup>8)</sup>을 의결하였다. GDPR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로한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개별 국가에서의 입법과정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법규범으로 구속력을 갖는다(고학수,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GDPR 대응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GDPR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유럽경제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규제를 뜻한다. GDPR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유럽연합 거주자’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적자의 개인정보가 한국에서 수집 및 처리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인의 정보가 유럽연합 내에서 수집 및 처리되면 EU 거주자에 해당되며 GDPR이 적용될 수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대응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GDPR에서 주목할 사항은 제17조에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로써 ‘삭제권(Right to erasure)’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삭제권은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결정한 잊힐 권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1항), 다음 6가지의 경우에는 잊힐 권리 즉 삭제권이 인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센터에서 정리한 해당 내용을 보면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가 원래의 수집·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a호), 해당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b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에 반대하는 경우에 처리의 계속을 위한 더 중요한 사유가 없는 경우(c호),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어 GDPR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d호),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삭제가 필요한 경우(e호), 미성년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정보가 수집된 경우(f항)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물론 GDPR 삭제권도 무조건 삭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마련해 정보처리자(검색엔진 운영자)는 삭제 요청을 거부할 근거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유럽연합 법이나 회원국 법률상 정보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적 활동이나 공적 권위로 수행된 활동, 공공보건 영역에서 공익적 사유, 공익적·과학적·역사적 연구나 통계 목적 저장행위 관련,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삭제요구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DPR 제17조 삭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삭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권리와 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최경진, 2014). 무엇보다 GDPR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정보처리자(검색엔진 운영자)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면,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데 있다. 즉 정보 삭제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는 점에서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단, GDPR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8)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2016.5.4 공표, 2018. 5. 25. 시행

정보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고수윤, 2020)에서 구글 vs. 스페인 판결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는 차이가 있다.

## 4. 우리나라의 기사삭제와 삭제 판단 근거

### 1) 대법원 판례에서의 삭제권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3년도 판결에서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권을 인정하고, 기사삭제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권태상(2020)이 정리한 기사삭제 청구권의 요건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sup>9)</sup>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사삭제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②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③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한 결과 인격권이 우세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때 대법원이 기사삭제 청구권의 요건 중에서 비진실성의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진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사에 한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으면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비진실성의 범위(피해자가 입증하는 범위)를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한 기사삭제 청구 판결에 의하면 공표 당시부터 위법한 기사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 적법한 공표된 기사에 대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구제 수단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진실오신의 상당성이 입증된다면 기사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기사삭제 청구는 적법하게 공표된 진실한 정보일지라도 공공의 이해 및 이익과 하등 상관 없거나, 공중의 알권리 침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측면에서 방해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은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를 기사삭제 청구권 인정 근거로 보았다.



배제청구권에 근거한 기사삭제 청구를 온전하게 기사삭제 가이드라인 및 추후 법제화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 2) 현행법상 잊힐 권리에서의 삭제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잊힐 권리와 관련된 규정 및 법규는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딱 차 있기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상충하는 법들과의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문소영, 김민정, 2016)도 있지만 규정과 법규들을 살펴보면 기사삭제 청구의 필요성을 무마시킬 만큼 언론 보도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만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검색목록 배제를 원하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 게시판 관리자는 블라인드 처리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접근배제 요청인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며 접근재개 요청과 함께 이의신청을 하면 사업자는 요청인(제3자)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요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면 블라인드 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또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은 타인이 작성하였으나 주된 내용이 작성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댓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은 접근배제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의 차원에서 보면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게시물은 배제된다. 또한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공적 인물’의 정의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범위 등 불명확한 개념 범위 등 거부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관련 법규를 보면 먼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 청구 조항은 개인의 잊힐 권리 보장이라기 보다 오보와 허위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에 가까우며 정정보도 청구의 시효가 정해져있고, 궁극적으로 기사 정정보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사삭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도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검색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링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삭제가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는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sup>10)</sup>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가 넓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리하자면 잊힐 권리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된 특정인에 관한 정보 또는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삭제나 검색 차단에 대한 청구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

10)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기간 이내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아니어도 정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사삭제의 의미와 상동한 거 같지만 요청자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리 침해와 같이 불법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고 개인정보로써 그 정보주체가 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률을 근거로 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정이나 법률은 잊힐 권리의 피해 구제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타인이 올린 나에 대한 게시글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링크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가 어려우며,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기사삭제를 할 수 없다.

### 3) 검색배제청구권 및 열람차단청구권에서의 삭제권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검색 결과에 대한 검색배제청구권 신설 제안(최진웅, 2020)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조사처의 검색배제청구권 제안 목적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 하여 포털 사이트 등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데 있다. 제안을 보면 개인 사생활 또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해 현저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민감정보, 오래되어 부정확한 정보, 편견을 낳는 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 등을 잊힐 권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검색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제안에는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삭제는 제3의 전문기구에서 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전문기구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며, 언론중재법 특칙을 마련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검색배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학술연구, 종교, 정치활동 등의 공적 정보나 공직자와 운동선수, 기업인, 예술가, 중대범죄인 등 공인 관련 정보, 표현의 자유 및 공익을 위한 경우 그리고 연구목적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검색배제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과 유사하다. 법안 내용은 이미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으로도 완전한 피해구제가 되지 않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여전히 기사 검색이 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열람차단 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언론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때 단 공적 관심 사안

에 대한 보도,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보도는 열람차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때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료는 내어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의 언론중재법에는 기사 삭제청구 또는 기사열람 및 검색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언론중재 과정에서 기사삭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잇힐 권리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사열람정지청구권(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나 기사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성낙인·김태열, 2021).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설명자료(2021)에 따르면 열람차단청구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는 완전히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피해자 청구만으로 열람 차단되지 않고 심리 후 언론사와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등 기존 법률에 대한 보완적 의미에서 실효적인 기사삭제에 가장 근접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5. 기사삭제·열람 차단에 관한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유럽연합의 기사삭제에 관한 권리나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기사삭제청구권은 모두 온라인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서 접근되지 않도록 검색배제를 요청하는 열람차단청구권(링크삭제청구권)임을 주지하고자 한다. 현재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배제청구권, 링크삭제청구권, 링크삭제요구권, 열람차단청구권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2장에서도 주지하였듯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삭제는 열람차단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5장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으로 지칭한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정보주체, 정보처리자(검색엔진 운영자), 정보게시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기존의 법과 규정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의 요건은 첫째, 기사 원문 보존에 관한 사항 둘째, 기사삭제·열람 차단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셋째,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 넷째, 정보 자체에 관한 사항 다섯째, 정보가 공표된 맥락 및 정보 출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사 원문 보존에 관한 사항

기사 원문 보존과 관련해서는 기사 원문을 보존하면서 잇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제안한다. 잇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스스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없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며, 정확하게는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를 실행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기사삭제의 목적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실질적 잊힘에 있다(허완중, 2021). 아울러 기사삭제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사삭제는 원문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검색할 때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열람 차단’을 의미하며, 언론사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기사 원문에 대해서는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람 차단은 해당 기사를 공표한 언론사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 공공의 이해, 공공의 이익, 공중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기준으로 혐의를 거친 뒤 결정하며, 열람 차단 후에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열람 차단한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 언론사 링크, 열람 차단 심의 기구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한다.

## 2) 기사삭제·열람 차단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사삭제·열람 차단의 심사 및 집행에서는 크게 잊힐 권리를 청구한 정보주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에 관한 심의를 누가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정보주체의 상대방은 언론사 홈페이지 책임자와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이며 여기에는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 결정을 누가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크게 신뢰할만한 국가기관에 위임하거나, 유럽처럼 검색엔진 운영자(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 운영자(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열람 차단 심의 및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적 검열 및 공정성,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공적 책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윤민섭(2014)에 따르면 검색엔진 운영자(검색서비스사업자는 광고 등 다른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검색결과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삭제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람 차단에 관해 판단해줄 기구가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라인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해당되며 신고만으로 해당 정보가 차단되는 일종의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열람 차단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 검열기관의 비전문가들에게 그 책무를 안길 수는 없다.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균형감을 갖춘 사고방식, 언론과 법에 관한 전문지식,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성을 갖춘 사람들로 선별하여 열람 차단에 관한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3의 전문기구가 열람 차단

(검색결과 배제) 등을 결정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 규제 조정 과정에서 기사삭제 업무를 담당했던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위임 받는다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높이고 제3의 기구를 설립하는데 들어갈 물질적, 시간적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람차단 심의 업무를 맡는다면 조정심리를 통한 정당한 사유 확인 및 언론사, 검색엔진 운영자와의 협의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정보게시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 3)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에서는 열람 차단을 청구하는 이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잊힐 권리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받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는 '살아있는 개인' 즉 '생존하는 자연인'이 된다(이민영, 2013; 허완중, 2021). 그러나 죽은 사람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생존하는 자연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은 열람 차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열람 차단을 청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입증 책임을 지며 이때 정보의 비진실성 및 비공익성에 관한 입증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보 주체가 정치인 등 공인인지, 형법상 범죄자인지, 미성년자인지 등의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공인 및 범죄자의 경우 공중의 생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열람 차단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우선 열람 차단 대상자로 분류한다.

### 4) 정보 자체에 관한 사항

정보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보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인정한 잊힐 권리의 조건은 적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로 게시된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하거나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구글 vs. 스페인 판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보의 정확성, 정보주체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혹은 민감한 정보, 형법상 범죄에 관련된 정보 등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진실여부에 상관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볼 때 정보의 비진실성은 고려하지 않되, 정보의 공익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된다. 즉 정보의 진실성에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부정확 또는 부적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면 열람 차단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현저하게 공중의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형법상의 중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열람 차단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정보가 공표된 맥락 및 정보 출처에 관한 사항

정보가 공표된 맥락과 정보 출처에 관한 사항에서는 정보 주체의 정보 공표에 관한 의도성과 정보 공표자(정보게시자)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정보가 공표된 맥락은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공표하거나 언론에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초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공표된 정보인지에 관한 내용을 열람 차단 수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에 당초 정보 주체의 의지에 의해 언론에 정보 주체에 관한 기사가 보도 되거나 정보 주체가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열람 차단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 주체가 특정 목적으로 갖고 언론을 이용한 뒤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자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한 것이라면 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하며 나아가 언론을 이용해 공중을 호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시간이 흘러서 해당 정보의 현저성이 사라져서 더이상 최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 혹은 공중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가 공표된 맥락에 관계 없이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 출처에 관한 내용은 정보의 공표자가 개인 정보 공표를 위한 법적 권한 및 의무를 갖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면 열람 차단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6.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기사삭제·열람 차단 청구권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법제화 마련의 토대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기사삭제·열람 차단 청구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 제인을 위해 첫째, 유럽에서의 기사삭제와 삭제 판단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둘째, 우리나라에서 기사삭제와 삭제 판단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셋째,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사삭제·열람 차단 청구권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문제로 상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잊힐 권리 차원에서의 기사삭제란 무엇이며,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사삭제청구권에서의 기사삭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개념부터 정리하였다.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기사삭제는 검색엔진에서의 검색 결과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즉 링크삭제를 의미하며 검색배제청구 또는 열람차단청구라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유럽에서의 기사삭제와 삭제 차단 근거를 잊힐 권리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판례에서의 삭제권, 구글 vs. 스페인 판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의 삭제권, 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서의 삭제권 차원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럽연합에서의 열람 차단은 공통적으로 검색엔진 운영자 즉 정보처리자에게 강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과 연관될 경우 열람 차단 청구를 수용하지 않지만, 정보 공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정보주체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보가 노출되고 그로 인해 정보주체의 인격권만 침해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열람 차단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공익성을 중요하더라도 진실성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가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이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사삭제와 삭제 판단 근거는 잊힐 권리와 관련된 규정 및 법규에서의 삭제권, 기사삭제 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의 삭제권, 검색배제청구권 및 열람차단청구권에서의 삭제권, 선행연구에서의 삭제권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규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는 잊힐 권리의 피해 구제에서 여러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기사삭제 가이드라인에 대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단, 최근에 논의된 검색배제청구권이나 열람차단청구권에서 기사삭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기사삭제·열람 차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첫째, 기사 원문 보존에 관한 사항 둘째, 기사삭제·열람 차단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셋째,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 넷째, 정보 자체에 관한 사항 다섯째, 정보가 공표된 맥락 및 정보 출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 사항마다의 열람 차단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가이드라인 제안은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계시자 등 열람 차단 이해 관계자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잊힐 권리의 실현으로 기사삭제에 주목하고, 실효적인 차원에서의 기사삭제·열람 차단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유럽과 우리나라에서의 기사삭제와 삭제 판단 근거를 법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참고할만한 부분과 한계점을 분석한 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논의 차원에서만 진행됐던 기사삭제·열람 차단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작동된다면 향후 법제화가 진행될 때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수윤 (2020). GDPR과 CCPA상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71-106.
- 고학수 (2016).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3-49쪽) 서울: 박영사.
- 구태언 (2014).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1-22.
- 권태상 (2020a).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제19권 제2호, 233-263.
- 권태상 (2020b). 잊힐 권리와 인격권: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159-190.
- 김민정 (2015a).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언론중재>, 136권, 110-120.
- 김민정 (2015b).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법>, 제14권 제1호, 219-248.
- 김송옥 (2019).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정보인권,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69-102.
- 문소영·김민정 (2016).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151-182..
- 문재완 (2016).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1-18.
- 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05-151.
- 성낙인·김태열 (2021).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40년의 변화와 성과.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1-36.
- 언론중재위원회 (2021).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설명자료, URL: [https://www.pac.or.kr/kor/pages/index.asp?p=41&b=B\\_1\\_2&bn=2826&m=read](https://www.pac.or.kr/kor/pages/index.asp?p=41&b=B_1_2&bn=2826&m=read)
- 언론중재위원회 (2021). 언론중재위원회 2021 연간보고서, URL: [http://www.pac.or.kr/kor/ebook/etc/etc\\_mz\\_per\\_1/2021/](http://www.pac.or.kr/kor/ebook/etc/etc_mz_per_1/2021/)
- 언론중재위원회 (2021). 2021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윤민섭 (2014).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시사점, <글로벌소비자법제동향>, 제1권 3호, 2-15.
- 이민영 (2013).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제20권 제1호, 65-92.
- 이인호 (2020). '잊힐 권리' 관련 최근 소송 동향 및 이슈, <언론중재>, 156권, 18-35.

- 정소영 (2022). 영국 갱생법의 형의 실효(spent conviction) 제도와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형사정책>, 제33권 제4호, 129-159.
- 정애령 (2019).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143-177.
- 주정민 (2015).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언론과법>, 제14권 제2호, 39-62.
- 최경진 (2014).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47-92.
- 최진웅 (2020).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 분석, 제162호
- 한동훈 (2021).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연구원
- 함인선 (2012).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 EU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27권, 51-67.
- 허완중 (2021). 잊힐 권리의 독자적 기본권성. 헌법실무연구, 제22권.
- 허완중 (2020).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107-154.
- 홍숙영 (2014). 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2호, 13-22. .
- 미디어오늘 (2016. 7. 22). KBS '이건희 성매매' 보도 삭제 왜? "신중한 접근 필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22>
- 세계일보 (2022. 4. 5). '法, '호반건설 기사삭제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05517091?OutUrl=naver>
- 엠프뉴스 (2017. 10. 20). '[단독] 네이버, 축구연맹 '청탁 문자' 받고 기사 숨긴 정황 포착' <http://www.spochoo.com/news/articlePrint.html?idxno=25176>

# 디지털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분석 및 비판적 고찰

고재은(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 국문초록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상의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포 문제의 공론화는 ‘N번방 방지법’이라 통칭되는 일련의 법률 제·개정을 가져왔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 사전적·사후적 차원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관련 내용을 매년 투명성 보고서로 발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87개사의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대응과 보고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대응책이 갖는 실효성과 정당성을 검토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하고 검토한 최초의 학술연구로서 향후 투명성 보고서 구성의 개선과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 디지털 플랫폼, N번방 방지법

## 1. 서론

디지털 플랫폼은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며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으나, 그 자유와 개방성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수년간 성착취 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사회적

\* chd1237@korea.ac.kr

관심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은영·서봉성, 2021). 박사방 등 각종 대화방에서 악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범행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이 공유되는 채널로서 디지털 플랫폼이 갖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이 더욱 부각되었다. 촬영물의 무분별한 유포 및 빠른 확산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의 특성은 피해의 규모와 지속성을 키우고 완전한 삭제와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위험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미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 등이 이루어져 왔다(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윤정, 2018). 2020년 N번방 사건의 공론화는 이러한 규제가 실현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2020년 4월 23일에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5월 20일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sup>1)</sup>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 12월 10일 시행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주체를 일반 이용자에서 관련 기관·단체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미이행할 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사후적인 삭제·접속차단 조치 외에도, 규정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sup>2)</sup>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021년 말부터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투명성 보고서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일반적 노력,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건수와 처리기준 및 결과, 유통 방지 책임자 배치와 내부 교육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이러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규정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자율규제가 동시에 강조되는 맥락과 연관이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유연하고 방대한 인터넷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플랫폼 안전을 관리하되 투명하게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1) 불법촬영물등이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하 ‘허위영상물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 등을 의미하며,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티비, 디시인사이드 등의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트위터, 메타와 같은 해외 사업자도 이에 해당된다(2021년 기준).

NetzDG)이 불법 콘텐츠 신고를 처리하는 조직과 절차,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연 2회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페이지로 이를 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이번 법 개정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사후에 방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관련 이행 내용 전반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건수는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한예섭, 2022),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대응과 방지책을 검토하는 문헌적 기반을 제공한다.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2021년 3월에도 86개사의 2020 투명성 보고서가 방통위에 의해 공개되었으나, 당시에는 법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수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 실적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22년 6월 30일 공개된 87개사의 2021 투명성 보고서는 사실상 관련 제도가 온전히 도입된 후 나온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방통위 누리집 자료마당의 ‘불법촬영물 등 투명성 보고서’ 게시판<sup>3)</sup>에 공개된 2021년 보고서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한편, 최윤아(2022)의 뉴스 기사는 87개사의 2021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분석하여 전체 신고건수와 삭제·차단건수 및 비율 등의 통계를 내고,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 신뢰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관련 법률 내용과 보고서에 드러난 사업자별 정책현황을 함께 자세히 분석하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형태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개될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이 강조되는 배경과 이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3장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의무를 규정한 법률의 개정 배경과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4장은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분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1) 연구의 분석 대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와 보고서의 일반적인 구성, 2) 투명성 보고서에 드러난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접수·처리 현황, 3)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정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드러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책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유통 방지 노력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투명성 보고서 자체가 갖는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https://kcc.go.kr/user.do?boardId=1156&page=A02061000&dc=K02061000>

## 2.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무

### 1)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확대와 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및 유해 콘텐츠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환경의 안전 보장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 시행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이용자 2백만 명 이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표현(speech)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혐오 선동(incitement to hatred), 폭력 묘사 확산(dissemination of depictions of violence), 아동 포르노 유포(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사진 촬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violation of intimate privacy by making photograph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Tworek & Leerssen, 2019). 이는 새로운 불법 규정이라기보다 기존에도 있던 법 원칙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집행(enforcement)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Zurth, 2020).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접수된 콘텐츠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명백히 불법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다른 불법 콘텐츠의 경우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연간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반년 단위로 신고 접수 건수와 주제, 신고 처리 절차, 삭제 건수와 이유, 담당 인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Tworek & Leerssen, 2019).

네트워크 집행법의 시행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시키는 미국의 CDA 230조와 대비되며 독일 국내외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콘텐츠에 관한 규제는 특히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명확성이 요구됨에도 “명백히 불법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의에 따른 지나친 콘텐츠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Heldt, 2019). 플랫폼 입장에서도 불법성 여부가 불확실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간적 압박 속에서 대부분 삭제 처리를 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Schulz, 2018). 콘텐츠 삭제에 법적 기관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사적 플랫폼이 콘텐츠의 합법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적 집행(privatized enforcement) 혹은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었다(Tworek & Leerssen, 2019).

한편, 2021년 7월 제정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아동 및 성인 이용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6조), 성인 대상의 사이버 폭력(7조),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 묘사(9조),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의 공유(15-16조) 등이 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해당한다. 이 중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의 공유(Non-consensual intimate image of a person)’는 우리 법의 불법촬영물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프라이버시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

에서, 민감한 신체부위(private parts), 민감한 활동(private activity), 개인이 종교적/문화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착용하는 의복이 없는 상태(person without attire of religious or cultural significance)를 묘사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정보에 근거해야 하고, 아동이나 동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성인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21조)(김여라, 2022)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소셜 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쉽게 유해 콘텐츠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삭제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온라인안전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안전국의 판단으로 삭제고지(removal notice)가 내려질 경우 사업자는 통상 24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김지현, 2022). 영국에서도 유사하게 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이 2022년 3월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Trengove et al., 2022).

플랫폼상에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개입은 이용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면이 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위한 이러한 지적과 논의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불법촬영물등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 권리가 아닌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며, 불법촬영물등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가 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구분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법성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던 기존의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관련 행위가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윤정숙, 2020).

## 2) 국내 불법촬영물등 피해와 대응 논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4배 증가한 6,952명이 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이 중 10대 피해자가 21.3%(1,481명)로 연령 미상 제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총 188,083건의 피해지원 건수 중 약 90.3%(169,820건)가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에 해당했는데,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에서의 삭제 지원이 5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셜미디어 31,980건(18.8%), 검색엔진 30,372건(17.9%), 커뮤니티 29,608건(1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삭제지원 건수는 2020년 14,550건(9.2%)에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이

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촬영물 키워드 등 유포,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의 유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주제를 다룬 연구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와 대응방안 검토(김숙희 외, 2018; 김재한, 2021; 이은영·서봉성, 2021; 최용성·곽대훈, 2020), 불법촬영물 소지와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 고찰(박현정, 2020; 이명성·이상진, 2021),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의무 부과 규정에 대한 정당성 검토(문의빈, 2022; 신혜진, 2021; 임석순, 2020; 허진성, 2020)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불법촬영물의 유형별 사례와 피해자 지원방안을 탐색한 이은영·서봉성(2021)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의 양상에는 비동의 촬영 및 유포/재유포, 온라인 성착취(온라인 그루밍), 사진합성(딥페이크), 몸캠피싱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저장과 복사가 용이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때가 많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은영·서봉성(2021)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자세를 갖춰 신고가 들어오면 유포 범위를 확인해 집중적으로 삭제를 지원해야 하며,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통위 또한 “한시적 단속이 아닌 일상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점검 체계를 재구축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자세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N번방 방지법’ 도입 전후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임석순(2020)은 우리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의 한계, 현저한 표현의 자유 제약 가능성, 사기업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권 부여, 관리부실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제재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허진성(2020) 또한 부여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행정질서법이 아닌 행정형벌 부과는 과도한 제재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문의빈(2022)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필터링(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가 1)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2)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 독자적인 판단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음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기반하여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적, 비교법적 검토는 진행되었으나, 실제 법률 도입의 결과물로 도출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87개 사업자의 2021 투명성 보고서를 검토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대책의 이행이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법 개정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둔 2020년 봄,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과 문제의식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성폭력 관련 법들의 통과가 다수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2020년 4월 29일, 기존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5월 20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일련의 법률은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고 있다.<sup>4)</sup>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플랫폼은 우리 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법률의 목적과 규율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다(문의빈, 202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여 분석 대상 사업자 혹은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예시로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앱, 디시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 등이 포함된다.

#### 1)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사전적·사후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조치의무의 부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존에도 이미 존재하던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항의 내용이 확대되었다. 제1항에서는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에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여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외에도 불법적으로 편집되고 가공된 허위영상물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조치의무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 의무는 구법과 달리 유통 사정에 대한 “명백”한 인식 없이도 발생한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의 주체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단체<sup>5)</sup>도 들어가도록 범위를 넓혔다.

4) ‘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인 범위나 목록에 대해 상이한 시각이 존재함을 제시한 문헌으로는 임석순(2020)을 참고.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1항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불법촬영물등을 구성하는 3가지 유형을 규정한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둘째로 ‘허위영상물등’은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뜻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의 두 가지 유형에는 촬영 혹은 편집·합성·가공할 당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경우도 해당된다. 셋째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자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 성적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제22조의5 제1항에서 부과한 의무가 신고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과 확산을 막는 사후적인 조치의무라면, 신설된 제2항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검색 결과 송출과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등 사전적 차원의 조치의무 이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치의무사업자 중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어지는 제3항에서는 해당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지 않을 것을, 제4항에서는 관련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2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과 방통위 고시 제2021-12호에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고시 제3조),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제4조). 또한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하고, 관련 검색 결과와 연관검색어의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도 요구되는데(제7조), 여기에는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률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지 게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또한 규정하고 있다(제8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없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제5조).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방통위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22조의6 조항을 신설해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해 방통위가 요청한 경우(제27조 제1항 제3호의4)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통위가 요청한 경우(같은 항 제3호의5)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제95조의2 제1호의2, 제1호의3에 따라, 제22조의5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유통방지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발의 당시 제안이유 중 하나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제44조의9) 매년 방통위에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제64조의5)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대상 사업자(“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앞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준과 동일하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해당 기업 내 임원이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1인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매년 2시간 이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 방심위의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불법촬영

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의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또한 가진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관련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와 내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앞서 다룬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부과된 여러 의무에 관한 이행 내용을 문서화하여 정리하고 공개하도록 한 것이 바로 제64조의5에 규정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대상 사업자가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6조2항4호의4, 제76조3항25호).

## 4. 2021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분석

### 1) 분석 대상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에 따르면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는 사업자는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즉 1)에 해당하는 웹하드, P2P 사업자 등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 2)에 속하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의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이 대상이 된다.

이때 별표 1의2는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둘째는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셋째는 불특정 다수

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단,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 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서비스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민법과 상법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제외된다.

방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총 87개사로(방송통신위원회, 2022), 이 중 34개사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했으며, 이외 53개 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서비스명과 유형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사업 상세유형을 구분한 결과, 검색엔진 5개사, 소셜미디어 5개사, 스트리밍 10개사, 게임아이템거래 2개사, 웹툰·웹소설 2개사, 채팅앱 12개사, 커뮤니티 17개사, 웹하드 34개사로 분류되었다.<sup>6)</sup>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22). N번 방 사건의 중심이었던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 해외 사업자로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공간이 아닌 ‘사적 대화방’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손인해, 2020).

정보통신망법이 방통위로 하여금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제64조의5 제2항) 2022년 6월 30일 방통위 누리집에 2021 투명성 보고서가 게시되었다. 방통위가 별도로 제공한 투명성 보고서 양식에 따르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1) 사업자 및 주요 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일반현황,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보고서 검토 결과 일부 소수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방통위 양식을 충실히 따라 보고서 형식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하나당 17.3페이지 정도의 길이였다.

## 2)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

각 사업자가 2021 투명성 보고서에 제시한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에 관한 통계를 합산한 결과, 87개 사업자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신고건수는 총 15,409건,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8,082건이었다(〈표 1〉, 〈표 2〉). 신고 한 건당 복수의 게시물을 삭제·차단했다고 보고한 2개 업체(구

6) Google LLC의 경우 ‘구글’(검색엔진)과 ‘유튜브’(스트리밍)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명에 있는 구글 서비스의 대표성을 고려해 검색엔진으로 분류하였고, (주)카카오의 경우에도 ‘다음’(검색엔진), ‘카카오톡’(채팅앱)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일반현황에 기재된 정보통신 주요서비스가 ‘다음’임을 고려해 검색엔진으로 분류하였다.

글·케이엔피네트웍스)로 인해 신고 건수보다 삭제·차단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신고 사유(중복 포함)로 보면 불법촬영물이 7,968건, 허위영상물이 1,355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6,097건이었다.

〈표 1〉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드러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접수내용

	신고·삭제요청인			신고사유		
	피해자등	기관·단체	소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검색엔진	1,195	2,691	3,886	3,451	176	262
소셜미디어	5,291	5,161	10,452	4,035	1,064	5,361
스트리밍	49	1	50	42	6	2
게임아이템거래	0	2	2	2	0	0
웹툰·웹소설	0	0	0	0	0	0
채팅앱	5	0	5	0	5	0
커뮤니티	31	230	261	153	104	4
웹하드	502	251	753	285	0	468
총계	7,073	8,336	15,409	7,968	1,355	6,097

전체 사업자 가운데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이 한 건이라도 접수됐다고 보고한 업체는 28곳(32.1%)이었으며, 59곳(67.8%)은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28곳 가운데 불법촬영물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체는 트위터(9647건), 구글(3569건), 핀터레스트(613건), 원피플(432건)이었다. 과반수의 사업자가 보고서에 신고 접수를 '0건'으로 기록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고된 건”만 해당 표에 집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게시물 내 신고 버튼 등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건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드러난 불법촬영물등 처리결과

	처리결과				삭제·차단사유		
	삭제·접속차단	방심위 심의요청	기타	소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체사업자	28,082 (65.0%)	24 (0.05%)	15,075 (34.9%)	43,181 (100%)	16,279	1,918	8,247
2개사(구글, 케이엔피네트웍스) 제외	9,724 (82.2%)	24 (0.2%)	2,088 (17.6%)	11,836 (100%)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삭제·접속차단', '방심위 심의요청', '기타' 등으로 나누어 결과가 제시되었다(표 2). 28곳 중 신고 접수 총계와 처리 결과 총계가 다른 2개 업체를 제

외하고 26개 업체의 평균 삭제·차단율은 약 82.2%였다. 신고가 접수된 11,836건 가운데 9,724건이 삭제·접속차단됐는데, 대략 10건 중 8건 정도의 신고내용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사업체가 방심위에 불법촬영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건은 24건(0.2%)에 불과했다. 삭제·차단도, 방심위 심의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기타’ 건수는 2,088건(17.6%)이었다. 한편 계산에서 제외된 구글의 경우 31,281건의 처리건수 중 18,294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내렸고, 12,987건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했다.

‘기타’로 분류된 2,088건의 신고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세한 설명이나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방통위에서 전달받은 집계표 양식에 따르면 ‘기타’ 항목에는 ‘삭제·접속차단’, ‘방심위 심의요청’ 이외의 모든 사유가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투명성 보고서 상에서는 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기타로 판별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트위터의 경우 ‘기타’에 “콘텐츠가 트위터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은 신고와, 트위터가 신고된 콘텐츠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중이어서 처리하지 못한 신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노력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연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 노력,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담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들은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검색 제한 조치, 동영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용자 대상 사전경고 조치 등의 이행 내용을 본문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전반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규정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유통방지책의 틀은 보고서에도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다만 사업 유형,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실행 방식에 차이가 존재했다.

#### (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기능 및 대응체계 마련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모두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나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신고 접수는 대부분 24시간 상시적으로 가능했으며, 담당자들의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춘 곳도 있었다. 유포와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 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불법촬영물등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플랫폼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신고 채널 측면에서는 게시물이나 댓글

글 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창에서 접수를 하는 방식과, 별도의 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 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는 방식,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문의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앞서 다른 사업자별 신고 접수 내역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집계되는데, 요청서의 경우 주로 신고버튼이 아닌 이메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도록 하거나(아이템 아이, 문피아, 트위치 등) 웹폼 형태로 서식에 들어갈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구글, 메타, 트위터 등). 신고창에서 서류 작성에 관해 따로 안내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바비톡 등).

이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서를 이메일과 같은 별도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접수하기보다는 개별 게시물이나 댓글의 신고 기능과 같이 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디시인사이드는 보고서에 “자체 음란물 신고 기능이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에 의한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한국여성인권진흥센터 및 지정된 기관의 신고이며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삭제요청하는 건수 또한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되는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통계가 갖는 의미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수의 사업자가 연간 신고 건수를 '0건'으로 표시한 반면 트위터(9647건), 구글(3569건), 메타(175건) 등의 신고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웹폼과 같은 형태로 지정 서식 제출을 용이하게 해둔 플랫폼의 경우 신고 집계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간단한 신고 접수 채널과 정식 신고서류 제출 채널을 분리해둔 플랫폼의 경우 많은 신고건수가 집계에서 제외되어 마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절차의 경우, 대다수 사업자가 유사한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통 신고·삭제요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고 내용과 게시물을 검토한다. 이때 네이버 등 일부 사업자는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 신고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이행하며, 운영정책 등에 따라 게시자에게 제재를 내리기도 한다. 불법촬영물등 여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영상물 게시 중단 후 방침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더 나아가 2차적 확산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 관련 금칙어 등록, 해시 차단 등의 과정도 이루어진다.

신고 처리의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시되어 있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불법촬영물등의 유형과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쓴 경우가 있었다(펄스위트 등). 카카오는 총 169건의 신고 건이 법률상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고해, 사업자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기 까지 걸리는 기간 또한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았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방통위고시 제2021-12호 제5조 제3항).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쓴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제이



에스넷), 신고 2일 이내(평일 24시간, 휴일 48시간)에 처리 및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업자도 있었고(티비이엔엠), 아예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자도 많았다. 법률에 규정된 “지체 없이”의 기준을 사업자별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고서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단된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치된 내용을 안내하는 경고 쪽지를 보내는 것부터, 공지게시판에 아이디를 일부 가림 표시를 해 공개하는 것, 사이트 접근·이용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등의 강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재의 수위와 방식이 다양했다. 네이버는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해 신고 접수된 게시물이 삭제될 시 즉각적인 이용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에서는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되지만, 즉시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을 당부했다. 한편, 게시자의 이의 제기 절차는 일부(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등)를 제외하면 사업자가 제시한 신고 처리 절차에 자세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고객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이의 제기를 접수할 수 있음을 간단히 명시하거나(제이엘에스), 이의 제기가 들어올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다는(인비전) 사업자도 있었다. P2P 사업자인 제이에스넷 등은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 (2) 불법촬영물등 관련 검색 제한 조치

검색기능이 탑재된 플랫폼의 경우, 금치어를 지정하여 해당 표현의 검색을 제한하거나 검색 결과 송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치어 목록 일부를 보고서에 공개한 사업자들도 있었는데, 사업자마다 차이가 존재했으나 ‘몰카’, ‘n번방’, ‘버닝썬’, ‘지인능욕’, ‘몸캠’, ‘일반인’, ‘리벤지’, ‘아침’, ‘화장실’, ‘유출’ 등의 예시가 있었다. 금치어 개수도 490개(틱톡), 약 900개(몬스터주식회사), 958개(카카오), 약 7,500개(펄스 스위트), 23,385개(더블미디어) 등으로 다양했다. 많은 경우 금치어가 들어간 단어 조합, 띄어쓰기, 특수문자 포함 문자열 조합 등도 함께 검색을 제한하고 있었다. 오피지지는 불법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관련 장소 및 행태별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 제한 조치를 적용하며,<sup>7)</sup> 씨나인도 한 단어 검색제한<sup>8)</sup>, 두 단어 조합 검색제한<sup>9)</sup>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금치어 검색 시 송출되는 결과도 사업자마다 달랐다. “입력하신 검색어는 불법성인영상 관련단어로 검색이 금지되었습니다”(제이엘에스)와 같은 안내 문구를 띄워 검색 결과를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는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노출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도 2020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와 파트너십을 맺고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ThereIsHelp 기능을 제공하고

7) 예를 들어 ‘몰카’ 관련 장소 및 대상 키워드 조합은 ‘몰카 탈의실’, ‘몰카 클럽’, ‘몰카 일반인’, ‘몰카 만취녀’ 등이 있다.

8) ‘성착취’, ‘몰카’, ‘음란물’, ‘불법촬영물’, ‘도촬’, ‘성관계’, ‘포르노’ 등에 적용된다.

9) 한 단어 검색 제한 대상 용어들을 포함해 ‘화장실’, ‘N번방’, ‘마사지’, ‘아줌마’, ‘유출’, ‘몰래’ 등의 단어가 조합되는 경우 제한된다.

있다. 여성폭력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 단체를 안내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한편 아예 검색을 차단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연령이나 선택에 따라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업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줌인터넷과 디시인사이드는 유해 키워드로 지정된 단어 검색 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성인 검색결과를 제외했습니다”와 같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검색결과임을 표시하고 성인인증 절차를 요구한다. 메타에서도 특정 단어 검색 시 경고 문구를 보여주지만 ‘결과 보기’를 눌러 검색결과 송출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성인 이용자라면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비판이 가능하다.

검색기능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검색 제한 조치가 미적용되었으나, 대신 이용자가 프로필이나 게시물 작성 시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한 사업자들이 있었다. 흔히 채팅앱(데이팅앱) 유형에서 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자르’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에서는 해시태그, 닉네임, 자기소개 작성에 있어 금칙어를 설정했다. ‘정오의데이트’를 보유한 모켓에서는 커뮤니티, 채팅, 댓글 서비스에서 금칙어를 입력할 시 해당 단어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 (3) 불법촬영물등 동영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사전적으로 게시자가 올리고자 하는 동영상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식별하여 원천적으로 게재를 차단하는 것이다. 기술적 필터링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면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GIF나 VOD 형태의 공유가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현재 정부 제공 필터링 기술이 식별을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 형식(주소링크나 영상태그를 통한 게재, 스틸 이미지, 음성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87개 중 약 27개 사업자가 기술적 필터링 미적용 대상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줌인터넷은 단순텍스트와 사전등록 이모티콘만 업로드가 가능하고, 촬영물 업로드 환경 제공 계획도 없어 기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기술적 필터링은 콘텐츠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를 방심위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세한 작동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방심위로부터 기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별된 영상물의 특징정보를 획득하여 DB를 구축한다. ② 이용자로 부터 업로드 요청이 들어오면 게재하려는 정보를 수신하고, ③ 해당 정보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한다. ④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가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존재하는지 비교하여 ⑤ 그 결과(일치 or 불일치)를 수신한다. 마지막으로 ⑥ 이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해 ⑦ 불법촬영물등 식별 결과가 일치이면 게재를 제한하고, 불일치이면 게재를 허용한다. 판단

의 기준이 되는 특징정보 DB는 방심위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당 식별 및 게재제한 기술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용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외부 업체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원피플의 투명성 보고서에 드러난 정보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식별 가능성, 일반영상 식별 가능성, 일관성 지표에서 95%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야 평가가 통과된다. 검토 결과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한 모든 웹하드 사업자들은 에스피소프트와 버킷스튜디오라는 2가지 업체 중 한 곳과 계약을 맺어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외 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제공기술을 사용하거나 필터링 조치 미적용 대상이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단돼 게재가 차단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용자가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관련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통위에서, 특징정보 DB는 방심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근거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회 긴급대응팀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메타는 방심위가 제공한 불법촬영물등의 특징정보와 일치하여 콘텐츠 게재가 제한된 이용자에 대해 기업 내부 검토 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투명성 보고서에서 또 하나 확인된 것은 기술적 필터링 조치 적용에 부담을 느껴 아예 동영상 업로드와 같은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사업자 팍스넷은 유튜브 등 동영상의 링크를 첨부하는 것 외에 동영상 직접 업로드는 불가능하도록 변경했음을 보고서에 밝혔다. 농협정보시스템에서도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거했으며, 레인톡도 영상 공유 기능을 UI에서 전부 떨어내는 방안을 택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필터링 기술 적용과 장비 수급에 드는 부담을 고려해 필수적이지 않은 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거하여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4)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관한 사전적 경고조치

이외에도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관해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경고 방식도 다양하다. 게시판의 상단에 관련 공지를 고정해두거나, 홈페이지 하단이나 게시글 작성창에 경고문구를 노출하는가 하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캠페인 배너를 팝업창으로 띄우기도 한다.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관련 수칙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웹하드 사업자인 웹트리는 판매약관에 “불법촬영물등을 업/다운로드할 경우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제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라고 관련 법률을 명시했다. 네이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인격화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음을 이용약관 내 게시물 운영정책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용약관에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음란물의 공유에 대해 규제하고 있었다.

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된 해외 주요 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 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특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편인데, 관련 규정에서는 불법촬영물과 같은 한국식 표현보다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이미지(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magery, CSEAI)’,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NCII)’,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 노출 콘텐츠(non-consensual nudity)’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 및 처리 현황 집계 시에도 신고 사유를 CSEAI와 NCII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구분된 일반적인 보고 양식과 조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sup>10)</sup> 핀터레스트는 신고된 게시물이 현지법에는 위반되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위반되지 않을 경우 지역 단위에서 콘텐츠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 5. 논의 및 결론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접수한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내역과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통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문헌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별도의 신고 양식을 통한 접수만 보고서에 집계되며, 게시물이나 댓글 내 신고 버튼을 통한 접수는 집계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창에서 접수된 것도 집계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혹은 최소한 웹폼 형태로 신고 서식 접수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집계 기준이 확립되면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사업자들 간 일관성 있는 보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일관된 기준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내역이 집계될 때 정확한 사업자별, 연도별 현황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투명성 보고서라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다.

첫째로, 불법촬영물등 신고 및 처리 결과 집계 방식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 나타난 신고 접수 및 처리 수치는 사업자마다 편차를 보였으며, 많은 사업자가 연간 접수 현황을 ‘0건’으로 기록했다. 이는 별도의 신고 양식을 통한 접수만 보고서에 집계되며, 게시물이나 댓글 내 신고 버튼을 통한 접수는 집계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창에서 접수된 것도 집계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혹은 최소한 웹폼 형태로 신고 서식 접수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집계 기준이 확립되면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사업자들 간 일관성 있는 보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일관된 기준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내역이 집계될 때 정확한 사업자별, 연도별 현황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투명성 보고서라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다.

둘째로, 신고 처리 기준이나 인력 등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투명성 보고서에는 신고 처리 절차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중요한 ‘판단’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여부가 결정되는지, 어떤 인력이 이것을 결정하는지는 거의 밝혀져 있지 않았

10)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통계 처리를 할 때에는 CSEAI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NCII는 불법촬영물로 우선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다. 사실상 관련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체계화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음지화되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 보고서의 취지와 정보통신망법 규정상에도 관련 처리기준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자체적인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기술이 필요해 보인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는 검토팀의 인력 구성에 대해 밝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

셋째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가 처리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신고 시에 안내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에서는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차단하고, 기타의 경우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14일이라는 기한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2차적 확산 및 피해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상담 기관을 안내하는 것도 권장된다.

넷째로, 문제가 된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가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제시된 신고 처리 절차에는 이의 제기 절차가 대부분 빠져 있거나 ‘고객센터 상담’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규제가 이제 막 도입되어 완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과 보장이 중요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로, 음란물과 구분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과 제한이 필요하다.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불법촬영물등과 음란물, 아동 보호 정책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촬영물등 관련 검색 결과 송출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제한 수준이 아닌 불법촬영물등을 이유로 검색이 금지된 것임을 명확히 알리고, 트위터의 #ThereIsHelp 기능과 같이 피해자 지원 단체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용 약관에 있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N번방 방지법’이 도입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22년 11월 검거된 ‘제2의 N번방 사건’의 용의자 ‘엘’은 1200여개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파악된 피해자는 9명 모두 미성년자였다(권민재, 2022). 이와 같이 ‘제 N의 N번방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디지털 플랫폼상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현황 파악과 유통 방지책 개선이 필요하다.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집계를 더 투명하게 하고, 신고 게시물에 대한 판단 절차 또한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촬영물,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근본적인 인식 또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등은 음란물과 구분되는 개념이며, 성인 이용자라는 이유로 시청과 유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엄중한 사회적 문제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급만으로도 자

첫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의 자유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불법촬영물등의 게재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수반한다. 문제는 그 제한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필요한 제한을 막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행한다면, 규제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과가 생긴다.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는 않는지 정당성을 검토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투명성 보고서의 목적을 분명히 정립하고, 앞으로 그에 맞게 내용 구성을 수정,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첫 발을 떤 투명성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정부, 학계, 대중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고서의 변천을 살필 때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처음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본 연구가 N번방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 화두가 아닌 지속적인 논의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권민재 (2022. 11. 25).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주범...제2 n번방 '엘' 호주서 잡혔다. <JTBC>.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2872?sid=102>
- 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운정 (2018).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권 1호, pp. 41-66.
- 김여라 (2022). 호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중재>, 163호, pp. 88-95.
- 김재한 (2021).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48, pp. 439-464.
- 김지현 (2022).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190호.
- 문의빈 (2022).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헌법적 연구. <법학논고>, 78, pp. 1-34.
- 박현정 (2020).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8권 4호, pp. 109-130.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공개.
- 손인해 (2020. 5. 21). "텔레그램 빠져나간다고?"... 'n번방' 시행령 전담 연구반 구성(종합). <뉴스1>. URL: <https://www.news1.kr/articles/?3941749>
- 신혜진 (20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형사법의 신동향), 72, pp. 187-225.
- 윤정숙 (2020).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전자매체본]. <KISO저널> 40호. URL: <https://journal.kiso.or.kr/?p=10421>
- 이명성·이상진 (2021).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권 4호, pp. 193-226.
- 이은영·서봉성 (2021). 불법촬영물 유통사태와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권 2호, 169-182.
- 임석순 (2020).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98, pp. 97-132.
- 최용성·곽대훈 (2020).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pp. 221-247.
- 최윤아 (2022. 8. 2). 불법촬영 신고게시물, 처리된 거 맞아?...방통위 '투명성 검증' 없었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3211.html>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한예섭 (2022. 12. 8). 구글, 최악의 '디지털 성착취' 2차 가해 플랫폼. <프레시안>. URL: <https://>

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68890?sid=102.

허진성 (202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19권 2호, pp. 43-76.

Heldt, A. P. (2019). Reading between the lines and the numbers: An analysis of the first NetzDG reports. *Internet Policy Review*, 8(2).

Schulz, W. (2022). Regulating Intermediaries to Protect Privacy Online – The Case of the German NetzDG. In Albers, M. & Sarlet, I. W. (Eds.), *Personality and Data Protection Rights on the Internet* (pp. 289-307).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Trengove, M., Kazim, E., Almeida, D., Hilliard, A., Zannone, S., & Lomas, E. (2022). A critical review of the Online Safety Bill. *Patterns*, 100544.

Tworek, H., & Leerssen, P. (2019). An analysis of Germany's NetzDG law. First session of the Transatlantic High Level Working Group on Content Moderation Online and Freedom of Expression.

Zurth, P. (2020). The German NetzDG as role model or cautionary tale? Implications for the debate on social media liability.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31, 1084.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0주년 기념 봄철 학술대회

**제2세션**  
**14:15-15:45**

**405호**

**대학원 세션 (A-2)**

사회 : 정회경(서울미디어대학원대)

**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싼 여성 혐오표현 분석 :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핫게시물 중심으로**

발표 : 이시윤(고려대 석사)

토론 : 윤호영(이화여대)

**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체능> '축구 편'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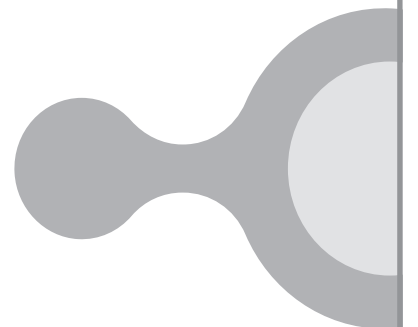
발표 : 이혜선(서강대 박사수료)

토론 : 김지원(단국대)

**3. 뉴스 정의적 차원의 읽기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함양**

발표 : 정선임(서강대 박사과정)

토론 : 이숙정(중앙대)





# '신당역 스토팅 살인사건'을 둘러싼 여성 혐오 표현 분석 :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핫게시물 중심으로

이시윤(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9월 14일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이후 20대 남녀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에브리타임> HOT 게시물 댓글에서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남자와 여자 간 논쟁에서 성별을 비하할 수 있는 단어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권, 차별, 사회 그리고 문제'와 같은 단어들도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이미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속에서 이러한 남녀 간의 논쟁이 지속된다면 향후 더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하하는 댓글 금지 및 삭제 등과 같은 선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여성혐오, 젠더갈등, 부정적 효과

## 1. 들어가며

한국 사회 내에서 젠더 갈등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개인주의와 평등 가치의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부장적 젠더 질서와 법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성운동과 같은 변화들이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힘을 얻게 되자 기존에 사회적으로 자리 잡힌 가부장적인 모습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노동시장에서의 관행 및

\* anycall1425@korea.ac.kr

제도, 성평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남녀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제도, 성매매와 성폭력, 성별 분업과 여성의 이중 노동 등과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 이슈가 남녀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이재경, 2013). 근래 들어 여성협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사회 곳곳에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특히 젠더 갈등은 페미니스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Megalia)<sup>1)</sup>>의 등장에서 본격화 되었다(우경조, 2021). 과거에는 대체로 공적 영역<sup>2)</sup>에서 기존의 젠더 갈등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젠더 갈등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열풍과 그 흐름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이승주, 2020).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당시 지하철 역무원이었던 피해자 여성(28)은 3년 넘게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시달렸다. 동료와 가까운 지인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11개월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김양진, 2022). 오랜 싸움 끝에 가해자가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직장에서 가해자를 직위해제 시켰다. 그러나 회사 내부전산망을 통해 몰래 피해자의 집 주소와 근무 시간을 알아내자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틈을 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로 살해했다(송유근&권승현, 2022).<sup>3)</sup>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의 명백한 고의, 당시 가해자를 막지 못했던 국가 치안 시스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 등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남성이 불특정한 여성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가해자(34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인 불특정한 여성(23세)을 주방용 식칼로 4차례나 좌측 흉부를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했다. 가해자는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더는 못 참아 살인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김희진, 2020). 본 사건을 통해 20·30대 여성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 공간에 숨어있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sup>4)</sup>이 수면 위로 올랐던 계기가 되었다.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2022년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경찰이 사건 당일 범인을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 두 사건은 젠더 폭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 혐오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린다. 일반적

1) 2015년 7월 16일 기준으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페미니즘 추천 도서 목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책 중 하나는 <이갈리아의 딸들> (노르웨이어: Egalias døtre)였다. 1977년에 출간된 노르웨이 소설로, 남녀 성역할을 뒤집은 '이갈리아'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전개된다. 최근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은 '메갈리안' 때문이다. 메갈리안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과 메르스의 합성어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이하 메갤)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역시 김치녀다' '한국 여자들이 나라 망신 다 시킨다'라는 식의 공격이 쏟아졌다. 이에 메갤에 모인 여성들이 분노했고 그동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여성 혐오 관련 내용에서 주체만 바꾼 미러링(거울처럼 똑같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2) 젠더 갈등은 성인 남녀의 개인적 갈등에서 시작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포함한 갈등, 성평등과 관련된 법 제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의 이해가 대립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갈등 모두를 의미한다.

3) 범행 당시, 피해자(28세)는 역무실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31)를 잡아 경찰에 넘겼다. 결국 피해자(28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오후 11시 30분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해 입사한 입사 동료였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랫동안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통해 기존의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인식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으로 혐오 범죄는 혐오 대상에 포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특정 피해자를 염두에 둔 살인사건이기에 일반적인 혐오 범죄 양상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가부(여성가족부) 일각에선 피해자 대체 가능성의 본질은 집단(여성)으로서 느끼는 취약성에서 생성되며 여성 혐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봉구, 2022).

본 연구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으로 간주한다. 연구자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근본은 여성 혐오에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당했고 불법 촬영과 스토킹, 결국엔 여성 살해까지 이는 전형적인 여성 혐오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기저에 깔려 있기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지른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사건이라 볼 수 있다(박준희, 2022). 게다가 일반적으로 여성 혐오는 2차 가해 주체<sup>5)</sup>가 갖는 권력과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발생한다(최희령, 2022). 위 사건을 목격한 여성들은 여성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불안과 분노의 목소리를 전했다. 불법 촬영으로 여성을 협박하고 억압해도 구속되지 않는 무관심한 사회에서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살해당한 역사 내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더는 우리 사회에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음을 내포한다. 그들은 ‘여성 혐오를 멈춰라’,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들은 ‘한녀(한국 여성의 줄임말로 여성 혐오 표현)가 죽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이라는 댓글을 봤다고 털어냈다(강도림, 2022). 2019년 6월에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 차별 경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혐오 표현 사용이 많은 대상은 여성이며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혐오 표현 사용 채널은 점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혐오 표현이 가장 많이 유통된다고 한다(윤하나 & 김상호, 2018). 또한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 표현의 대상을 묻는 말에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많았고 혐오 표현을 접한 장소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이라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았다(김운주, 2021).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향한 혐오와 비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K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출마한 한 선거운동본부는 ‘S 캠퍼스 이원화(통합) 저지’가 담긴 공약 게시글을 에브리타임에 올렸던 사건이 있었다. 게시글이 올라온 후 커뮤니티 댓글에 ‘S 캠퍼스 여학우 외모순 상위 50명은 A 캠퍼스 인정 제도 도입 필수’ 등 도가 지나친 차별과 혐오 댓글들이 연이어 달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제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루고자 하며 특히 K 대학의 에브리타임을 선택했다. 그리고 게시

5) ‘2차 가해’란 2차 피해와는 구분되며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모욕을 막고자 하는 용어를 일컫는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여성혐오 사건에서 흔히 발생한다.

판 중에서 HOT 게시글을 선택해 대학생들이 정보 교류와 소통을 하는 공간인 에브리타임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여성혐오와 관련된 단어가 높게 나타날 것을 가설로 삼으며, 두 사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포함하고 있는 여성혐오에 관한 실태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온라인 공간 속에서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사회적 우려에 반해 연구의 양적 확산이 더딘 것은 반박할 수 없겠다. 여성혐오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혜 & 김숙정(2017)은 메갈리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여성을 대상화하고 문제 제기 여성을 낙인찍고 여성을 투명 인간 취급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작동됨을 규명했다. 김정은 & 최승미(2019)는 20대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 여성혐오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차이와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주된 이슈로 젠더 갈등 및 여성혐오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사회적 차원에서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표본을 적게 하는 연구인 인터뷰 면접 외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남긴 대량의 댓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책적 방향성을 잡는 데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 1) 여성혐오 개념 정의

미국 사회에서 1980년대 등장한 혐오 범죄 또는 편견 범죄라는 용어는 유대인, 흑인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해 촉발된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Green et al, 2001). 일반적으로 여성혐오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과 같은 덜 공격적인 행동에서부터 위협이나 폭력 및 성적 객관화와 관련된 보다 위험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증오 또는 편견으로 정의<sup>6)</sup>된다(Almanea & Poesio, 2022). 이에 몇몇 학자들은 단어 자체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 혐오 개념은 명확한 범위 설정, 일관성 그리고 타 개념과의 상호 배타성 등을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여지나 혐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여성혐오 개념의 적용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성혐오는 고대 신화와 서양 철학자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비하 발언과 폭력,

6) 2012년에는 주로 호주 의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여 Macquarie Dictionary(맥코리사전)는 여성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확고한 편견'을 포함하기 위해 확대 정의했다.

여성을 향한 성적 객관화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발견된다(이경희, 2017). 중세와 근대에서는 여성 혐오를 여성을 향한 증오심으로 인식했다. 여성의 월경을 지저분하게 생각하거나 모든 악의 시초는 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여성은 중세 때 성욕의 대상<sup>7)</sup>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인 죄악으로 보고 혐오하는 것으로 여겼다(김현란, 2011).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2012)는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도구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징하는 성적 기호에만 반응<sup>8)</sup>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적 객체화’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를 여성혐오라 주장한다. 또한 사회학자 마이클 플러드(Michael Flood)는 여성혐오를 여성에 관한 증오(hatred of women)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남성이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지만, 여성들이 본인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거나 다른 여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가부장제와 더불어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에게 종속적인 대상으로 여겨졌고 제한적인 권력과 의사결정만을 허락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이념 체계로 수행<sup>9)</sup>해 왔다(Michael Flood, 2007). 국내에서는 여성혐오를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노골적인 성적 욕설, 여성가족부에 대한 풍자 그리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대감 등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인경, 2016). 한국여성민우회(2016)는 여성혐오는 여성을 여성으로 규범화하거나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주장한다.

## 2) 여성혐오 사회적 배경

### (1) 전통적인 한국 가부장제 사회구조

여성혐오 출현의 사회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구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가부장제에서 생겨난 여성혐오는 여성을 향한 차별 혹은 비하라는 점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어진 사회적 견해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만해도 여성은 소유물과 거래의 대상으로 열등한 존재였고 남성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도구 대상이었다(김보은, 2017).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성 범죄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살해당한 피해자는 여성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sup>10)</sup> 또한 언론 사건 피해자의 원인

7) 중세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들이 음식에 독약을 타서 ‘자신들을 막 다룰 것’이라는 일말의 의심을 하게 되었다. 9c(1008년) ~ 12c(1012년) 신분제에 관한 설교(부르카르트, Bishop of Worms)는 그 당시 여성들이 주로 주술적인 내용과 수행했던 주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주술과 주문은 대부분 음식에 빗대어 표현했다. 예를 들어 생리혈 또는 정액을 음식에 넣어 남편의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8) 우에노 치즈코(Chizuko Ueno)는 이를 ‘성별 이원제 젠더 질서의 심층적 핵’이라 부른다.

9)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는 “20-30대 여성들은 전통 가부장적 세대에서 자라진 않았으나 사회에 여성혐오가 문제라는 점에 분노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0)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년 3월 7일경 ‘2021년 언론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보고서’를 공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약 83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약 17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9명, 주변인의 피해까지 포함한 피해자 수는 약 319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이 여성에게 있다는 식의 기사 제목이나 보도 역시 가부장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황주영, 2013). 여성의 주체적인 삶보다는 현신적인 삶에 중점을 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웠다. 실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여성 예술가인 신사임당은 예술가로서 천재성에 주목하기보다 현모양처 혹은 좋은 어머니의 표본으로 제한을 두어 인식해온 인간의 태도 또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규제하려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권혁남, 2017).

반면, 일각에서는 현대의 여성혐오가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인해 발행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심화는 자본주의 삶의 확장으로 자유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도시화를 초래했다. 인간은 육체와 감정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상품 생산과 소비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생긴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와 압박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간은 내면에 슬픔, 분노 그리고 혐오라는 감정이 형성된다. 이현재(2016)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여성혐오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 사회에 경제적인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신자유주의 도래로 인한 무한 경쟁을 직면하게 된 남성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꼈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혐오를 반영하는 퇴행적 심리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모현주, 2008).

## (2) 기술의 발전

연이은 여성혐오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의제 설정이 쉬움에 따라 그동안 여성혐오로 고통받아왔던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sup>11)</sup>되었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가져다준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증가시켰으나 가짜 뉴스 같은 허위 정보가 만발하고 혐오를 양성하고 알리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과 그것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성희롱의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소모되었다.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된 계기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를 위한 결정하면서부터로 예측<sup>12)</sup>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가 확

최소한의 값으로, 실제로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인터넷 이용률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터넷 서비스인 소셜미디어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이용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실시한 '한국 인터넷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92.7%, 여성은 87.7%로서 아직 남성의 이용률이 높지만, 소셜미디어 이용률에 있어서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여성의 이용률이 더 높은 서비스도 있다.
- 12)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전원 100% 일치로 위헌을 내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판결문에는 5가지 위헌 사유가 담겨 있다. 재판부는 1) 군 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 이기에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대되기 시작했고 이후 개똥녀, 된장녀 등의 ‘○○녀 시리즈’의 유행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김유향, 2019).

### 3) 온라인에서 나타난 여성혐오 국내 사례

여성혐오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혐오 문제는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이슈 거리로 다뤄졌고 여성혐오 표현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댓글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김수아(2015)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 되지 않던 것들이 의논되고 언론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만들어진 여론에서 화제가 되면서 여성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을 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 내 주요 의제로 발전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여성혐오 표현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9년 6월 19일 트위터에 ‘배달의민족에서 상품으로 출시한 포스트잇 광고 이미지 경악스럽다’라며 ‘여성혐오 마케팅 한두 번도 아니고 이래도 사업이 통하니 계속 이러는 거겠지. 역겹다’라는 배달의민족의 홍보 방법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과 함께 ‘제 여자친구의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내 여자친구 노트’라는 광고 이미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적혀있었다. ‘우리 팀장님 커피 설탕 몇 스푼?’과 같은 여직원의 업무가 마치 커피를 타는 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과 더불어 ‘성형 전 내 얼굴은 ㅋㅋ?’, ‘3일 전 다짐했던 다이어트 계획은?’, ‘몇 달 동안 못 재었던 나의 몸무게는?’과 같은 여성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문장들이 적혀있었다(김형수, 2019). 소비자들은 여성혐오 광고에 대해 비판했고 결국 광고는 삭제되었으나 이틀 만에 약 1만 5000번 이상 리트윗(retweet)<sup>13)</sup>될 만큼 광고 주목도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도 작용했다.

### 4)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 표현 유형

그렇다면 어떤 표현들이 여성혐오로 간주하는가? 해외 사례를 보면 특정 여성(페미니스트, 사회적

수 없다는 점(헌법 제39조 제1항) 2)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란 점(헌법 제11조 제1항) 3) 고용·근로에 있어 남녀를 달리 취급하게 돼 공무원임권이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점 4)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헌법 제32조 제4항) 5) 해당 공직의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 취임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점(헌법 제25조) 등이다.

13) ‘배달 중개업에서 그냥 배달 한남 수준 됐네^^’, ‘배민...초심을 잊었군요’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 ‘여성혐오가 어찌면 저렇게 구석구석 팍팍 차 있냐’, ‘딱 한남 같다’라는 식의 댓글이 달렸다. 또한 2016년 배달의 민족은 ‘1/n 티셔츠’ 광고로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더치페이를 뜻하는 문구만으로는 문제 되지 않았으나 여성들이 더치페이를 싫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회적인 질타를 받았다. 잇따른 여성혐오 논란으로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성별이나 성적지향, 장애, 종교, 인종, 민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사회적 차별이 주어지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소수자)을 향한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다. 반면 한국은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여성을 향한 공격<sup>(14)</sup>예: 개똥녀) 보다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한국 여성을 일반화하여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모습들이 과열되어 있다.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여성혐오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서 발견될 수 있으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성 일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 Levmore & Nussbaum(2012)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 속에서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비하함으로써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여성이 모든 이가 인정할 정도로 똥똥하거나 성형 괴물(성괴)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댓글로 표현한다. 이러한 외모 비하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 때문에 그리고 특정 여성은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해도 되기 때문에 라는 인식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단어가 여성 비하 표현으로 바뀌거나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여성을 신체 일부로 변형한 단어로 표현한 것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성의 성욕 풀이 대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오히려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러한 성적 대상화는 나이와도 연관이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여성을 지칭하는 노처녀와 노처녀를 비하하는 샹페녀(결혼 시장에서 퇴출한 여자)가 있다. 이는 여성을 성이나 출산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를 문제로 삼는다.

<표 1> 온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여성혐오 표현의 주요 특징과 예시

내용	구분	특징	예시
외모 소재로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내용	외모	1) 주로 여성의 비만, 성형 등에 대해 알보는 듯한 언어적 표현이 담김 2) 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이 미흡하다는 언어적 의미가 전달됨	똥녀,오크녀,왕폭탄,청글녀,잇몸녀,스크림녀,해돋녀,화떡녀,애정결핍녀,꿀벅지,베이글녀,쭈쭈빵빵
비하·편견을 내포하는 내용	남성성, 여성성	1) 성기 표현 2) 성적 대상화 하는 내용	양기모피,정액받이,육변기,좃집,공중변소,좃물받이
	나이	여성이 나이가 들면 더이상 남성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됨	아지매,샹페녀,노처녀
	능력	한국 여성은 특정 영역에서 무능하다는 식의 생각을 내포함	경단녀,김여사

14) 2005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배설을 했다. 당시 그 여성은 애완견의 향문은 닦았으나 바닥에 떨어진 애완견의 배설물은 그대로 둔 채 다음 정거장(아현역)에서 내렸다. 결국 같은 칸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개의 배설물을 처리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한 시민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여성의 사진과 할아버지가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는 모습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여러 사이트에 퍼지게 되었고,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사진 속 여성을 비난했던 사건을 일컫는다.

한편 일각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특정 영역에서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 여사와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로 표현된다. 김 여사는 운전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운전 미숙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용된다. 특정 성별이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성적 차별을 갖는 사람들이 대개 ‘여성 운전자들은 그럴 것이다’라는 편견 때문에 악의적으로 여성을 가해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하와 편견을 내포하는 여성혐오 표현들은 여성에 대한 멸시와 뿌리 깊은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특정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개적이기에 더욱 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 3. 연구 문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여성혐오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도출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 여성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와 그 비중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 여성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 속에서 여성혐오 표현의 내용적 특성은 무엇인가?

### 4. 연구 방법

대학생들이 소통하는 공간인 에브리타임에서 HOT 게시물 227개와 댓글 3,820개를 수집하였고 수집 기간은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2022년 9월 14일부터 - 9월 30일까지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제목과 댓글을 정제·분석하기 위해 언어는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합 개발 환경(IDE)은 Jupyter Lab, 네트워크 시각화 프로그램 Ucinet 6.0.ver 등을 활용하여 3가지 분석기법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정제 방법은 먼저 re 패키지를 활용하여 특수문자 및 텍스트(Text)에 불용어를 제거하였고 이후 해당 내용들을 맞춤법 검사기(부산대)를 통해 1차 정제 수행하였다. 아래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의미가 있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를 konlpy 패키지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collections 모듈의 Counter 함수로 단어의 빈도를 구하여 상위 200위 이내 단어를 총 3회에 걸쳐 수정 및 불용어 처리로 2차 정제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사용한 분석기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인 워드 클라우드로 이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다. 데이터 프레임(Data Frame)형식의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로 변

경하면서 크기와 진하기를 통해 빈도를 표현하였다. 두 번째 기법은 단어와 단어 간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2way-워드 트리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구글 차트(google chart)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한 기법은 단어 간 연관성이 높게 군집 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분석으로 수행에 필요한 상위 50위 이내 단어 X 단어 매트릭스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각 문단 단어 동시 출현 빈도로 산출하였고 생성 매트릭스를 Ucinet 6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 수행하였다.

## 5. 연구 결과

우선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게시글에 노출된 단어 중 높게 나타난 빈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여자, 남자, 문제’ 키워드가 높게 도출된 것으로 보아 남녀 간 갈등이 있으므로 판단된다. ‘거지, 혐오, 페미’ 등의 키워드는 남녀 간 갈등을 촉진하는 단어로 빈도가 높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한 욕설의 빈도가 나타났으나 학술적 목적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 돼 삭제했다. ‘범죄, 피해자, 사건, 여성 혐오, 스토킹, 살인’ 키워드는 여성은 스토킹, 살인 등 남성에 의한 여성 혐오로 일어난 사건으로 남성으로부터 피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다른, 입장, 군대’ 키워드에서는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경력을 보상으로 채워줘야 한다 등의 반응은 여성을 혐오하는 뜻으로 보였다. ‘차별, 인권, 사회, 인권 연대, 한국’ 키워드에서는 한국은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차별 있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상위 50위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1	사람	279	26	논리	47
2	생각	251	27	공감	42
3	문제	164	28	본인	41
4	혐오	163	29	상황	41
5	차별	123	30	스토킹	40
6	여성	105	31	성별	39
7	여자	101	32	피해	38
8	댓글	93	33	보장	37
9	남자	93	34	소리	37
10	범죄	92	35	여론	36
11	인권	84	36	살인	36
12	사회	81	37	애초	35
13	다른	76	38	여성혐오	35
14	입장	70	39	자체	34
15	경도	70	40	반대	33
16	피해자	65	41	단어	32
17	남성	64	42	의명	32
18	개인	56	43	지적	31
19	이유	55	44	방식	31
20	주장	54	45	이용	31
21	이해	52	46	정치	30
22	사건	52	47	비판	30
23	학우	52	48	인권연대	30
24	페미	48	49	한국	28
25	거지	47	50	군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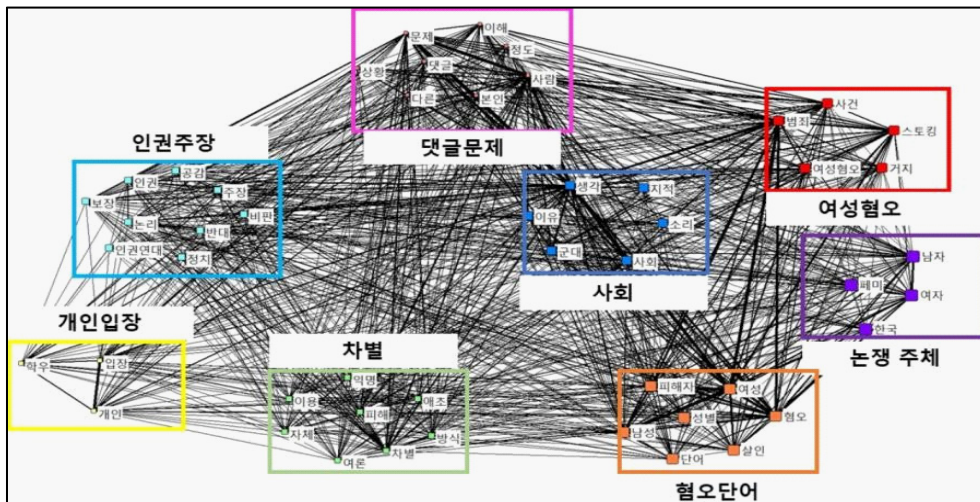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을 활용해 단어와 단어 간 군집 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혐오 단어’는 살인의 결과를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로 인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쟁 주체’는 남자가 여자를 비하하는 단어인 ‘페미니스트’, 여자가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인 ‘한국 남자’는 온라인상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홍주현 & 나은경(2016)은 SNS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함을 주목하였고 피해자 유형에 따라 혐오 표현을 유형화하고 혐오 표현의 강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사건의 희생자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많음을 규명한다. ‘사회’는 남녀 간 언쟁이 있을 시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로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여자는 이미 간부로 군대에 갈 수 있으며 병사로도 군 복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점이다. 여성 징

병제는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모든 여성이 군대에 가는 제도다. 2025년부터 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예측한다. 그래서 여성 징병제가 부족한 병력을 해결할 방안으로 논의된다(단비 뉴스, 2021). ‘차별, 개인 주장 그리고 인권 주장’은 남녀의 차별로 인해 인권 주장을 경쟁하듯 개인 주장만 펼치고 있어 심각성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



## 6. 결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조직화한 젠더 질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견된다.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문제시되는 원인은 점점 보수적인 사회로 변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관한 개인의 감정은 줄어들었으며 결국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현상을 겪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향한 혐오적인 발언을 일반화시키거나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형성되는 것들이 결코 한국 사회에 이바지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연구를 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허민숙(2017)은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질적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남자와 여자 간 논쟁에서 성별을 비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예시로 ‘페미니스트, 한국 남자’와 같은 단어로 비하하는 발언과 ‘군대’와 같은

단어에서는 ‘여성은 남자에게 남자는 군대나 가라, 남성은 여성에게 여자들도 군대 가라’ 등의 발언이 오고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온·오프라인과 관계없이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성들의 모습을 과도한 예민함으로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과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각이 혼재해 혐오 표현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은 & 최승미, 2019). ‘인권, 차별, 사회 그리고 문제’와 같은 단어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혐오는 성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규명하였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올바른 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백승대 & 안도현, 2017).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야 할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남녀 간 논쟁의 장이 지속된다면 향후 더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비하하는 댓글에 대한 금지, 삭제 등의 선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정 커뮤니티에서 일정 기간을 특정하게 지정해 분석하였다는 점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학교 커뮤니티를 가지고 비교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Dina, A., & Massimo P. (2022). *The arabic misogyny and sexism corpus with annotator subjective disagreements*. *European Language Resources Association*. pp. 2282-2291. Paper presented at The Thirteenth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in Marseille, France.
- Green, D. P., McFalls, L. H. & Smith, J. K. (2001). Hate crime : An emergent research agend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p 479-504.
- Levmore, S., & Nussbaum, M. C. (2010).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상현 (역) (2012). <불편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인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 의왕: 에이콘.
- Michael, F. (200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n and masculinities*. Routledge
- Patrick, C. & Marco, W. (2012). "An Australian dictionary redefines misogyny", *The world*.
- 강도립 (2022. 10. 17). 악성 댓글 사회·경제적 비용 年 최대 35조, <서울경제>.
- 고한솔 & 황보연 (2016. 5. 24). 가부장적 억압 털 받았던 2030여성 분노 더 큰 이유는, <한겨레>.
- 권혁남 (2017). 여성혐오 문제의 사회적 의미 연구. <인문사회 21>. 8(5). p 91-106.
- 김보은 (2017).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담론의 사회적 구성 : <중앙일보>와 <한겨레>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구 (2022. 9. 19.). 신당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에도 속 갑론을박, <한국경제>.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p 279-317.
- 김양진 (2022. 9. 25.). 스토킹 살해는 사회적 참사다, <한겨레 21>.
- 김유향 (2019). 한국 인터넷과 온라인 여성주의. <KISO 저널 제 34호>. Retrieved [https://journal.kiso.or.kr/?p=9484#footnote\\_2\\_9484](https://journal.kiso.or.kr/?p=9484#footnote_2_9484).
- 김윤주 (2021. 9. 3). 여성·지역 대상 온라인 혐오 표현, ‘기사 댓글’서 가장 많이 접한다, <한겨레>.
- 김정은 & 최승미 (2019). 남녀대학생의 여성혐오 경험에 대한 연구: FGI를 통한 질적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3). p 129-167.
- 김지혜 & 이숙정 (2017).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천 전략과 장치의 세속화 가능성.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1). p 85-113.
- 김현란 (2011). 중세 유럽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혐오(misogyny)와 숭배(cult) -사회구조적·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27. p 69-98.
- 김형수 (2019. 6. 21.). ‘00가 쏜다’ 할인쿠폰 사과한 배달의민족, 이번엔 ‘여혐 마케팅’?, <그린포스트코리아>.

- 김효인 (2019. 6. 26.). 배달의민족, 끊이지 않는 ‘여성혐오’ 마케팅논란, <투데이신문>.
- 김희진 (2020. 5. 15). 포스트잇으로 돌아본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여전한 외침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경향신문>.
- 리얼미터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편] (2019). (혐오차별 경험 조사 보고서 Focus Groups Interview). Retrieved <https://www.dbpia.co.kr/journal>.
- 모현주 (2008). 화려한 싱글과 된장녀 -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사회연구>. pp. 41-67.
- 박두호 (2021. 8. 6).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 <단비뉴스>.
- 박준희 (2022. 9. 19). 신당역 사건에 박지현 그릇된 남성문화 때문...여성 혐오살인 명확히 해야, <문화일보>.
- 백승대&안테준 (2017).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56(1). pp. 205-235.
- 송유근 & 권승현 (2022. 9. 15). “신당역 화장실서 옛 동료 ‘스토킹 살인’...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문화일보>.
- 양질전화 (2021. 5. 19).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인터넷상 여론 몰이 ‘지하철 개똥녀 사건’. Retrieved <https://sun38.tistory.com/212>.
- 엄수아 (2014. 2. 20).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 <여성신문>.
- 우경조 (2021). 한국사회 젠더 갈등 관련 언론사 보도 프레임 분석: ‘강남역 살인사건’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인문사회 21>. 12(5). pp. 333-348.
- 우에노 치즈코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윤하나&김상호 (2018).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26권 1호. pp. 5-33.
- 이경희 (2017). 여성혐오와 윤리상담. <윤리교육연구>. 44. pp. 219-247.
- 이승주 (2020). <20대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젠더 갈등의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 Allport의 집단 간 접촉이론을 근거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경 (2013). 한국사회 젠더 갈등과 ‘사회 통합’. <저스티스>. pp. 94-109.
- 이현재 (2016). <여성혐오, 그 후>. 경기도: 들녘.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pp. 185-219.
- 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역사비평>. pp. 353-381.
- 최희령 (2022. 11. 14). “당신은 과연 ‘신당역 화장실’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 <대학알리>.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Retrieved <http://women21.or.kr/tc/attach/6577932902.pdf>.

- 한국여성민우회 (2016). Retrieved <https://twitter.com/womenlink/status/733584849278099458>.
- 한국여성의전화 (2022. 3. 7). 2021년 분노의 게이시-언론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한 여성 살해 분석. Retrieved [http://hotline.or.kr/board\\_media/73680](http://hotline.or.kr/board_media/73680).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Retrieved <https://www.kisa.or.kr>.
- 허민숙 (2017). 젠더 폭력과 혐오 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 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pp. 77-105.
- 홍주현 & 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 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및 혐오 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pp. 145-175.
- 황주영 (2013. 4. 8).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기획연재](1) 여성 살해, 여성의 죽음을 정치화하기”, <참세상>.

## Abstract

# An Analysis of Misogynistic Expressions in Sindang Station Murder Case: Focusing on HOT Posts in Online Community 〈Everytime〉

Si Yoon Lee(Master, Korea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study using big data to understand how women are perceived in the comments of 〈Every Time〉 HOT posts, an online community space fo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after the Sindang Station murder cases that occurred on September 14, 2022.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gender-negative words are frequently used in the debate between men and women. In addition, words such as human rights, discrimination, society, and problems appeared frequently, which was already a phenomenon that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Therefore, if such debates between men and women continue in the online community space that should be used for positive purposes, it is expected that more negative effect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it seem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and deletion of depreciating comments.

Keywords : Online misogyny expression, misogyny, gender conflict, negative effect

---

\* Korea University (anycall1425@korea.ac.kr)

#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체능> '축구 편'을 중심으로\*

이혜선(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성별 재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특히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특정 성별을 향한 특성 기대인 성역할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2(성별: 남성 vs. 여성) x 2(결과: 성공 vs. 실패) 집단간 요인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293명 대상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자극으로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체능> '축구 편'의 일부 장면을 동영상 형태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은 남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하였고, 다른 집단보다 약한 수준을 보였다.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 혹은 여성을 향한 성역할 기대를 변화시켰는데, 남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역할 기대를 증가시켰으나 여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를 감소시켰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다양성 논의의 재현 맥락 고려 필요성과 성역할 역고정관념 정보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 사회적 역할 이론,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기대, 젠더 스키마, 여자 축구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RF-2022S1A5B5A17046135),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일정상의 사유로 사전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 hsle@sogang.ac.kr

## 1. 서론

유엔(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가운데 하나인 성평등은 잠재력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영국 BBC는 자신들이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50 프로젝트(50:50 equality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BBC의 50:50 프로젝트는 성별에 따른 미디어 재현 비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남성과 여성의 재현 맥락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김선호, 2021). 미디어를 통한 재현은 모델 관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적절한 역할이 구분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ssey & Bandura, 1999; Eagly & Wood, 1991). 예를 들면, 가족 관찰 리얼리티 예능을 통한 전통적 성역할의 긍정적 재현이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이용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이승희, 2018).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 다양성 논의가 재현 비율뿐 아니라 재현 맥락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해보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인 축구에 초점을 맞추어,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스포츠 분야 미디어 콘텐츠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뉴스 기사에 실린 운동선수 사진(Duncan & Massner, 1998), 해설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Pope, 2018), 언론사 트위터(Adá-Lameira & Rodríguez-Castro, 2020), 스포츠 기자가 사용한 프레임(Kian & Hardin, 2009)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해당 연구들은 스포츠 분야 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나,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성역할 고정관념 정보의 효과를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특히 축구는 남성의 스포츠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Caudwell, 2002; Skogvang & Fasting, 2013), 축구 예능에서 남성의 성공과 여성의 실패는 성역할 고정관념 정보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축구 예능에서 남성의 실패와 여성의 성공은 성역할 역고정관념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성역할 고정관념 정보와 성역할 역고정관념 정보의 효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 혹은 완화될 가능성을 분석해볼 것이다. 둘째, 축구 예능 노출 이후 변화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특정 성별을 향한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역할 이론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성별에 기대되는 역할이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논의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성별과 역할에 관한 단서들이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역고정관념 정보로 작용하고, 특히 미디어 등장인물 관찰 경험이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젠더 스키마 이론을 검토하여, 성별 중심의 미디어 재현이 성별에 관한 도식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남성 혹은 여성을 향한

특성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며, 주요 분석에는 축구 예능 프로그램인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체능> '축구 편'을 적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미디어 재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역할 이론과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식별된 성별에 따라 개인의 특성·역할·행동 등에 관하여 다른 기대가 형성된다(Eagly, 1987). 이글리와 우드(Eagly & Wood, 1991)는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성별에 따른 분업이 젠더 역할을 향한 기대 혹은 성별에 관한 신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는 육아·가사 노동·비서·간호사 등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타인을 보호하고 친절하며 온순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어왔다. 반면, 남성은 사회 및 경제 구조 속에서 권력이나 지위를 지닌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면서 자기주장이 강하며 독립적이고 유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성별에 따른 분업은 남성과 여성이 다른 기술에 익숙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며 실질적인 기술 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Eagly & Wood, 1991; Ridgeway, 2001). 과거에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구분된다는 성역할 기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고(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정신병리학 분야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정된 행동의 수행 여부가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사회 적응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성역할 기준은 개인이 규정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Broverman et al., 1972). 특히 성역할 기대는 성별에 따른 역할과 특성의 차이에 관한 합의된 믿음을 의미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Nash, 1975; Rosenkrantz, Bee, Vogel, & Broverman, 1968).

성역할 고정관념은 대체로 남성에게 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Lynn, 1959; Rosenkrantz et al., 1968). 예를 들면, 남성적인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사물이나 활동을 더 선호하거나 자녀 가운데 첫째로 남아를 출산하였다면 여아를 출산하였을 때보다 둘째 출산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Broverman et al., 1972). 린(Lynn, 1959)은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특권이 제공된다고 보았으나, 로젠크란츠와 동료들(Rosenkrantz et al., 1968)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부여(ascribe)한다고 보았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은 특정 성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남성과 더 쉽게 연합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역할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험연구 결과(Eagly & Steffen, 1984), 여성이 남성보

다 주체성이 더 약할 것이라고 인식되지만 가사도우미 역할을 맡은 남성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을 맡은 여성보다 주체성 수준이 더 낮으리라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주체성이 더 강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역할 수행에 관한 기대가 특정 성별을 향한 신념으로 이어진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성역할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역할 사이의 모순은 역할 부조화 편견(role incongruity prejudice)으로 이어진다(Eagly & Karau, 2002). 이글리와 카라우(Eagly & Karau, 2002)는 역할 일치 이론(role congruity theory)을 설명하며 여성 지도자를 향한 두 가지 유형의 편견을 지적하였다. 첫째, 지도자 역할에 남성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여성 지도자를 향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모순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속 여성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이 상충하는 상황에 놓이며,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규범적 신념 위반이 발생한다. 이글리와 카라우(Eagly & Karau, 2002)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지도자를 향한 고정관념이 감소한다면 이러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 규범을 벗어나는 태도·특성·행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이 충돌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수록 역할 부조화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 역시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 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역할이론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논의는 역할 부조화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역할 부조화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Signorielli, 1990).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게 직업을 가지며 집안일 역시 공평하게 분담하는 내용의 그림책을 보여주었을 때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lerx, Fidler, & Rogers, 1976). 특히 밀러와 리브스(Miller & Reeves, 1976)는 어린이의 성역할 인식과 부모의 성역할 인식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지적하며,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텔레비전에서 성역할에 관한 역고정관념 정보를 제공하면 어린이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실험 결과, 텔레비전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관찰한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해당 직업이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여성 대학생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nnings-Walstedt, Geis, & Brown, 1980).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맥락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 대상 비디오 게임 실험 결과, 성애화



(sexualized)된 여성 캐릭터로 비디오 게임에 참여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여성의 인지 능력에 관하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Behm-Morawitz, & Mastro, 2009).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는 젠더 역할의 모델링으로 작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친다(Bussey & Bandura, 1999). 모델링은 사회인지이론의 관찰 학습과도 관련이 있으며(Bandura, 2004),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결과를 관찰할 때 대리적 강화가 발생한다(Salkind, 2008). 관련하여, 린(1959)은 성역할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 수행 여부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행동 강화로 이어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어린 남자아이가 상처를 입었음에도 울지 않았을 때 부모가 칭찬함으로써 보상이면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반대로 상처를 입어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여성 비하 단어를 사용하며 조롱한다면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특정 행동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 기준에 부합하는 특성·태도·행동에 의한 보상과 처벌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미디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보상 혹은 처벌이라는 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축구는 남성의 스포츠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으며(Caudwell, 2002; Scraton, Fasting, Pfister, & Bunuel, 1999; Skogvang & Fasting, 2013), 브라질의 한 연구자가 여성이 접근하면 안 되는 최후의 보루(bastion)라고 표현할 만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Knijnik, 2015). 특히 브라질은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제공하는 남자 축구 순위 2위(FIFA, 2021a), 여자 축구 순위 7위(FIFA, 2021b)로 성별과 무관하게 선수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축구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런던 올림픽 8강전 패배 이후 브라질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Knijnik, 2015). 선행연구(Knijnik, 2015)는 런던 올림픽 전후로 브라질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고, 브라질 여자 축구 대표팀은 1996년 이후 올림픽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음을 강조하며 여성 선수를 향한 편견을 지적하였다. 스포츠 분야 미디어는 여성 운동선수의 승리, 성취, 활약 등을 축소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Pope, 2018). 예를 들면, 여성 운동선수의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에서는 선수의 강점이나 힘을 약화하는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Christopherson, Janning, & McConnell, 2002). 이러한 현상은 여성 운동선수를 향한 양가적 언어로도 설명된다(Pope, 2018). 즉 해설자가 남성 운동선수의 경기를 설명할 때는 주로 강점(강력한, 자신감 있는, 지배적인 등)을 강조하고, 여성 운동선수의 경기를 설명할 때는 강점과 약점(지친, 패닉, 낙심한 등)을 함께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 축구선수를 향한 역할 부조화 편견과 관련이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여성 축구선수의 관찰 경험이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정보는 활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발생할 만큼 무의식중에 활성화되며(나은영, 1997), 영상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Flerx,

Fidler, & Rogers, 1976). 나은영(1997)은 성역할 고정관념 정보들의 활성화 방향에 따라 해당 인물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부정적으로 활성화되면 해당 인물을 향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축구 예능을 통해 제공된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정보 역시,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남성 vs. 여성)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은 강화 혹은 완화되는가?

연구문제 1-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남성 vs. 여성)과 결과(성공 vs. 실패)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은 강화 혹은 완화되는가?

### 3)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한다고 가정할 때,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받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된다는 믿음을 의미하며(Nash, 1975), 규정된 역할 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Eagly & Wood, 1991; Skolnick, Bascom, & Wilson, 2013). 예를 들면, 남성에게 주체적인 행위자 역할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남성에게 목표 지향적, 독단적, 공격적, 경쟁적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여성에게 공동체 기반 양육자 역할이 더 적절하다는 고정관념은 여성에게 친절, 공감, 동정과 같은 특성을 기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 모두 성역할 기준에 포함되는데, 성역할 기준은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성별과 특정한 속성, 행동, 태도 간의 연합이자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Kagan, 1964). 해당 논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 모두 남성과 여성을 특정 역할이나 특성과 연합하려는 경향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같은 성별을 가진 다른 인물에게 연합된 특성을 적용할 가능성을 설명한다. 성역할 기준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문화적으로 승인된 특성을 요약한 것(Kagan, 1964, p. 138)”으로도 볼 수 있고, 광고에서 특정 성별을 특정 역할로 묘사하면 해당 성별의 특성을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인지적 단서로 작용하기도 한다(Lafky, Duffy, Steinmaus, & Berkowitz, 1996).

성역할 기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산드라 벰(Sandra Bem)에 의해 이루어져 왔

고, 벡은 성역할 기대 측정 도구(Bem, 1974)와 젠더 스키마 이론(Bem, 1981)을 함께 제시하였다. 성역할 기대 측정 도구(Bem Sex Role Inventory, BSRI)를 제안한 연구에서(Bem, 1974), 벡은 1950년대 문헌 자료와 1970년대 당시의 사회 인식을 고려하여 남성 혹은 여성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남성에게는 과업 완수를 향한 인지적 초점, 예를 들면 강력한, 공격적인, 지배적인, 독립적인,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는 등이 언급되었다. 반면,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것에 관련된 감정적 관심, 예를 들면 명랑한, 부드럽게 말하는, 이해심이 많은, 따뜻한 등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받았다(Bem, 1974). 벡은 이러한 특성들이 성별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특성을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 규정짓고 이를 중첩될 수 없는 양극단으로 설정하면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개인에게 여러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간과하기 쉽고,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의 규정 그 자체로 인해 당면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상황 적응성을 살펴보는 실험 연구로 확장되었는데(Bem & Lewis, 1975), 개인의 특성을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 규정짓는 경향이 강한 개인의 상황 적응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자신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발휘해야 할 때는 적절하게 대응하지만, 자신의 성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특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사회 제도와 문화에 의해 구성되며, 남성스럽다거나 여성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특성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개인의 인식은 성별을 향한 스키마를 만들어낸다(Bem, 1981a; Starr & Zurbriggen, 2017). 개인은 성별과 특성 간의 연관성을 해석할 때 성별에 관한 개인의 인지구조를 호출하는데, 이때 성별과 특성 간의 연합으로 구성된 인지구조인 젠더 스키마를 사용한다(Bem, 1981a; Larsen & Seidman, 1986). 벡(Bem, 1981b) 스스로 밝힌 것처럼, 성역할 기대 측정 도구는 젠더 스키마 그 자체보다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이 남성 혹은 여성과 얼마나 더 강하게 연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성별을 향한 사회 구성원 개인의 해석 결과이자, 남성 혹은 여성이 특정한 특성을 보여야 한다고 평가하는 과정에 젠더 스키마를 호출하여 적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미디어의 남성 혹은 여성 재현은 미디어 속 등장인물을 역할 모델로 제시하여 젠더 스키마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성이나 소년이 과학자 역할을 더 많이 맡고, 어린이들은 과학이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들의 인지구조를 거쳐서 나타난다(Baker & Leary, 1995). 이러한 논의를 사회적 역할이론과 사회인지 이론에 각각 적용해보면, 미디어 재현은 특정 성별의 역할 수행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성역할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역할 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3. 연구방법

#### 1) 실험설계 및 실험참여자

본 연구는 주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2(sex: male vs. female) x 2(result: win vs. lose) 집단 간 요인설계(between-group factorial design)를 적용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축구 예능 속 남성 혹은 여성 등장인물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기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축구 예능과 무관한 영상에 노출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을 설계하였으므로, 2020년 기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인터넷 이용률이 99.8~99.9%로 나타난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실험참여자는 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스포츠/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는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역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참여자 293명의 연령 평균은 39.91( $SD = 10.75$ )이었고, 성별과 연령 기준으로 할당 표집하여 총 5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 수도권 거주자(60.1%), 30대(27.0%), 사무직 종사자(33.4%), 대학교 졸업자(64.8%)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 2) 실험 자극

스포츠 분야 미디어는 여성 축구선수의 활약이나 성과를 축소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Pope, 2018). 여성 운동 선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운동선수로서의 역량보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적용하거나 보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유상건, 2016; 한정훈·구소현·이한주,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이 참여하는 축구 경기일지라도 비교적 긴 호흡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는 축구 예능 프로그램,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체능>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동영상 형태의 실험자극을 제시하였다. 축구 예능은 축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혹은 비연예인 출연자가 전문 감독의 지도와 훈련을 토대로 축구 경기에 참여하여 승리 혹은 패배의 결과를 마주하는 서사구조를 지닌다(강보라·공다솜·윤태진, 2015). 특히 축구 예능은 정해진 결론이 없다는 점에서 리얼리티 형식을 취하며, 축구 예능 출연자는 축구선수로 묘사되고 축구선수의 상징이 된다(서재철, 2017).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여자 축구 전문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여성들로 구성된 여러 축구팀이 전문 선수 및 감독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 리그전에 참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KBS <우리동네 예체능-축구 편>은 스포츠 전문 예능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축구를 소

재로 제작한 5회분의 방송으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남성들이 축구팀을 구성하여 훈련 및 지도를 받아 다양한 축구팀과 승부를 겨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2021년에 제작 및 방영 중이며 KBS <우리동네 예체능-축구 편>은 2013년에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두 프로그램은 제작 시기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명인이 축구팀을 구성하여 경기에 참여한 뒤 승부를 겨룬다는 서사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화면 구도 및 시각적 요소의 배치가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실험자극 제작 과정에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우리동네 예체능-축구 편>에 각각 등장하는 승부차기 장면이 주목하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전·후반전으로 이루어진 축구 경기에 참여하여 승부를 겨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축구 경기의 전·후반전은 여러 명의 축구선수가 등장하며 감독의 전략이나 선수 간의 협업을 통해 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 혹은 실패라는 결과를 축구 예능 등장 인물에게 직접 귀인할 수 있도록 승부차기 장면을 활용한 동영상 형태의 자극물을 제시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에서 성별을 식별하기 어려운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동영상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실험자극



### 3) 실험 절차

실험참여자들은 할당표집을 위한 기본 정보에 응답한 뒤 각 집단에 배치되어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 경험, 축구 경기 참여 경험, 성역할 고정관념(사전), 성역할 기대(사전)에 관한 측정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이후 통제 변인인 등장인물 매력 측정 문항에 먼저 응답하고, 동영상 형태의 실험 자극에 노출된 이후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관한 조작점검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이후 성역할 고정관념(사후)과 성역할 기대(사후) 측정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응답한 뒤 설문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를 마친 뒤 실험 자극이 연구를 위해 재편집되었다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 4) 측정 문항

###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의한 분업으로 인해 특정 성별에 적절한 역할이 구분된다는 신념과도 관련이 있다(Eagly & Wood,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측정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밀스와 동료들(Mills, Culbertson, Huffman, & Connell, 2012)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던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The Gender Role Stereotypes Scale, GRS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온 7개의 항목(예: 잔디 깎기, 오일 교체와 같은 자동차의 기본 유지 보수, 집 앞 눈 치우기 등)과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던 7개의 항목(예: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GRSS 측정 문항은 1인 가구일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대부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각 항목의 답변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항상 남성에게 적합하다)부터 5점(항상 여성에게 적합하다)으로 구성하고, 3점은 동등한 책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점(항상 여성에게 적합하다)부터 5점(항상 남성에게 적합하다)으로 구성하되,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도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도록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온 4개 항목은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KMO = .89), 내적 타당도를 낮추는 6개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에 해당하는 5개 문항(잔디 깎기, 남녀가 함께하는 여행에서의 운전, 결혼 프로포즈, 자동차의 기본 유지보수, 집 앞 눈치우기)과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에게 해당하는 3개 문항(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성역할 고정관념-남성 .66, 성역할 고정관념-여성 .73이었는데, 인간 대상 연구 최소 기준을 .65로 본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2개의 요인 모두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Vaske, Beaman, & Sponarski, 2017).

## (2) 성역할 기대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 혹은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관련된 특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Skolnick, Bascom, & Wilson, 2013). 관련하여, 정진경(1990)은 성역할 기대 측정 도구(Bem Sex Role Inventory, BSR)를 포함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 뒤 한국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 이름 붙여진 특성들로 구성된 한국형 성역할 척도(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제안하였다. 해당 척도는 김지현과 동료들(김지현·하문선·김복환·하정혜·김현정, 2016)에 의해 단축형 척도가 제안되었는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5개의 특성(예: 씩씩하다, 대범하다, 자신감이 있다 등)과 여성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5개의 특성(예: 상냥하다, 다정다감하다, 따뜻하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역할 척도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김도희, 2018), 지각된 성역할 정체성(김현정·김다솜·박상희, 2016), 성역할 고정관념(오현정, 2021)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왔다. 특히 오현정(2021)은 성역할 척도의 각 문항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설명한다고 인식하는지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여성)에게 적용하였다. 즉,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여성)은 씩씩할 것이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여성)은 상냥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설정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성역할 기대 측정 문항을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과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에게 각각 적용함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요인은 남성-남성성으로,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은 대범할 것이다’처럼 남성을 향한 남성성 특성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남성-여성성으로,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은 다정다감할 것이다’처럼 남성을 향한 여성성 특성 인식으로 구성되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특성을 다루므로 역코딩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여성-남성성으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와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여성에게 적용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 역시 역코딩하여, 남성-여성성과 여성-남성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특성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 요인은 여성-여성성으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따뜻할 것이다’와 같이 여성을 향한 여성성 특성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별 크론바흐 알파값은 남성-남성성 .90, 남성-여성성 .93, 여성-남성성 .89, 여성-여성성 .94였다.

## (3) 통제변인(등장인물 매력, 축구 경기 참여 경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에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예상되는 두 개의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등장인물의 매력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해당 변인을 별도로

측정하였다. 이호배와 정이규(1997)는 유명한 광고모델의 매력이 광고를 향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아름다운, 멋지다, 친밀감이 든다, 매력적이다 등의 형용사로 광고모델 매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되, 주요 변인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름다운’과 ‘멋지다’는 제거한 뒤 총 4개 문항(친밀감이 든다, 매력적이다, 호감이 간다, 친근하다)을 사용하였다.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등장인물 매력 측정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92였다.

다음으로, 실제 축구 경기 참여 경험이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자 실험참여자의 축구 경기 참여 경험을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귀하께서는 최근 한 달 이내에 선수 혹은 감독으로 축구 경기(동호회 포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관하여, 24명(8.2%)의 참여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269명(91.8%)의 참여자는 축구 경기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4. 연구결과

### 1) 기초분석

연구문제 분석에는 SPSS 27.0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전 조작점검,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각각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자극 대상 조작점검 결과, 축구 예능의 남성 등장 인물에게 노출된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시청한 동영상에 남성이 등장한다 답변하였다( $n = 118$ ). 여성 등장 인물에게 노출된 실험참여자 역시 등장인물의 성별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 $n = 113$ ). 다음으로, 축구 예능 등장인물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는 장면에 노출된 실험참여자( $n = 117$ )들과 승부차기에 실패하는 장면에 노출된 실험참여자( $n = 114$ ) 모두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승부차기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성별·결과에 관한 실험 자극의 조작이 연구진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실험 자극 노출 이전에 측정하였던 성역할 고정관념-남성( $M = 3.45, SD = 0.36$ )과 성역할 고정관념-여성( $M = 3.18, SD = 0.40$ )의 집단 간 평균값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성역할 기대 역시, 실험 자극 노출 이전 측정한 남성-남성성( $M = 4.15, SD = 1.00$ ), 남성-여성성( $M = 4.12, SD = 0.98$ ), 여성-남성성( $M = 4.19, SD = 0.91$ ), 여성-여성성( $M = 4.38, SD = 1.01$ )의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등장인물 매력은 통제집단( $M = 3.60, SD = 1.11$ )의 평균값이 전체 표본의 평균( $M = 4.40, SD = 1.12$ )이나 실험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집단1  $M = 4.61, SD = 0.86$ , 집단2  $M = 4.29, SD = 0.93$ , 집단3  $M = 4.67, SD = 1.18$ , 집단4  $M = 4.88, SD = 1.07$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 이는 등장인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실험 자극을 제시한 통제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조작 역시 연구진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의 왜도 -0.552~0.480, 첨도 -1.239~6.294였다. 사전에 측정한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의 첨도 6.29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첨도의 정규성 가정 충족 기준인 10을 초과하지 않았다(Kline, 2005). 따라서 주요 변인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실험 자극 노출 이전에 측정한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은 성역할 기대 가운데 남성-남성성, 여성-여성성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은 남성-남성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1〉. 참고). 반면, 성역할 기대 가운데 남성-남성성은 남성-여성성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63$ ), 여성-여성성은 여성-남성성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53$ ). 이러한 경향을 실험참여자(여성)들이 성역할 기대에 관한 측정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향한 남성성/여성성이나 여성을 향한 여성성/남성성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향한 전통적 고정관념 기반의 특성 기대인 남성-남성성(예: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성은 씩씩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을 향한 전통적 고정관념 기반의 특성 기대인 여성-여성성(예: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상냥할 것이다)만을 연구 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사전)		1						
2.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사전)		.19**	1					
3. 성역할 기대(1): 남성-남성성(사전)		.22**	.15*	1				
4. 성역할 기대(2): 남성-여성성(사전)		-.08	-.10	-.63**	1			
5. 성역할 기대(3): 여성-남성성(사전)		.01	.06	-.37**	.39**	1		
6. 성역할 기대(4): 여성-여성성(사전)		.17**	.03	.47**	-.35**	-.53**	1	
7. 등장인물 매력		.17**	.03	.21**	-.11	-.19**	.33**	1
전체 표본 (N = 293)	평균 (표준편차)	3.45 (0.36)	3.18 (0.40)	4.15 (1.00)	4.12 (0.98)	4.18 (0.91)	4.38 (1.01)	4.40 (1.12)
집단 평균 (표준편차)	[집단 1] 남성 & 성공 (n = 61)	3.49 (0.39)	3.18 (0.33)	4.30 (0.91)	4.19 (0.95)	4.20 (0.96)	4.45 (1.11)	4.61 (0.86)
	[집단 2] 남성 & 실패 (n = 57)	3.36 (0.29)	3.11 (0.37)	4.15 (0.96)	4.13 (0.96)	4.15 (0.84)	4.34 (0.96)	4.29 (0.93)
	[집단 3] 여성 & 성공 (n = 56)	3.44 (0.38)	3.28 (0.51)	4.23 (1.11)	3.93 (0.97)	4.23 (1.13)	4.45 (1.12)	4.67 (1.18)
	[집단 4] 여성 & 실패 (n = 57)	3.51 (0.40)	3.18 (0.44)	4.19 (1.08)	4.14 (1.03)	4.19 (0.74)	4.36 (0.87)	4.88 (1.07)
	[집단 5] 통제집단 (n = 62)	3.47 (0.33)	3.15 (0.31)	3.88 (0.92)	4.18 (0.98)	4.16 (0.85)	4.33 (0.96)	3.60 (1.11)

\*\*  $p < .01$ , \*  $p < .05$

## 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1은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주목하며, 연구문제 1-2는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완화 혹은 강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실험자극 노출 전후로 구분하여 측정함에 따라, 연구문제 분석 과정에도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이원공분산분석(two-way ANCOVA)을 진행하였다. 이원공분산분석에는 제시된 실험 자극의 성별과 결과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성별, 축구 경기 참여 경험, 등장인물 매력, 실험 자극 이전에 측정한 성역할 고정관념(남성, 여성)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을 향한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292) = 8.18,  $p < .01$ , 부분  $\eta^2 = .03$ ].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은 잔디깎기, 자동차 유지 보수 등이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다루는데,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의 평균값(M = 3.33, SE = 0.03)은 남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M = 3.44, SD = 0.03)이나 통제집단(M = 3.40, SE = 0.04)보다 낮았다. 성별과 결과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성별과 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표 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사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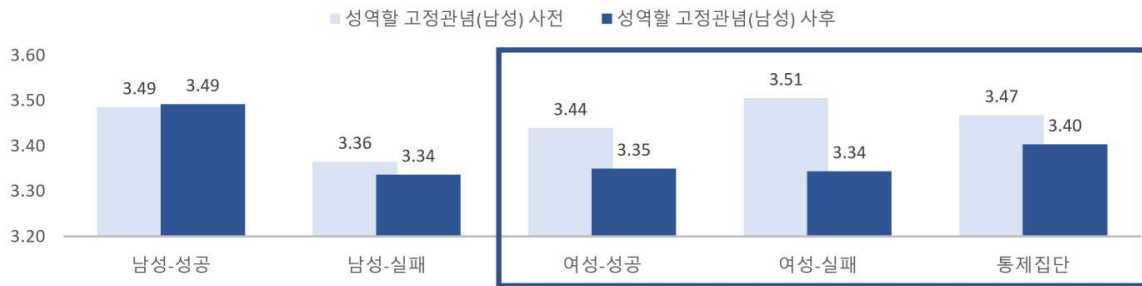
	Type III SS	df	F	p	$\eta^2$
성별	0.00	1	0.01	.918	.00
축구경기 참여 경험	0.27	1	3.20	.075	.01
등장인물 매력	0.05	1	0.62	.434	.00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사전)	10.86	1	127.15	<.001	.31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사전)	2.91	1	34.08	<.001	.11
<b>성별</b>	<b>0.70</b>	<b>1</b>	<b>8.18</b>	<b>.005</b>	<b>.03</b>
결과	0.10	1	1.20	.275	.00
성별 x 결과	0.03	1	0.37	.543	.00

주.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여겨져 왔던 역할(예: 잔디깎기, 자동차 유지 보수 등)이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답변하는 경향을 측정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집단 내 차이는 집단별 대응 표본 T-검정으로 실험 자극 노출 전후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분석 결과,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은 결과와 무관하게 남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하였다(여성-성공:  $M_{사전} = 3.44$ ,  $M_{사후} = 3.35$ ,  $p < .01$ , 여성-실패:  $M_{사전} = 3.51$ ,  $M_{사후} = 3.34$ ,  $p < .05$ ). 반면, 남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의 남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축구 예능의 결과와 무관하였다. 통제집단 역시 남성과 관련

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함에 따라,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성별이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내 차이는 남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만이 완화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남성) 변화



주. 성역할 고정관념(남성) 사전-사후 간의 차이는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였음

### 3)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는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역할 기대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별, 축구 경기 참여 경험, 등장인물 매력, 성역할 기대의 사전 측정값을 통제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축구 예능 노출 이후 측정된 성역할 고정관념, 즉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구분된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남성 혹은 여성을 향한 성역할 기대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표 3). 참고). 먼저 남성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beta = .15, p < .001$ ). 즉, 잔디 깎기나 자동차 유지 보수 등이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우리 사회 남성 대부분이 씩씩하거나 대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 즉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가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은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9, p < .05$ ).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잔디 깎기나 자동차 유지 보수 등이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우리 사회 여성 대부분이 상냥하거나 다정다감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9, p < .01$ ). 반면,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가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은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7, p < .05$ ).

〈표 3〉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종속 변인] 성역할 기대(1): 남성-남성성(사후)									
	모형 1					모형 2				
	B	SE	t	p	VIF	B	SE	t	p	VIF
성별	.01	.08	.06	.952	1.06	.03	.08	.30	.762	1.11
축구경기 참여 경험	-.15	.15	-1.01	.312	1.04	-.23	.15	-1.57	.117	1.06
등장인물 매력	.10	.04	2.70	.007	1.05	.10	.04	2.85	.005	1.06
성역할 기대(1): 남성-남성성(사전)	.78	.04	18.64	<.001	1.08	.77	.04	18.58	<.001	1.12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사후)						.40	.11	3.81	<.001	1.09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사후)						-.25	.11	-2.22	.027	1.11
F	101.78***					74.38***				
adj. R <sup>2</sup>	.58					.61				
Durbin-watson						1.82				
	[종속 변인] 성역할 기대(4): 여성-여성성(사후)									
	모형 3					모형 4				
	B	SE	t	p	VIF	B	SE	t	p	VIF
성별	.01	.07	.21	.837	1.03	.02	.07	.30	.765	1.10
축구경기 참여 경험	.06	.12	.47	.636	1.04	.00	.12	.04	.972	1.07
등장인물 매력	.08	.03	2.60	.010	1.13	.09	.03	2.95	.003	1.15
성역할 기대(4): 여성-여성성(사전)	.80	.03	23.25	<.001	1.13	.77	.04	22.07	<.001	1.20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사후)						.24	.09	2.64	.009	1.14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사후)						-.20	.09	-2.17	.031	1.09
F	165.07***					114.73***				
adj. R <sup>2</sup>	.69					.70				
Durbin-watson						2.02				

\*\*\* p < .001

연구문제 2는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전 분석에서 축구 예능 노출 이후 측정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전 측정값을 통제된 모형에서도 성역할 기대의 사후 측정값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더 나아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 간의 관계가 실험 자극 노출 전후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이전 분석과 같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실험 자극 노출 이전에 측정하였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를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실험 자극 노출 이후 주요 변인 간의 관계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사후분석 결과,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의 사전 측정값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모형( $F = 4.83, p < .001, adj. R^2 = .08, Durbin-watson = 1.91$ )에서 남성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사전 측정값은 유의

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beta = .15, p < .05$ ). 하지만 여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의 사전 측정값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모형( $F = 7.02, p < .001, adj. R^2 = .13, Durbin-watson = 1.89$ )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추가한 모형의 F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2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자극 노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5. 결론

###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축구 예능 노출 이후 성역할 고정관념이 특정 성별을 향한 성역할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과 결과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 가운데 주로 남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역할에 적용되며, 특히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잔디 깎기, 자동차 기본 유지 보수, 집 앞 눈 치우기와 같은 역할이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나타났다.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보면,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과 통제집단은 실험 자극 노출 이후 남성에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척도 중간점에 가까울수록 제시된 역할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합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실험 자극 노출 이후 중간값에 더 가까워졌으므로, 잔디 깎기, 자동차 기본 유지 보수, 집 앞 눈 치우기와 같은 역할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축구 예능 속 남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은 역할 수행의 결과보다 역할 수행 그 자체로 인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축구 예능 속 남성 등장인물은 결과와 관계없이 축구를 하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 정보로 작용하고,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은 결과와 무관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고정관념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역고정관념 정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Flerx et al., 1976; Miller & Reeves, 1976; Signorielli, 1990). 하지만 사회인지 이론의 대리적 강화, 즉 성공 혹은 실패라는 결과의 차이는 이 연구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통제집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과 유사하나 남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과 대비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에 제공된 실험 자극이 역설적으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자극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과 무관한 실험 자극을 제시하고자 등장인물의 성별 혹은 결과를 식별할 수 없는 동영상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동영상이 오히려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자극을 제공함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축구 예능 등장인물의 성별은 남성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 즉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평가받았던 역할에 관련된 고정관념만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을 고려하여 해석해볼 수 있는데, 미디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초기와 달리 배양이론의 후속 논의는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에 주목한다(Potter, 2014). 즉, 이 연구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축구를 실험 자극으로 제시함에 따라, 주요 결과 역시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역할에만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먼저 미디어 재현의 다양성은 성별과 역할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축구처럼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던 역할을 여성이 수행하는 모습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여겨져 온 역할을 남성이 수행하는 모습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에 노출된 집단은 남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만이 감소하였을 뿐 여성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이 함께 감소하지는 않았다. 즉,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던 역할을 향한 평가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져 온 역할은 동등한 책임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선행연구는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 부담인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논의한 바 있고(황경아·홍지아, 2011), 여성 리더를 가리키는 알파걸 담론 속 여성의 성취가 결국 소녀의 남성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지적하기도 했다(엄혜진, 2022). 특히 엄혜진(2022)은 소위 '소년 위기' 담론이 성립하려면 여성적 특징 중심의 성취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알파걸의 성취는 남성적 방식이나 남성적 특징의 수용으로 인해 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 노출 이후 남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만 감소한 것은 또 다른 여성의 남성화를 의미하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역할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남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와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 모두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여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 혹은 여성을 향한 성역할 기대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할이론에 따르면, 성별 중심의 역할 구분은 해당 성별에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형성한다(Eagly & Wood, 1991; Skolnick, Bascom, & Wilson, 2013). 따라서 남성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사회적 역할이론을 뒷받침하지만, 이 외에 다른 결과들은 사회적 역할이론과 상충한다. 특히 남성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 남성 대부분은 씩씩할 것이다' 같은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와 '우리 사회 여성 대부분

은 다정할 것이다’ 같은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 모두를 증가시켰다. 반면,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와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 모두를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먼저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 같은 역할이 가사노동자 혹은 전업주부를 향한 특성 기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잔디 깎기, 자동차 유지 보수,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남성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부장제에 기반한 소위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평가를 끌어냈을 수 있다.

한국에서 기혼 여성 혹은 전업주부가 된다는 것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력단절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됨을 의미하며, 특히 전업주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남주연·김진숙, 2014). 해당 논의에서 언급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주로 미혼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표상인 청순가련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대상, 즉 환상화(조영실, 2020)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업주부 혹은 기혼 여성을 미혼여성과 구분하려는 시도는 여러 문헌에 반복하여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김기범과 차영란(2003)은 엄마, 아줌마, 아가씨의 사회적 표상이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인 아줌마는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아가씨와 반대되는 개념이자 여자답지 못한 여자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아줌마를 향한 사회적 표상은 억척스럽거나 주책스럽고 수다스러운 특성과 관련이 있고, 같은 기혼 여성이지만 아줌마와 대비되는 사회적 표상을 지닌 어머니나 아내는 포근하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사회적 표상을 지닌다(김기범·차영란, 2003). 즉, 한국에서 집안일, 빨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는 기혼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표상은 억척스럽거나 생활력이 강하다는 특성이므로, 여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를 오히려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줌마를 향한 사회적 표상인 수다스러움은 발언권에 대한 남성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줌마는 남성을 우월한 주체로 대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응하고 저항한다(이경, 2017). 따라서 집안일, 빨래, 청소 등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할수록 우리 사회 남성 대부분이 씩씩하거나 대범할 것이라는 특성 기대 역시 낮아졌을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축구 예능 노출 이후 측정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면, 잔디 깎기, 자동차 유지 보수,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역할이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수록 남성을 향한 남성성 기대와 여성을 향한 여성성 기대는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집안 대청소, 빨래, 식사 준비 같은 역할이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평가할수록 성역할 기대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역할이론에 따르면 남성에게 특정 역할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면 남성에게 해당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이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 있고,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역할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성별 중심의 역할 구분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한 특성 기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주로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역할(예: 잔디 깎기, 자동차 유지 보수, 집 앞 눈 치우기 등)은 남성에게 씩씩함, 대범함, 자신만만함 등의 특성을 기대하고 여성에게 상냥함, 다정다감함, 따뜻

함 등의 특성을 기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집안 대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의 역할이 여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특정 성별을 향한 특성 기대를 논의할 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여성을 향한 부정적 고정관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 연구는 남성 혹은 여성을 재현한 미디어 콘텐츠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별을 향한 특성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 2) 시사점과 한계

이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사회적 역할이론, 사회인지 이론, 젠더 스키마 이론을 각각 적용하여, 축구 예능 속 등장인물의 성별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남성 혹은 여성의 역할 수행 장면을 재현한 미디어 콘텐츠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미디어 콘텐츠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 혹은 여성을 향한 특성 기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미디어의 성별 재현이 남성 혹은 여성을 향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특성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역할이론, 사회인지 이론, 젠더 스키마 이론에 관한 각각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함과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특성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 연구의 또 다른 학술적 의의는 축구 예능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 자극으로 제시한 축구 예능 노출 이후 유의미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역고정관념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젠더 스키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라이밍 효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성별 중심의 미디어 재현은 약 40초 분량의 동영상이나 축구 예능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을 향한 특성 기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재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미디어 재현에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주요 결과는 미디어의 남성 혹은 여성 재현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축구 예능 속 여성 등장인물이나 성별을 식별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에 노출되었을 때 성역할 고정관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축구 예능 속 남성 등장인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은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등장인물의 성별과 역할이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별과 역할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 노출은 성역할 고정



관념을 변화시키고, 미디어 콘텐츠 노출 이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특정 성별을 향한 특성 기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관 부서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가 성별과 역할 측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여성이 출연하는 축구 예능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에 반대되도록 재현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과거에 방영되었거나 현재 방영 중인 축구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초창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자극은 축구 예능의 다양한 내용 가운데 승부차기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축구 경기나 축구 예능은 다른 선수와의 협업이나 감독의 전략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공 혹은 실패라는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승부차기 장면을 사용하였으므로, 주요 결과를 축구 경기 혹은 축구 예능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후속 연구는 축구 경기나 축구 예능의 다양한 요소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혹은 완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결과를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여자 축구 전문 예능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해설자와 감독은 전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 해설자들이 여성 선수들의 경기를 평가하는 장면이나 남성 감독이 여성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장면 등은 맥락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축구 예능으로 재현된 동성(同性) 간의 경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성(異姓) 간의 경기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콘텐츠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역할 부조화 상황에 놓인 여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수록 성역할에 관한 규범적 신념은 위반되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Eagly & Karau, 2002). 이 연구에서 결과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남성과 여성 간의 축구 경기를 재현한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관계 역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성별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예: 소방관, 간호사 등)에서 다른 성별이 큰 성과를 얻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성역할 기대 변화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축구에 주목하여 미디어 콘텐츠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성역할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미디어는 현실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현실은 사람들의 인식을 재구성하기도 한다(Bandura, 2004). 따라서 미디어와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논의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보라·공다솜·윤탤훈 (2015). 텔레비전 리얼리티 게임쇼의 게임성과 실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2호, pp. 92-1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12, 21). 인터넷이용률. Retrieved 12/21/21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6)
- 김기범·차영란 (2003). 한국 가정주부들의 심리적 특성분석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사모님, 아줌마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8권 3호, pp. 77-99.
- 김도희 (2018). 대학 생활적응과 성별 및 성 역할 정체감의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권 6호, pp. 371-383.
- 김지현·하문선·김복환·하정혜·김현정 (2016). 한국 단축형 성역할 척도(KSRI-SF; Korean Sex Role Inventory-Short Form)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7권 1호, pp. 125-147.
- 김현정·김다솜·박상희 (2016). 이름의 성별 전형성과 지각된 성역할 정체성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3권 2호, pp. 1-31.
- 나은영 (1997). 역고정관념의 암묵적 활성화와 인상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권 2호, pp. 129-145.
- 남주연·김진숙 (2014).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의 이행에서 심리적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권 3호, pp. 759-786.
- 서재철 (2017). TV 예능 프로그램 <청춘 F.C.>에 대한 문화정치(학) 관점의 비판적 읽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권 4호, pp. 113-135.
- 엄혜진 (2022). 소년 위기(boy crisis) 및 알파걸(alpha girls) 담론에 나타난 백래시의 의미 지형. <한국여성학>, 38권 4호, pp. 43-82.
- 오현정 (2021).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따른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과 성역할 순응의도 : 롤플레이밍 게임과 1인칭 슈팅게임 이용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pp. 171-209.
- 유상건 (2016). 여성,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권 4호, pp. 39-53.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권 1호, pp. 82-92.
- 조영실 (2020) 젠더 평등이라는 '환상'과 '여성혐오' : 박찬효의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기독교사상>, 통권 제737호, pp. 198-203.
- 한정훈·구소현·이한주 (2019). 남녀 운동선수 관련 언론보도의 성평등 정도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78호, pp. 217-229.
- 황경아·홍지아 (2011). TV매체에 재현된 한국사회의 모성실천. <미디어, 젠더 & 문화>, 19호, pp. 213-252.

- Adá-Lameira, A & Rodríguez-Castro, Y (2020). The presence of female athletes and non-athletes on sports media twitter. *Feminist Media Studies*, 21(6), pp. 1-18.
- Bandura, A. (2004). Social cognitive theory for personal and social change by enabling media. In A. Singhal, M. J. Cody, E. M. Rogers, & M. Sabido (Eds.), *Entertainment-education and social change: History, research, and practice* (pp. 75-96). Mahwah, NJ: Erlbaum.
- Baker, D., & Leary, R. (1995). Letting girls speak out about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2(1), pp. 3-27.
- Behm-Morawitz, E., & Mastro, D. (2009). The effects of the sexualization of female video game characters on gender stereotyping and female self-concept.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61(11-12), pp. 808-823.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pp. 155-162.
- Bem, S. L., & Lewis, S. A.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pp. 634-643.
- Bern, S. L. (1981a).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pp. 354-364.
- Bern, S. L. (1981b). The BSRI and gender schema theory: A reply to Spence and Helmreich. *Psychological Review*, 88, pp. 369-371.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pp. 59-78.
- Bussey, K.,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gender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Review*, 106, pp. 676-713.
- Caudwell, J. (2002). Women's experiences of sexuality within football contexts: A particular and located footballing epistemology. *Football Studies*, 5(1), pp. 24-45.
- Christopherson, N., Janning, M., & McConnell, E. D. (2002). Two kicks forward, one kick back: A content analysis of media discourses on the 1999 women's world cup soccer championship. *Sociology of Sport Journal*, 19(2), pp. 170-188.
- Duncan, M.C. & Messner, M. A. (1998) The media image of sport and gender, In Wenner L.A. (ed.) *MediaSpor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H., & Karau, S. J. (2002). Role congruity theory of prejudice toward female leaders.

- Psychological review*, 109(3), pp. 573-598.
- Eagly, A. H., & Wood, W. (1991). Explaining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meta-analytic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3), pp. 306-315.
- FIFA (2021a, 12, 20). Men's ranking. Retrieved 12/20/21 from <https://www.fifa.com/fifa-world-ranking/men?dateId=id13471>
- FIFA (2021b, 12, 20). Women's ranking. Retrieved 12/20/21 from [https://www.fifa.com/fifa-world-ranking/women?dateId=ranking\\_20211210](https://www.fifa.com/fifa-world-ranking/women?dateId=ranking_20211210)
- Flerx, V. C., Fidler, D. S., & Rogers, R. W. (1976). Sex role stereotypes: developmental aspects and early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47(4), pp. 998-1007.
- Jennings-Walstedt, J., Geis, F. L., & Brown, V. (1980). Influence of television commercials on women's self-confidence and independent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pp. 203-210.
-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ex role identity.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37-16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ian, E. M., & Hardin, M. (2009). Framing of sport coverage based on the sex of sports writers: Female journalists counter the traditional gendering of media coverag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2(2), pp. 185-20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 Knijnik, J. (2015). Femininities and masculinities in Brazilian women's football: Resistance and compli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16(3), pp. 54-70.
- Lafky, S., Duffy, M., Steinmaus, M., & Berkowitz, D. (1996). Looking through gendered lenses: Female stereotyping in advertisements and gender role expectation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2), pp. 379-388.
- Larsen, R. J., & Seidman, E. (1986). Gender schema theory and sex role inventories: Some conceptual and psychometric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1), p. 205.
- Miller, M. M., & Reeves, B. (1976). Dramatic TV content and children's sex role stereotypes. *Journal of Broadcasting*, 20(1), pp. 35-50.
- Mills, M. J., Culbertson, S. S., Huffman, A. H., & Connell, A. R. (2012). Assessing gender biase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nder role stereotypes scale. *Gender in*

- Management*, 27(8), pp. 520-540.
- Mudrick, M. & Lin, C. A. (2017). Looking on from the sideline: perceived role congruity of women sports journalists. *Journal of Sports Media*, 12(2), pp. 79-101.
- Nash, S. C. (1975). The relationship among sex-role stereotyping, sex-role preference and the sex difference in spatial visualization. *Sex Roles*, 1(1), pp. 15-32.
- Petca, A. R., Bivolaru, E., & Graf, T. A. (2013). Gender stereotypes in the Olympic Games media? A cross-cultural panel study of online visuals from Brazil,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port in Society*, 16(5), pp. 611-630.
- Pope S. (2018) 'Who could name an England women's footballer?': Female fans of men's football and their views of women's football in England. In: Pfister G., Pope S. (eds) *Female football players and fans. football research in an Enlarged Europe*. London: Palgrave Macmillan.
- Potter, W. J. (2014). A critical analysis of cultivation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64(6), pp. 1015-1036.
- Ridgeway, C. L. (2001). Gender, status, and leadership.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37-655.
- Rosenkrantz, P., Bee, H., Vogel, S., & Broverman, I. (1968). Sex-role stereotypes and self-concept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3), pp. 287-295.
- Salkind, N. J. (Ed.) (2008). *Encyclopedia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s. 1-2).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cruton, S., Fasting, K., Pfister, G. & Bunuel, A. (1999). It's still a man's game? The experience of top-level European women footballer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4(2), pp. 99-111.
- Skogvang, B. O., & Fasting, K. (2013). Football and sexualities in Norway. *Soccer & Society*, 14(6), pp. 872-886.
- Skolnick, A., Bascom, K., & Wilson, D. (2013). Gender role expectations of disgust: Men are low and women are high. *Sex Roles*, 69(1-2), pp. 72-88.
- Signorielli N. (1990). Children, television, and gender roles. messages and impac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11(1), pp. 50-58.
- Starr, C. R., & Zurbriggen, E. L. (2017). Sandra Bem's gender schema theory after 34 years: A review of its reach and impact. *Sex Roles*, 76, pp. 566-578.



# 뉴스 정의적 차원의 읽기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함양

정선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 다변화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강화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감정 표현 증가와 뉴스로 인한 감정 각성이 뉴스 수용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뉴스로 발화되는 감정은 뉴스 정보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여 정보를 회피하거나 확증편향을 유도하여 뉴스 리터러시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에 감정 조절 역량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저널리즘에서의 감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커리큘럼 및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문항을 개발하였다.

## I. 서론

디지털 저널리즘이 도래하면서 감정이 주목받고 있다(Orgeret, 2020).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감정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여기며 공론장에서 배제되어왔다(Lecheler, 2020).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성애 호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Pantti, 2010) 감정 배제를 보편적 뉴스 가치 기준으로 간주하였다(Orgeret, 2020). 이러한 기존 언론과는 달리 디지털 저널리즘에서는 뉴스에 감정 표현이 드러나고 있으며(Wahl-Jørgensen, 2020), “독자를 웃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드는 뉴스(Newman, 2011)”가 선택되고 있다.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의 감정 기반 뉴스 콘텐츠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공유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Lecheler, 2020).

뉴스는 게이트키퍼(gate keeping)을 통해 생산자가 선택한 결과물로서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형성된다(김병건, 2022). 최근 기존 언론사뿐 아니라 종합편성 방송,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되는 뉴스는 중립성에서 벗어나 선정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김세중·정용국, 2014; 남영자, 2020). 이는 관심 경제 논리에 의해 독자의 마음과 감정을 경쟁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오늘날 뉴스들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Sivek, 2018). 더욱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도적, 유목적적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유포되는 가짜 뉴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감정과 집단 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등(최지수·윤석민, 2019)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부정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뉴스 생산과 소비에 감정이 동력이 되고,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논의되고 있다(Sivek, 2018; 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 텍스트의 이해·분석뿐 아니라 뉴스 생산과정 및 정치·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비판적 리터러시로서, 뉴스에 대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의 사회적 기능 및 영향력을 평가하는 능력이다(Fleming, 2015). 본 연구에서는 뉴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 비판적 이해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뉴스 리터러시가 뉴스 미디어를 중점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Fleming, 2015) 뉴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이해는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뉴스들은 감정에 끊임없이 호소하며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뉴스 환경에서 비판적 이해를 위한 정의적 차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은 “태도, 가치, 동기를 말하며 의견이나 신념, 가치 평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Miller, 2005). 뉴스 소비과정에서 정의적 요소가 뉴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누적 증명된 바 있다(염정윤·정세훈, 2018; 하승태·김대경, 2021; 최창식, 2021). 염정윤과 정세훈(2018)은 뉴스 수용자의 기존 신념과 일치 여부가 가짜 뉴스에 대한 태도 및 팩트체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뉴스는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는 가짜 뉴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승태와 김대경(2021)은 정치 뉴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서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정치적 뉴스로 유발되는 분노, 경멸, 혐오(ANCODI)의 부정적 정서가 정치적 정보처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 뉴스 수용자의 정치참여 행동에 ANCODI 정서의 매개 역할이 확인됐다. 최창식(2021)은 가짜 뉴스에 대한 지각된 불확실성이 형성하는 부정 감정과 감정적 평가가 뉴스 리터러시와 추가정보 획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짜 뉴스를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개인마다 어떠한 현상이나 이슈를 해석하는 각본(script) 또는 도식(schema)이 있는데, 그런 양식에서 벗어나는 불확실성에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된다고 보았다(Kramer, 2004; 최창식, 2021). 즉 뉴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유발된 감정이 뉴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서는 의사 결정 및 행동에 미치는 감정의 역할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뉴스로 인해 점화된 감정이 디지털 뉴스 독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뉴스 리터러시에 감정 조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Sivek, 2018). 무의식인 점화이거나 인지적 평가에 의한 발생이거나 감정 유발과정과는 관계없이, 감정은 인간의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7). 즉 뉴스가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특히 뉴스로 점화되는 분노, 슬픔은 그와 관련된 잘못된 기억 생성을 이끌어(Bland, How, & Knott, 2016) 올바른 논리적 추론을 방해할 수 있다(Martel, Pennycook, & Rand, 2020). 이는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 뉴스 리터러시에 감정과 태도 등 정의적 차원의 노력을 더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뉴스 리터러시에서 뉴스로 유발되는 감정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Sivek, 2018). ‘감정이 합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할 수 있는가’를 뉴스 리터러시 역량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 검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뉴스 생산자, 정보원, 정보, 이미지 등을 분석하는 인지적 차원의 비판적 이해를 강조해왔다(Sivek, 2018). 스톤브룩 대학(Stony Brook University)의 뉴스 리터러시 커리큘럼은 전통 저널리즘에 기초하여 정보의 사실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도록 설계하였고, 뉴스 메시지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보다 인지 능력 개발을 목표로 설계되었다(Fleming, 2015). 양정애와 동료들(양정애 외, 2015)은 비약적인 정보 생산과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에 따른 정보분별 능력을 강조하며 뉴스 리터러시의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체크로지 체크리스트(News Literacy Project’s Checkology checklist)에서는 사용자가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업 도구와 뉴스 평가를 위한 17개의 질문 문항을 제공하고 있다(Caulfield, 2017; Checkology, n.d.). 이처럼 뉴스 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들은 대체로 뉴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뉴스를 접할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 뇌 안에서 뉴스 자극과 관련된 기억 또는 경험 등과 함께 감정이 점화(priming)되기도 하고, 뉴스의 내용이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아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뉴스를 회피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정보 처리를 유도한다(나은영, 2021). 감정을 파악하여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은 뉴스 리터러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역량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감정에 의존한 판단을 줄이는 것은 학습을 통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의식적인 노력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Hobbs, 2010).

본 연구는 뉴스와 감정,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고 현행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감정(emotion)을 인지적 차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서(affect), 주관성(subjective)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정의적 차원의 핵심 요소로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이용준·권이은, 2020; Ireton, & Posetti, 2020)에서 제시한 정의적 영역의 질문을 바탕으로 읽기 문항을 개발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

하고자 한다. 정의적 차원의 읽기 교육은 뉴스 읽기로 점화되는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의 내용을 분석, 평가,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역량과 더불어 뉴스로 유발된 감정을 확인하는 자기반성적 분석 태도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뉴스와 감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리버만(Lieberman)은 이를 인간의 진화적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Lieberman, 2013/ 2015). 사회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이라 한다(Carretié, Mercado, Tapia, & Hinojosa, 2001). 즉 사람들이 나쁜 정보에 관심이 높은 것은 심리적, 사회적, 진화론적 요인에 의한 복잡한 현상으로, 좋은 사건보다 나쁜 사건에 더 주의 집중하고, 나쁜 정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

정보 추구의 비대칭성은 뉴스 콘텐츠에서도 나타난다. 뉴스는 재난, 혐오, 폭력 등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은 독자들의 높은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쉽다. 러셀(Russell)이 제안한 감정 구조와 구성을 기반으로 보면 뉴스는 극성(valence)을 기준으로 부정 감정(슬픔, 분노) 범위로, 각성(arousal)을 기준으로 높은 각성(흥분, 두려움)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Russell, 1980). 뉴스는 부정적-고자극의 정보를 더 많이 유통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레티와 동료들은 ERP(Electroencephalographic recording of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측정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반응의 진폭이 크고, 반응 대기 시간이 짧은 것을 발견했다(Carretié et al. 2001). 더 깊게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감정 반응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정 감정을 각성하는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일 것이다(김병수, 2017).

남영자(2020)는 영상 뉴스에 등장하는 감정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감정 분류모델로 분석하여 뉴스로 인한 감정적 성향을 파악하였다.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종편 뉴스, 유튜브 뉴스를 모두 분석한 결과, 종편 뉴스에서 분노 감정이, 지상파 뉴스는 슬픔이 높게 표출되고 있었고, 유튜브 뉴스에서는 중립을 벗어난 다양한 감정들이 모두 높게 파악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 수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종편 뉴스와 유튜브 뉴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뉴스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며 부정 감정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세중·정용국, 2014). 유튜브, 블로그 등 1인 뉴스 미디어가 범람하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는 분노, 슬픔, 공포 등의 감정적 표

현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이다(Wahl-Jørgensen, 2020).

뉴스의 감정 표현 증가는 저널리즘과 뉴스 이용자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관점도 있다(Beckett, & Deuze, 2016). 육하원칙과 역피라미드형의 엄격한 뉴스 형식을 거부하고 스토리텔링 중심의 뉴스로 전환함으로써 독자들의 긍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Beckett, 2015). 베켓(Beckett, 2015)은 소셜 네트워킹 시대에 뉴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게임, 음악 등 매력적인 콘텐츠들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하며, 뉴스의 감정적 자극을 통해 독자의 높은 반응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이는 곧 뉴스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로 이어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스의 감정이 뉴스 리터러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능할 것인가는 독자가 뉴스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예측된다. 합리적, 비판적 뉴스 수용을 위해 감정을 분석하는 뉴스 리터러시가 필요할 것이다.

## 2. 뉴스 리터러시에서 감정과 인지

인지(cognitive)와 함께 감정은 태도 및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왔다(김상희, 2011). 인지와 감정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견해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하나는 인지가 감정의 필수 선행 요소라는 관점(Lazarus, 1984)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와는 관계없이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관점(Zajonc, 1980, 1984)이다. 라자루스(Lazarus)는 감정은 자극에 대한 인지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감정유형과 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Lazarus, 1982, 1984). 한편, 자논(Zajonc)은 선호도, 태도, 의사 결정 등이 인지적 판단과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유발되는 감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Zajonc, 1980, 1984). 논란이 많은 가운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인지적 판단의 관여없이 감정이 합리적 판단 및 의사 결정에 주요한 기능이 있음(Damasio, 1985)이 밝혀지고 있다. 즉 감정이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김상희, 2011),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위해 감정 조절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해정과 최지향(2022)은 뉴스에서 증가하고 있는 감정적 표현이 뉴스 소비자의 감정적 각성을 일으켰을 때, 인지적 뉴스 정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적 표현 정도가 높은 정치 뉴스를 소비한 뉴스 이용자는 각성 정도가 높을수록 뉴스 품질과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각성 감정이 뉴스 이용자의 인지적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고각성 감정은 뉴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뉴스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용준·권이은, 2020).

이영훈은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사회봉사학점제 실시’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고, 그 사안에 대한 긍정·부정 감정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탐

구하였다. 그 결과, 특정 사안에 대한 감정이 태도에 영향을 미쳐 정적 감정은 그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부정적 감정은 그 사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즉 감정이 태도를 형성하고, 태도는 사안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영훈, 2010).

이상의 연구에서 뉴스 표현에 담긴 감정 및 뉴스로 인해 점화하는 감정이 뉴스 품질과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책임감 있게 뉴스를 소비하는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의 주요한 역량으로 정의(Fleming, 2015)하고 있듯이, 비판적 이해를 위한 선행요인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역량을 뉴스 리터러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3.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정의적 차원

뉴스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재정의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부 특정 전문가만 생산하던 뉴스는 다수의 개인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유통되던 뉴스가 포털, SNS, 유튜브를 통해 공급되면서 개인도 유통에 참여하게 되었다. 뉴스를 소비만 해오던 뉴스 이용자는 뉴스 소비자이자 생산자, 즉 생비자(Prosumer)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학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재개념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Schwarz, 2011; 이재원·박동숙, 2015; 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Hobbs, 2010b). 소셜 미디어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 미디어에 접근하여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뉴스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숙정·육은희·진소연, 2021)”, “민주사회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참여하기 위해 뉴스 미디어와 뉴스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evaluate)하고 해석(interpret)하며 유통(process)시키는 동시에 뉴스에 참여하는(participate in) 능력(Schwarz, 2011; 이재원·박동숙, 2015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함양하는 지식·기능·태도로서 이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이다(이숙정·육은희·진소연, 2021). 즉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력 강화”와 더불어 “참여하는 시민상” 추구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양정애·김경보, 2018). 뉴스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건전한 뉴스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학습 경험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적대적인 뉴스 해석을 줄이고 뉴스 신뢰도 평가에 효과가 있었고(Jeong, Cho, & Hwang, 2012),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숙 외, 2021).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태도를 목표로 언급은 하며 정의적 차원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은 태도, 가치, 동기 등 인간 행동 특성에서 정서적인 면, 심리적인 면을 말한다(이태욱·최현종·전용주, 2020). 뉴스 리터러시에서 정의적 영역은 뉴스에 대한 태도, 가치 등을 다루는 영역으로, 소셜 미디어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김병수, 2017).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를 뉴스 구성, 생산자, 정보원 등을 분석하는 인

지적 차원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뉴스에 대한 인식과 반응, 평가에서 감정의 역할을 이해하며 읽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감정은 태도와 가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뉴스 정보 이해 및 판단에서 주요하게 작동한다. 뉴스 수용 측면에서 수용자의 감정과 정체성, 신념 등에 따라 뉴스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메타적 질문을 통해 자기의 감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용준·권이은, 2020).

본 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의적 차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정의적 차원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인지적 차원을 위한 메타적 질문은 무엇인가?

### III. 연구 결과

뉴스 리터러시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커리큘럼,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왔다(Maksl et al, 2017; 양정애 외, 2015, 김경희 외, 2017).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정의적 차원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적 차원의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 1. 뉴스 리터러시 교육 선행연구 분석

양정애와 동료들(양정애 외, 2015)은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스토니브룩의 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포인터의 뉴스 대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여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리하였다(〈표1〉참조). 교육 영역을 “뉴스의 이해, 뉴스 생산과정 이해,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 활용, 뉴스 소비자”로 구분하였다. 교육 핵심 구성요소로는 뉴스의 정의, 생산자 이해, 보도 원칙 등 인지적 차원과 뉴스를 통한 관심사 확장과 소비자로서의 역할, 책임 등 정의적 차원의 내용 요소가 고루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뉴스 생태계 구조에 대한 인지적 학습 요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구조로 인해 뉴스의 감정 표현 심화, 부적 감정 유발 등 뉴스가 유발하는 감정에 관한 내용 요소가 부족하고, 감정 발생을 인지하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감정이 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정의적 차원의 성찰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잠재력으로 다루고 있는 감정의 정서적 역할(Orgeret, 2020)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뉴스 리터러시 핵심 내용 요소와 길러야 할 능력 재구성

뉴스 리터러시 교육 영역	핵심 구성 요소	길러야 할 능력
'뉴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li> <li>기능</li> <li>필요성</li> <li>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의 정의 파악하기</li> <li>뉴스의 필요성 인식하기</li> <li>뉴스를 안(보는) 이유 조사하기</li> <li>뉴스 가치 설명하기</li> <li>뉴스와 유사 정보 구별하기</li> </ul>
뉴스 생산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제작과정</li> <li>언론사의 재원구조</li> <li>뉴스보도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생산과정 조사하기</li> <li>뉴스 보도 원칙 설명하기</li> <li>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li> <li>뉴스의 품질 평가하기</li> </ul>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생태계 구조</li> <li>디지털·모바일 플랫폼'</li> <li>뉴스 소비 변화</li> <li>뉴스 이용의 개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생태계 구조 파악하기</li> <li>뉴스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인식하기</li> <li>인터넷이 뉴스 생태계에 미친 영향 설명하기</li> <li>포털·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성찰하기</li> <li>'많이 보는 뉴스'와 '필요한 뉴스' 비교하기</li> <li>'낙시성' 제목의 기사 분별하기</li> <li>뉴스 이용의 개인화 원인 분석하기</li> <li>선택적 뉴스 노출 직접 관찰하기</li> </ul>
뉴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와 내 관심사</li> <li>정보 분별력에 기초한 효율적 정보 탐색 및 분류·정리</li> <li>뉴스를 통한 관심사 확장과 ·민주 시민 교양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시간 내 효율적 정보 탐색하기</li> <li>탐색 정보의 사실성 확인·판단하기</li> <li>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하기</li> <li>뉴스를 통해 관심사 확장하기</li> <li>뉴스를 통해 진로 탐색하기</li> <li>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 참여하기</li> <li>글로벌 이슈로 관심 분야를 확장하고 참여 방법 모색하기</li> </ul>
뉴스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할</li> <li>책임</li> <li>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인과 일반 시민 작성 뉴스 비교하기</li> <li>일반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에서 드러난 문제점 성찰하기</li> <li>뉴스 저작권 인식하기</li> <li>댓글 예절 탐구하기</li> <li>뉴스를 통한 개인정보침해 사례조사·분류하기</li> <li>알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토의하기</li> <li>언론 피해 구제 절차 조사하기</li> </ul>

출처: 뉴스 리터러시의 이해(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김경희와 동료들은 뉴스 이용자의 비판적 이해를 강조하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을 제시하였다(〈표2〉참조). 규범적 보도 원칙을 근거로 바람직한 뉴스를 제시하고, 뉴스의 정확성, 투명성, 독립성, 완전성, 공정성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뉴스의 분석과 평가들을 제시하고 있다(김경희 외, 2017). 뉴스 분석들을 통해 학습자는 생산자, 구성요소, 의미구성, 이용자에 관한 질문을 통해 뉴스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의 신뢰성, 완전성,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뉴스 분석들은 의미를 구성하는 문항에서 뉴스에 내포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묻는 문항과 뉴스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문항 등 수용자

가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타자의 정의적 차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묻는 메타적 질문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뉴스 콘텐츠에 내포된 고정관념만을 물음으로써 이용자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지 못한 면이 있다. 뉴스 자극과 이용자의 기존 신념과의 일치 정도로 인해 반응하는 감정에 대한 성찰이 간과되어 있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 수용자 스스로 내재한 편견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2> 뉴스 이해와 평가를 위한 뉴스 분석틀 인용**

확인 사항		질문
분석	생산자	•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작성자가 언론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직업, 역할 등)인가?
		• 이 뉴스의 발행기관(언론사 등)은 어디인가?
		• 생산자는 왜 이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뉴스 가치)
	구성요소	• 이 뉴스의 제목은 무엇인가?
		• 이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누구인가?
		• 이 뉴스에는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은 무엇인가?
		• 이 뉴스는 6하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나요?
	의미구성	• 이 뉴스의 제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이 뉴스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 이 뉴스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나요?
	이용자	• 누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나요?
• 이 뉴스에서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나요? 있다면 왜,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요?		
평가	신뢰성	• 작성자는 믿을만한가요? (작성자 이름, 소속 등 명시)
		• 취재원은 믿을만한가요? (취재원 명시, 취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
		• 인용된 자료가 믿을만한가요? (검증된 자료 등)
		• 취재 과정은 믿을만한가요? (직접 취재, 사실관계 확인)
		• 작성자(언론사)가 보도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나요?
		• 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있나요?
	완전성	• 제목이 보도 내용을 잘 반영했나요?
		•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
		• 사건의 배경, 원인, 대안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 한 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했나요?
		•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했나요?
		•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나요?
	유용성	•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나요?
		•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에 도움을 주나요?
		•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에 도움을 주나요?

출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 6쪽(김경희·이숙정·정용국·권진희·진소연, 2017).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하는 뉴스 리터러시 개념 및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해 볼 때, 뉴스 리터러시에서 비판적 사고를 위해 인지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뉴스 콘텐츠를 소비할 때 접화되는 감정은 뉴스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비판적 읽기에서 정의적 차원의 읽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적 차원의 읽기는 뉴스를 보고,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성 수준이 높은 부정 감정에서는 이성적 대응이 힘들고(나은영, 2021), 이론적 사고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뉴스의 비판적 분석과 이해는 불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읽기에서 발화되는 감정을 낮출 수 있는 정의적 차원의 질문을 추가 하여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 2.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리버만(Liberman)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거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안녕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리버만(Liberman)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긍정 감정에 ‘정서 명명하기(affect labeling)’는 순리적이고 부정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부정 정서의 ‘정서 명명하기(affect labeling)’가 가장 큰 정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쾌한 사진이나 공포스런 장면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부정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주의 집중을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암묵적인 통제(implicit self-control)’가 작동되어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Liberman, 2015; pp. 328-330). 감정을 분석하는 활동은 뉴스 소비자가 소비할 준비를 하게 된 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뉴스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Sivek, 2018). 뉴스를 보고 유발된 감정에 명명하며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다.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를 통해 뉴스 감정을 명명하는 경험은 뉴스 정보의 내용과 신뢰도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유예시키며 비판적 뉴스 읽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용준과 권이은(2020)은 탈진실 시대(Post-truth)에서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한 뉴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문식성 외에 정서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뉴스 이용자를 주관적 수용자로 정의하며 개인의 정서와 내면 상태에 따라 정보를 인지하는 것에 주목했다. 정보의 의도성, 정보 생산자나 전달자의 목적 및 이익,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더불어 정보가 가지는 편향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정체성 등이 정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메타적 질문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주어진 정보에 대해 나는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갖는가?”, “나는 정보에 대한 이성적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정보가 나의 평소 신념, 가치관과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가”, “같은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등 자기의 감정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을 하도록 제안하였다(이용준·권이은, 2020).

2020년 UNESCO가 발간한 ‘저널리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핸드북’에서 뉴스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



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내면에서 작동하는 3가지 심리적 기제를 점검하도록 제안하였다.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으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론에 맞추어 무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가용성 발견법(Availability heuristic)에 따라 마음에 쉽게 떠오른다는 이유로 정보를 쉽게 믿을 수 있다는 점,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처리하려는 경향인 확증편향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Ireton, & Posetti, 2020).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및 선행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적 차원의 문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로 인해 뉴스 선택권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기에 선택 동기, 뉴스에 담긴 감정, 뉴스 노출로 점화된 감정, 감정 귀적 살피기, 감정에 대한 명명, 발화된 감정의 정당성, 제 3자의 감정 예측, 같은 주제 및 내용의 편향된 뉴스 소비 등의 질문에 자기 기술형 기록으로 뉴스를 접하는 태도를 파악하도록 한다(〈표 3〉 참조).

〈표 3〉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질문틀

선택 동기	이 뉴스를 왜 선택했는가?	이용준·권이은 (2020) Ireton, & Posetti, 2020).
감정 귀적 살피기	뉴스에 대해 어떤 감정이 일었는가? 그런 감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정보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응하는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정보가 평소의 가치관과 신념과 비슷하거나 다른가?	
	뉴스를 천천히 읽은 후, 감정의 변화가 있는가? 내 의견을 형성하는 데 감정의 영향이 있는가?	
감정 명명하기	이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뉴스로 인해 생긴 감정이 정당한가?	김경희·이숙정·정용국·권진희·진소연 (2017)
	심리적 한계 성찰하기	

#### IV.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뉴스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뉴스 생산자들은 이용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며 관심을 끌고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뉴스를 이해하며 점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Beckett, 2015). 알고리즘에 의해 뉴스 선호도는 더 강하게 형성되고, 감정에 기반하여 뉴스 정보에 설득되고 있다(Sivek, 2018). 특히 정치적 신념, 개인의 정체성 등과 관련한 고각성 감정 상태의 뉴스 공유자를 대상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

지고 있다.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Beckett, 2015). 이에 뉴스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 요소에 감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뉴스 리터러시 연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개념 재정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감정과 관련된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 문화연구에서만 이루어졌었다(Lecheler, 2020). 디지털 저널리즘에서는 뉴스 속에 담긴 감정과 뉴스로 점화되는 감정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본 연구는 뉴스 수용자의 올바른 뉴스 이용 감정, 태도, 신념, 정체성 등 정의적 차원의 강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뉴스와 감정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뉴스 리터러시에서 감정과 인지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정의적 차원의 교육 요소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커리큘럼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뉴스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고루 갖출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지적 의사 결정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관련된 교육 요소는 부족하였다. 사실 검증과 언론 보도 준칙을 기준으로 한 뉴스 분석에 중점을 둔 인지적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치우쳤고, 감정이 뉴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감정 인식 및 조절을 뉴스 리터러시의 주요 하위 역량으로 포함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감정 성찰과 관련한 교육 요소를 제안하였다. 내용 요소는 '감정 궤적 파악하기', '감정 명명하기', '심리적 한계 성찰하기'이다. '감정 궤적 파악하기'는 뉴스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 뉴스를 읽으면서 변화되는 개인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감정 명명하기'는 점화된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 뉴스 자극에서 유발된 것인지 기존 신념이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반응된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심리적 한계 성찰하기'는 개인에 내재한 심리적 기제를 성찰함으로써 뉴스 정보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는가를 반성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리터러시에 감정 조절 역량 포함을 제안하였다. 뉴스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개념적으로 중첩된 영역이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역량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김경희와 동료들은 접근과 통제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필요한 미디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노출과 이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김경희·김광재·이숙정, 2019) 뉴스 리터러시 역량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나친 감정 표현의 뉴스를 피하고, 뉴스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을 조절하는 역량으로서 조절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인지적 차원의 비판적 읽기 능력 제고와 더불어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 검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인지적 차원을 강조해왔다(Sivek, 2018).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가 양산되는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정보의 사실 검증은 뉴스 정보분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고각성 감정 반응을 유도하여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Sivek, 2018)에서 감정을 인식하기 위한 정의적 차원의 읽기가 필요하다.

셋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에서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 문항을 제안하였다. 뉴스로 점화되는 감정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감정 읽는 것을 정의적 차원의 뉴스 읽기라고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메타적 질문 문항을 개발하여 감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의 비판적 수용뿐 아니라 뉴스 생산과 공유를 통한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중점으로 논하면서 뉴스 리터러시를 한정된 개념으로 논의하였다. 뉴스에 대한 지식 등 인지적 차원과 감정, 정체성 등 정의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후속 연구로 이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지금까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인지적 차원과 감정 인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뉴스 리터러시 외연을 확장하고 감정과 관련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경희·이숙정·정용국·권진희·진소연 (2017).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연구보고서>, 2017-1.
- 김경희·김광재·이숙정 (2019).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한국방송학보>, 33(4), pp. 5-36.
- 김나라·신경식 (2015). 온라인상에서 부정적 편향에 따른 평판 확산 차이에 관한 연구: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14권 1호, pp. 263-276.
- 김병건 (2022). 뉴스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기사문 쓰기' 교수·학습 방안. <돈암어문학>, 42권, pp. 249-276.
- 김병수 (2017). 가짜 뉴스에 속고 싶은 사람들. <인물과사상>, (228), pp. 172-179.
- 김상희 (2011). 소비자의 정서적 즐거움과 인지적 즐거움: 인지와 감정의 동적관계. <경영학연구>, 40권 2호, pp. 255-295.
- 김세중·정용국 (2014). TV 뉴스의 선정성이 정서, 기억, 뉴스 평가 및 갈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9권 3호, pp. 253-280.
- 나은영 (2021). <감정과 미디어>, 서울: 컬처룩.
- 남영자 (2020). CNN을 활용한 방송 뉴스의 감정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4권 8호, pp. 1064-1070.
- 노들·옥현진 (2022).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와 융합>, 44권, pp. 1-26.
- 양길석·서수현·옥현진 (2021).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뉴스 수용 양상 분석. <교육문화연구>, 27권 1호, pp. 265-284.
- 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뉴스 리터러시 교육 I 커리큘럼 및 지원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 양정애·김경보 (2018). 뉴스리터러시 교육의 단기효과 연구: 중·고생 대상 시범수업 및 교육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7, pp. 172-212.
- 염정운·정세훈 (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pp. 41-80.
- 오해정·최지향 (2022).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정치뉴스의 감정적표현 정도가 뉴스품질 및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각성 및 정치토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6권 6호, pp. 271-306.
- 이숙정·양정애 (2017).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권 6호, pp. 152-183.

- 이숙정·육은희·진소연 (2021). 뉴스 리터러시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6권 4호, pp. 145-185.
- 이영훈 (2010). 태도대상에 대한 감정유형에 따른 태도 및 관련주장의 시비판단. <영유아교육연구>, 13권, pp. 145-155.
- 이용준·권이은 (2020). Post-truth 시대의 가짜 뉴스와 리터러시 교육의 중점. <리터러시연구>, 11권 6호, pp. 101-134.
- 이원섭 (2014).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10호, pp. 795-809.
- 이재원·박동숙 (2016).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재개념화: 뉴스 큐레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2권 2호, pp. 171-206.
- 이태욱·최현중·전용주 (2020). <정보교과교육론>. 서울: 한빛아카데미.
- 정미라 (2002). <어린이와 멀티 미디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숙·김성중·조성겸 (2021). 뉴스리터러시와 가짜뉴스 식별능력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권 2호, pp. 5-28.
- 최지수·윤석민(2019). 가짜뉴스 거버넌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권 1호, 127-180
- 최창식 (2021). 가짜뉴스에 대한 감정이 사실 확인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1호, pp. 5-53.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pp. 323-370.
- Beckett, C. (2015). How journalism is turning emotional and what that might mean for news. POLIS blog.
- Beckett, C., & Deuze, M. (2016). On the role of emotion in the future of journalism. *Social media+ society*, 2(3), 2056305116662395.
- Bland, C. E., Howe, M. L., & Knott, L. (2016). Discrete emotion-congruent false memories in the DRM paradigm. *Emotion*, 16(5), p. 611.
- Carretié, L., Mercado, F., Tapia, M., & Hinojosa, J. A. (2001). Emotion, attention, and the 'negativity bias', studied through event-related potent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41(1), pp. 75-85.
- Checkology. (n.d.). Ten questions for fake news detection. Retrieved from <http://www.thenewsliteracyproject.org/sites/default/files/GO-TenQuestionsForFakeNewsFINAL.pdf>
- Fleming, J. (2015). What do facts have to do with it? Exploring instructional emphasis in Stony

- Brook news literacy curriculum.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7(3), pp. 73-92
- Hobbs, R. (2010, August). News literacy: What works and what doesn't. I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onference, Denver, CO.
- Ireton, C., & Posetti, J. (2020). <저널리즘, 가짜뉴스 & 허위정보>, 김익현(역), UNESCO.
- Jamieson, K. H., & Campbell, K. K. (2006). *The Interplay of Influence: News, Advertising, Politics, and the Internet*, Wadsworth Pub Co.
- Jeong, S. H., Cho, H., & Hwang, Y. (2012). Media literacy interv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62(3), pp. 454-472.
- Kramer, M. W. (2004). *Managing uncertainty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azarus, R. S. (1982).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9), p. 1019.
- Lazarus, Richard S. (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2), pp. 124-129.
- Lecheler, S. (2020). The emotional turn in journalism needs to be about audience perceptions: Commentary-virtual special issue on the emotional turn. *Digital journalism*, 8(2), pp. 287-291.
- Lieberman, M. D. (2015). <사회적인 뇌>, 최호영(역), 서울: 시공사(원서출판 2013).
- Maksl, A., Craft, S., Ashley, S., & Miller, D. (2017). The usefulness of a news media literacy measure in evaluating a news literacy curriculu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72(2), pp. 228-241.
- Martel, C., Pennycook, G., & Rand, D. G. (2020). Reliance on emotion promotes belief in fake new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 pp. 1-20.
- Mihailidis, P. (Ed.). (2012). *News literacy: Global perspectives for the newsroom and the classroom*. New York, NY: Peter Lang.
- Miller, M. (2005). Teaching and learning in affective domain. Emerging perspectives on learning, teaching, and technology. Retrieved March, 6, 2008.
- Newman, N. (2011). Mainstream media and the distribution of news in the age of social media.
- Orgeret, K. S. (2020). Discussing emotions in digital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8(2), pp. 292-297.
- Panagiotou, N., & S. Theodosiadou. (2014). News literacy: Learning about the world. *Journal*

*of Digital and Media Literacy*, 2(1), pp. 1-14.

- Pantti, M. (2010). The value of emotion: An examination of television journalists' notions on emotionalit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5(2), pp. 168-181.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p. 1161.
- Shehata, A. (2016). News habits among adolescents: The influence of family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news media use evidence from a three-wave panel study.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9(6), pp. 758-781.
- Sivek, S. C. (2018). Both Facts and Feelings: Emotion and News Literacy.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10(2), pp. 123-138.
- York, C., & Scholl, R. M. (2015). Youth antecedents to news media consumption: Parent and youth newspaper use, news discussion, and long-term news behavio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3), pp. 681-699.
- Zajonc, Robert B.(1980), "Thinking and Feeling: Preference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pp. 151-175.
- Zajonc, Robert B.(1984), "On the Primac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9(2), pp. 117-123.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0주년 기념 봄철 학술대회

**제2세션**  
**14:15-15:45**

**406호**

**대학원 세션 (B-2)**

---

사회 : 배진아(공주대)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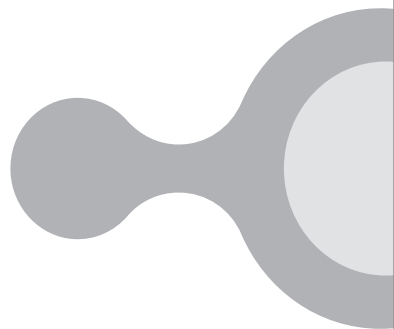
발표 : 박채림(고려대 박사과정)

토론 : 김희경(미디어미래연구소)

**2. 조직 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연구 : 재택근무 정책의 특성을 중심으로**

발표 : 최예슬(고려대 석사)

토론 : 조운경(가천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채림(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 국문초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본 규정에 대한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논의에 중점을 두어, 국내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 체계나 적용 과정에 있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우리나라 법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미국 법의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비교적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며,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어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표현의 자유

## I.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대검찰청, 2018, 367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제250조 제1항)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제250조 제2항)에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한다. 특히 후자인 낙선목적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

표 행위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고, 나아가 사회 혼란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인 당선목적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검찰청, 2018).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형법이나 다른 법률과 달리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다른 선거법 위반 조항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문한, 2020). 다시 말해,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그리고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sup>1)</sup>과 일본<sup>2)</sup>은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허순철, 2018). 나아가, 미국도 연방정부의 대통령이나 연방의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 과정을 규율하기 위해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선거운동을 특별한 규제 없이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문한, 2020).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허위의 진술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민사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공인 이론’을 전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문재완, 2011). 다만, 일부의 주(state)에서는 정치 캠페인과 관련된 허위진술 공표를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주마다 처벌에 대한 내용과 형량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허위의 진술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일정 범위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다(백태웅, 2015).

이러한 미국 법의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비교적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과 처벌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양형 등으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1) 영국의 경우 1985년 제정된 「부패 및 불법선거 방지법(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985)」에서 최초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규제했고, 현재는 2001. 2. 16. 개정된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Amendment as at: February 16, 2001)」 제106조에서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 일본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1950. 4. 15. 법률 제100호)」 제235조, 251조 및 252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1870년 「중의원의원선거법(명치3년 법률 제73호)」에 당선방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최초 규정되었으며, 1924년 「중의원의원선거법(대정14년 법률 제47호)」에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위헌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김종철, 2015; 허순철,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는 선거 캠페인과 관련한 정치적 허위진술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의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판례 및 법령을 분석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확대된 오늘날 허위사실공표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논의에 중점을 둔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제의 연혁과 구성요건을 살펴본 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 체계나 적용 과정에 있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위헌 요소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법령 등을 고찰한다. 셋째,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우리나라 법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외 판례, 법령 및 문헌들을 살피고자 한다. 국내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sup>3)</sup>와 로앤비(LawnB)<sup>4)</su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했으며,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sup>5)</sup>를 활용해 조사했다. 미국 판례 및 법령은 Westlaw<sup>6)</sup>와 Justia US Law<sup>7)</sup>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 II. 미국에서의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을 통해 연방정부의 대통령이나 연방 의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거운동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기초한 역사적 배경과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sup>8)</sup>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상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판례이론을 전개해 왔으며, 관련 규제 법안도 이와 같은 판례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정화나 손해배상을 통한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적 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다(이문한, 2021).

3) <https://glaw.scourt.go.kr>

4) <https://www.lawnb.com>

5) <https://www.law.go.kr>

6) <https://www.westlaw.com>

7) <https://law.justia.com/>

8)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전통적 법적 규제와 관련해, 미국 대법원은 1964년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sup>9)</sup>을 시작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폭을 확대했다. 공인의 경우 허위의 진술이더라도 진술자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가능했다. 즉, 공적 인물과 관련해 단순히 그 진술이 진실일 경우에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악의를 갖고 행한 악의적 표현이 아닌 경우 모두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적 악의의 중대한 구성요소와 관련해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knowingly),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무시(reckless disregard of material facts) 속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판결은 허위사실의 보도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동시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판결로 유명하다. 보통법(Common Law)상 현실적 악의는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한 증오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잘못된 표현임을 알았거나, 잘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무분별하게 이를 무시한 것을 뜻한다(문재완, 2011). 설리번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들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기 보도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정도가 되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sup>10)</sup>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는 공표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때라고 판시했다.<sup>11)</sup>

나아가, 2012년의 미국 대 알바레즈(United States v. Alvarez) 사건<sup>12)</sup>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false statements of fact)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본 사건 법률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내용의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이른바 내용 기반 규제(content-based restrictions)가 반증될 때까지 위헌으로 간주했다. 다만, 역사적 및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헌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표현의 영역은 예외라고 하면서, 정부가 예방해야 할 만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표현들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설리번 사건과 같은 판결에서 허위사실의 표현은 사상의 자유시장

9)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이 판결은 1964년 뉴욕 타임스에 기재된 전면 광고(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경찰의 강압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하여 경찰의 책임자 설리번(L. B. Sullivan)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보도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표현은 불가피하며, 토론에 이른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10) Garriosn vs. Lousiana, 379 U.S. 64 (1964).

11) St. Amant v. Thompson, 390 U.S. 727 (1968).

12) 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 709 (2012). 미국에는 무공훈장 중에서도 명예 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2005년에 제정된 일명 ‘빼앗긴 용맹법(Stolen Valor Act of 2005)’이 있다. 거짓말을 하여 이 법에 따라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국연방 대법원은 명예훈장수여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군인사칭처벌법 조항이 내용에 근거한 규제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의 진리탐구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에 비해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본 알바레즈의 판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2012년 알바레즈 판결로 인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치적 캠페인에서 허위진술도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허위의 진술을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가장 엄격한 수준(strict scrutiny)의 제한 속에서만 그러한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이 타당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나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처벌 조항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백태웅, 2015).

백태웅(2015)에 따르면, 미국은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확대 경향과 함께 법원의 허위진술(false statement)에 대한 일반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법리에 의지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libel), 구두의 명예훼손(slander), 그리고 선동행위(incitement)를 표현의 자유의 예외로 보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선거 시기의 진술을 형사처벌의 문제로 보지 않으며,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관련한 별도의 법이 없는 상황이다.

둘째, 미국에서 선거 절차나 기타 정부 기관의 공공기관의 행정적 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진술 행위에 대해서는 위증(perjury)으로 처벌하는 한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의 자격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진술을 행할 경우에는 위증과 동등한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헌법 및 법률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치적 캠페인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법이 없지만, 일부의 주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사실 진술을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현재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허위진술의 공표를 처벌하는 법을 가진 주는 알래스카(Alaska), 콜로라도(Colorado), 플로리다(Florida), 루이지애나(Louisiana),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등 약 16개 주가 있다.

이들 주에서의 선거 내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루이지애나(Louisiana)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와 같은 주에서는 선거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플로리다(Florida)나 몬태나(Montana), 오리건(Oregon) 주 등의 경우에는 민사적 처벌(civil penalty)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허위진술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오리건(Oregon)과 같은 주에서는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의 진위에 대한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무시의 결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국 선거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허위진술 처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법의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미국의 선거 캠페인과 관련한 정치적 허위진술에 대한 주법

주	내용
Alaska <sup>13)</sup>	A person commits the crime of campaign misconduct in the second degree if the person knowingly circulate election-related material without including the author's name and address; print or publish an ad or communication intended to influence an election outcome without including the words "paid for by" and the person or group's name and address; knowingly make a false communication containing information that could incite a breach of peace or harm a candidate's reputation. Campaign misconduct in the second degree is a class B misdemeanor.
Colorado <sup>14)</sup>	No person shall knowingly or recklessly make, publish, broadcast, or circulate or cause to be made, published, broadcasted, or circulated in any letter, circular, advertisement, or poster or in any other communication any false statement designed to affect the vote on any issue submitted to the electors at any election or relating to any candidate for election to public office. Any person who violates commits a class 1 or 2 misdemeanor.
Florida <sup>15)</sup>	Any candidates making false charges against opponents will face a third-degree felony and disqualification from office. Making malicious false statements about an opponent in an election is illegal. An aggrieved candidate may file a complaint with the Florida Elections Commission for an expedited hearing. A civil penalty of up to \$5,000 will be imposed on violating candidates, and funds will go to the state's General Revenue Fund.
Louisiana <sup>16)</sup>	It is essential to ensure fair and ethical elections by prohibiting any false statements about a candidate's affiliation, support, or negative comments. Violators may be fined up to \$2,000 or imprisoned for up to two years, or both.
Massachusetts <sup>17)</sup>	No person shall make or publish any false statement related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that tends to aid or injure such candidate, and any question submitted to the voters that is designed to affect the vote on that question. Violators of this section will be punished by a fine of up to \$1,000 or imprisonment for up to 6 months.
Michigan <sup>18)</sup>	A person or a person's agent who knowingly makes, publishes, disseminates, circulates, or places before the public, or knowingly causes directly or indirectly to be made, published, disseminated, circulated, or placed before the public, in this state, either orally or in writing, an assertion, representation, or statement of fact concerning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at an election in this state, that is false, deceptive, scurrilous, or malicious, without the true name of the author being subscribed to the assertion, representation, or statement if written, or announced if unwritten, is guilty of a misdemeanor.

13) AK Stat § 15.56.014 (2021).

14) CO Code § 1-13-109 (2021).

15) FL Stat § 104.271 (2022).

16) LA Rev Stat § 18:1463 (2021).

17) MA Gen L ch 56 § 42 (2021).

18) MI Comp L § 168.931 (2021).



Minnesota <sup>19)</sup>	Person guilty of gross misdemeanor if they intentionally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r dissemination of false paid political advertising or campaign material that is designed to elect, injure, promote, or defeat a candidate or ballot question; Person guilty of misdemeanor if they intentionally participate in drafting a false letter to the editor regarding a candidate or ballot question.
Mississippi <sup>20)</sup>	No person, including a candidate, shall publicly or privately make, in a campaign then in progress, any charge reflecting upon the honesty, integrity or moral character of any candidate's private life, unless the charge is true and capable of proof.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e truth of the charge is on the person making the accusation. Language that implies such a charge will be treated as a direct charge.
Montana <sup>21)</sup>	It is unlawful for a person to misrepresent a candidate's or a candidate another candidate's public voting record with knowledge that the assertion is false or with a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or not the assertion is false. A violator of this is liable in a civil action for up to \$1,000 brought by the commissioner or county attorney.
North Carolina <sup>22)</sup>	Anyone doing any unlawful act in connection with a primary/election is guilty of Class 2 misdemeanor. It is unlawful to publish false derogatory reports about a candidate in a primary/election to affect their chances. It is unlawful to impose a ballot on a blind/illiterate voter contrary to their wish, by falsely representing the ballot proposed.
Ohio <sup>23)</sup>	No person post, publish, circulate, distribute, or otherwise disseminat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a candidate, either knowing the same to be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if the statement is designed to promote the election, nomination, or defeat of the candidate.
Oregon <sup>24)</sup>	No person shall disseminate false statements of material fact regarding any candidate, political committee, or measure by means of a letter, circular, bill, placard, poster, photograph, publication, or advertisement, including through electronic or telephonic means. Violators subject to penalties
Tennessee <sup>25)</sup>	It is a Class C misdemeanor for any person to publish or distribute or cause to be published or distributed any campaign literature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in any election if such person knows that any such statement, charge, allegation, or other matter contained therein with respect to such candidate is false.
Utah <sup>26)</sup>	A person may not knowingly make or publish, or cause to be made or published, any false statement in relation to any candidat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or other measure, that is intended or tends to affect any voting at any primary, convention, or election.

19) MN Stat § 211B.06 (2021).  
 20) MS Code § 23-15-875 (2020).  
 21) MT Code § 13-37-131 (2021).  
 22) NC Gen Stat § 163-274 (2021).  
 23) Ohio Rev Code § 3517.21 (2021).  
 24) OR Rev Stat § 260.532 (2021).  
 25) TN Code § 2-19-142 (2021).  
 26) UT Code § 20A-11-1103 (2021).

West Virginia <sup>27)</sup>	Any person who knowingly makes or publishes a false statement about a candidate that is intended to affect voting is guilty of a misdemeanor. Upon conviction, they shall be fined up to \$10,000, confined in jail for up to one year, or both,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Wisconsin <sup>28)</sup>	No person may knowingly make or publish, or cause to be made or published, a false representation pertaining to a candidate or referendum which is intended or tends to affect voting at an election.

### III. 우리나라에서의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 1. 의의와 취지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제250조 제1항)<sup>29)</sup>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제250조 제2항)<sup>30)</sup>를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sup>31)</sup>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혹은 공정선거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비하여, 제2항은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두 조항은 범죄의 동기, 태양, 죄질 및 구성요건의 성격이 다르다(김종철, 2015). 이에 따라 제 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달리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범죄 양형에서는 통상 벌금형의 액수가 문제가 된다(김선화, 2021).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은 하한이 없고 상한만 3,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 5만 원

27) WV Code § 3-8-11 (2021).

28) WI Stat § 12.05 (2021).

29)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30)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31)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 250조에는 제1항과 제2항 외에도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본 선거가 아닌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부터 선고가 가능한 반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은 하한이 500만 원 이상이어서 가능한 선고형의 최하한이 500만 원(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게 되므로 당선무효를 피할 수 없게 된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제2항은 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 2. 연혁 및 입법 경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후보자들은 선거홍보물 등의 학력 및 경력에 교육기본법상 정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강좌를 수료하거나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대학원의 최고경영과정 등을 수료하였음에도 마치 정규 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수료한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는 당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할 때,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후 비정규학력 게재 자체가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조항을 개정해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 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그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고, 배포 전 단계 행위의 선전문서 소지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출생지·인격·행위’를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지역감정 조장 행위와 기타 흑색선전에 대해 부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속’을 ‘소속단체’로 변경했다. 그리고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학력을 명시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sup>32)</sup>의 규정에 의한

32)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첨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학력을 표기할 때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조항이 개정됐다.

그 후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가 그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와 같이 처벌범위를 확대한 데에는 가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특정인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공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인격’은 제외되었다. 이는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 등 다른 대상과 달리 객관적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되기 어렵고 해석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1)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및 해석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일련의 해석들을 정립 및 발전시켜 왔다.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가 된 해당 발언이 의견의 표명 혹은 사실의 공표인지 여부, 둘째,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면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범위 확정 및 사실의 공표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셋째, 행위자가 공표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고의 유무) 여부, 넷째, 초주관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당선 혹은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김선화, 2021).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처음 두 단계를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의 공표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차례대로 검토하게 된다(김선화, 2021). 각각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리가 축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객관적 요건

##### ① 의견과 사실의 구별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sup>33)</sup>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희망·추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3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판례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 적시인가 또는 의견 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34)</sup>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바 있다.<sup>35)</sup>

## ② 허위의 사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바라보고 있다.<sup>36)</sup>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sup>37)</sup>

나아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38)</sup>

그리고 본조의 허위사실은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행위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39)</sup> 이는 허위가 제250조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무적으로 진위불명이거나 허위

3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35)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위 사안에서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대해 “B 변호사가 본인의 자료를 확인한 후, A 후보가 기소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B 변호사는 A 후보가 다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일등 하던 사람이 3등이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는 상호까지 고려한 것 같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A 후보가 C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다고 판단했다.

36)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3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 26 판결 등.

3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다수.

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8).

## (2) 주관적 요건

### ① 고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40)</sup>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나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외 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그와 같이 공고된다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와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시각을 견지한 바 있다.<sup>41)</sup> 또한, 선거사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거공보 작성과정에서 후보자의 전과를 누락시켰더라도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전과없음’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sup>42)</sup>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sup>43)</sup> 또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3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합76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629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후보자가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게재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발언한 사안에서 ‘후보자가 군 입대 직전 ○○고등학교를 2년간 다녔고 군 제대 후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에 관한 사실로서 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4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50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4노166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0 판결). 국회의원 후보자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러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포털사이트 후보자 정보의 기재정보란에 게시되게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TV토론회에 참가하여 학력에 관하여 해명하면서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펼쳐 보인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2)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75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39 판결).

43)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고,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sup>44)</sup>

## ② 목적

대법원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일반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sup>45)</sup>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sup>46)</sup>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sup>47)</sup>

정범이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의 공표에 가공한 공범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목적이 없더라도 본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sup>48)</sup> 다만, 선거일의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sup>49)</sup>

## 2)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대한 쟁점의 검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에 대해 그 형사처벌의 정도나 내용을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허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게 된다(박경신,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논거는 첫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특히,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형 처벌규정까지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이문한, 2021).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4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 5190 판결 등.

4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4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47)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5 판결.

48)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3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4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도2817 판결.

수밖에 없는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권의 독립,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종철,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헌론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관련 사례 및 법령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명확성 원칙’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라고<sup>50)</sup> 언급하면서 언론·출판의 심사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 위반 논란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송기춘, 2020; 이문한, 2020).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대상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문한(2020)에 따르면, ‘경력 등’, ‘재산’, ‘학력’,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은 모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에서는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의 ‘경력등’은 같은 법 제64조 제5항의 ‘경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런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는 것을 국민에게 기대할 수 없어 감독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1)</sup>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은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재산의 종류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재산’이라고만 규정하고

50) 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2 헌마480 결정.

51)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5헌바219, 위헌소원 청구인의 주장.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유·무형의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규범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sup>52)</sup>

그리고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 자체의 불명확 및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학력’이 ‘학력(學歷)’인지 ‘학력(學力)’인지 불분명하는 주장부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중퇴’의 개념도 불분명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다.<sup>53)</sup> 학력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납세실적, 병역, 전과 기록 등과 함께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력과 관련해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학교를 중퇴한 경우 수학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sup>54)</sup>

이처럼 후보자에 등에 대한 경력, 재산, 학력 등이 거짓된 정보로 제공되면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경력, 재산, 학력과 같은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다른 법령 등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이나 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범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법문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정도로 명확하지 못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시각에서 관련 쟁점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sup>55)</sup>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이라는 요건은 ‘유리하게 할 의사’라는 주관적 표지인지 ‘객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객관적 표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공표의 사실이 선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당시의 사회적 풍토나 유권자의 의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6)</sup>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행위까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 거부권<sup>57)</sup>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이문한, 2020).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적극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와 양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52) 헌법재판소 2009. 3. 26. 2007헌바72, 위헌소원 청구인의 주장.

53)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바232, 위헌소원 청구인의 주장.

54)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바232 판결.

55) 헌법재판소 2009. 3. 26. 2007헌바72 판결.

56) 헌법재판소 2009. 3. 26. 2007헌바72, 위헌소원 청구인의 주장.

57)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2) 과잉금지원칙 여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이라고 판시해 왔으며,<sup>58)</sup>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우영, 2012). 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들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에 이문한(2020)은 다음 아래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의 위 네 가지 요건을 적용해 검토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을 포함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적 의사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등은 규제가 필요하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종철, 2015). 헌법재판소도 “금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 선거를 방지하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sup>59)</sup>

둘째,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 우리나라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 자에 대해 그 폐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라는 엄중한 처벌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위헌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로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검증을 위한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바라본다(김종철, 2015).

셋째,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해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이 선거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우선,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의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조소영, 2015).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당선목적(제250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제250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제되어 있다. 처벌이 법정형에 자유형까지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

58)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59)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판결.

기될 수 있다(이문한, 2020). 선거 기간 동안 본 조항의 적용이 남용되어 피선거권이 제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있어 법익의 균형성에서는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 초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고려해 적절한 균형성을 갖춰져야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형사처벌 규정은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제한의 사유가 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간에 법익 균형성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의 법정형 하한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선고되면 선고유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관련지어, 당선무효의 효과를 부여해 선거결과를 번복하며, 헌법상 선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종철, 2015).

#### IV. 미국과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 검토와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허위사실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며 표현의 자유 제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 일부 주에서는 허위사실 진술을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 악의, 고의성,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무시 등에 한해서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나아가, 선거에서 언급된 발언의 진위와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며, 오히려 민주적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위상은 다르며(김종현, 2019), 선거제도는 각 나라마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신옥주, 2017). 이에 따라 제도의 형식 자체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비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여기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있어 미국법과 우리나라 법의 차이점들 가운데, 처벌 대상 및 범위와 당선무효에 초점을 둔다. 먼저, 미국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은 ‘후보자’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가족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형사처벌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형은 당선목적(제250조 제1항)과 낙선목적(제250조 제2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낙선목적과는 달리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당선목적은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더 엄격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류석준, 2019).

이는 후보자 스스로를 자기검열에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250조 제1항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나아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선목적에 의한 충분한 불법성이 있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명확한 당선목적이라는 의도만이 본 규정의 목적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용과 해석의 엄격성은 본 규정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위의 객체인 허위의 사실에서의 허위와 공표행위의 개념 범위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항에서는 선거운동 때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표현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허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후보자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보이는 이러한 폭넓은 제한은 후보자 등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함에 있어 매우 소극적 행태를 보일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치명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거 캠페인은 특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대의기관의 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민수, 2009). 물론 본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처럼 비형사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 표현에 대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로 하여금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비형사적 방법으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선거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례를 보아도 선거무효와 관련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선화, 2021). 또한 미국 각 주의 선거 규정에는 우리나라의 당선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각 주에서 중범죄 등을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본 조항의 법정형 하한규정은 지나치게 과중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당선무효를 강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여 당선무효를 선고하는 과정에 있어 법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 양형이 아닌 사실인정의 단계에서 엄격한 증거판단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문한, 2020).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인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건의 결론이 왜곡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선무효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당선된 후보자가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선거를 하는 제도를 제안해 볼 수 있다(김선화, 2021). 당선무효형 대신 재신임선거를 실시할 경우 ‘문제된 부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쟁점을 재판부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신임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논란이 되는 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신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후보자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허위사실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 그러나 허위사실의 표현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재할 경우 다양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과 관련하여 보호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느냐의 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넘어, 민주적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법적 규제를 해야 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제는 각 국가의 법제도 및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달라지므로 어느 국가의 선거제도와 법제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규제의 내용도 매우 방대해 일반 유권자와 선거 후보자인 정치인도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이 그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와 별개로 제251조에서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250조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인식공격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제251조는 사실(진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두 조항이 구별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 둘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 진위불명이거나 허위에 대한 입증에 부족한 경우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구성 요건 및 판례에서의 법리를 분석하고, 현행 후보자비방죄에는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허위 표현에 대한 규제는 그 표현이 발현되는 영역과 충돌하는 기본권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심각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표현에 대해서만 신중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어떤 표현의 폐해가 심각한 악의적, 의도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두고 법적 갈등이 있었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민수 (2009).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공직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 위헌확인사건 (2007 헌마 718) 에 대한 헌법적 고찰. <언론과법>, 8권 2호, pp. 29-48.
- 김선화 (2021).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조항-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pp. 683-725.
- 김종철 (2015).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 1심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5권 2호, pp. 181-215.
- 김종현 (2019).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 60권 3호, pp. 61-102.
- 대검찰청 (2018). <공직선거법 별칙해설(제9개정판)>. 서울: 박영사.
- 류석준 (20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 <영남법학>, 49호, 69-102.
- 문재완 (2011).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권 3호, pp. 113-142.
- 박경신 (2009).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 12권 1호, pp. 1-44.
- 백태웅 (201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법과사회>, 49호, pp. 271-291.
- 송기춘 (202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 노 119 판결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73권, pp. 313-348.
- 신옥주 (2017).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방안 연구 - 독일 연방선거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5권 3호, pp. 1-33.
- 이문한 (2020).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문한 (2021).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공공의 이익'을 행하는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법학평론>, 11권, pp. 201-251.
- 이우영 (2012).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學>, 53권 2호, pp. 285-317.
- 조소영 (2015).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 <공법연구>, 44권 1호, pp. 145-166.
- 허순철 (2018). 영국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19권 4호, pp. 33-69.





## 조직 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연구 : 재택근무 정책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예슬(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석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택근무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이 조직 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규정의 특성과 조직 매력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규정의 엄격성은 의무 규정과 자발 규정 2가지 유형으로, 규정의 조직 지원은 조직 지원과 조직 미지원 두 가지로 구분했다. 참가자들은 2 (규정의 엄격성) × 2 (규정의 조직 지원) 개체 간 요인 설계 중 하나의 그룹에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배정 전에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은 조직 매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규정의 엄격성이 낮을수록, 조직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 매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그러나, 조직 지원은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매력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지 못했고,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한 재택근무 규정의 특성과 조직 매력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자율성'을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본문에 논의하였다.

중심어 : 재택근무 규정의 엄격성, 조직 지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조직 매력

\* yeseul97@korea.ac.kr

##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일상은 많은 부분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Brick et al., 2020; Nambiar, 2020). 지금까지 재택근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제도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등의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기술적 발전과 직원의 복지, 환경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Hynes, 2014; Shin et al., 2000).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사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 사원 복지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류 근무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 세계 노동자의 2.9%가 재택근무를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팬데믹 이후에는 18.8%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되었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55.1%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다(Berg, 2020). 일례로, 네이버는 구성원들에게 근무 형태를 전면 재택근무 혹은 주 3일 이상 고정 출근 중에서 선택하게 하면서,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재택근무 규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박수현, 2022). 이처럼 이제는 조직의 재택근무 도입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조직이 어떤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조직이 채택하는 재택근무 규정을 구직자 및 구성원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재택근무는 조직과 구성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복지 규정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재택근무 시, 일반적으로 조직은 구성원의 정확한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구성원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택근무 규정에 대한 조직과 구성원의 갈등을 줄이고, 재택근무가 가진 의사소통적 한계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지원 여부를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직자 또는 재직 경험자의 관점에서, 조직 규정의 특성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요인(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내 재택근무 규정이 조직 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택근무 규정 유형에 대하여 개인의 특성(i.e.,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조직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조직 평가를 위한 재택근무 규정 고안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조직 내 재택근무

조직은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채택해왔다(Barrero et al., 2021).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을 말한다. 재택근무의 본질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업무 시간과 생활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성원은 출퇴근의 압박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의 복지를 보장받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한다(Vyas & Butakhieo, 2021; Yap & Tng, 1990). 특히, 팬데믹 이후부터 재택근무 경험자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재택근무 제도는 구직자 및 이직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이 될 만큼 중요한 복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사람인, 2022). 조직은 재택근무 제도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성원이 조직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구성원의 이직률 감소, 생산성 증대, 직무 만족도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Kumar, 2021; Tudy, 2021).

한편, 재택근무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e.g., 직원 충성도 감소, 전문적 고립감, 커뮤니케이션 부족). 재택근무에서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 캐치와 캐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발생함으로써, 한정된 정보로 인한 정보의 왜곡이 쉽다(Dambrin, 2004).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구성원은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고(잡코리아, 2021),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Kurland & Egan, 1999). 따라서, 조직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을 통제 및 감시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e.g., 근무 시간 설정, 일일보고서 제출, 실시간 화상 채팅 접속). 그러나, 이러한 통제적인 규정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e.g., 사생활 침해 우려, 업무 성과 저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구성원은 재택근무에서 자율성을 침해 받는다면, 재택근무를 더 이상 복지 제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Duxbury et al., 1998).

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Moore et al., 1998), 조직은 가장 효과적인 복지 규정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재택근무 규정에서 다뤄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재택근무 규정의 엄격성(i.e., 의무 vs 자발)에 관한 것이다. 재택근무는 사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한다는 특성이 있지만, 조직은 사원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조직의 통제 및 감시

는 사원의 직장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평가와 깊게 연관될 수 있다(Cravens, et al., 1993).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규정의 엄격성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Dambrin, 2004). 하지만, 추측과 달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재택근무 규정에서는 평가가 역전될 수 있다. 직장 생활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은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을 필요악으로 여기고, 모두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조직을 더 유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Akkirman & Harris, 2004; Whalen & Gates, 2010).

## 2) 재택근무 정책의 특성

### (1) 정책이 엄격성

재택근무 규정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도의 엄격성이 구현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권장하는지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자발적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택근무 상황에서 조직이 구성원의 업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을 시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Kurland & Egan, 1999; Zuboff, 1982). 또한,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은 구성원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환경 마련에 매우 효과적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의도한 규정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Challagalla & Shervani, 1996).

조직 통제 이론(Organizational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조직은 구두 명령 또는 서면 지시 등으로 직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Gossett, 2009). 또한,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율성을 일부 포기할 수 있다(Gossett, 2009). 따라서, 구성원이 재택근무 상황에서 제한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업무 환경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구성원은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을 정당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Whalen & Gates, 2010).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규정 수용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은 여러 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재택근무를 통제 및 감시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가 직원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Gossett, 2009). 이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히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규정의 엄격성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성원은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인식하여, 의무 규정을 시행하는 조직과 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Whalen & Gates, 2010). 실제로, 카카오 본사는 실시간 음성 연결과 주 1회 대면 회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집중근무 시간(코어타임)을 4시간 적용하는 재택근무 규정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구성원들의 반발로 인해 규정 발표 하루 만에 규정

내용들을 권장 사항으로 조정했고, 집중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정다운, 2022).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자발 규정이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구직자 및 구성원은 규정의 엄격성이 높은 재택근무 규정(i.e., 의무 규정)보다 엄격성이 낮은 재택근무 규정(i.e., 자발 규정)에서 조직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Dalsey & Park, 2009).

## (2) 조직 지원

재택근무에서 조직 지원은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entley et al., 2016; Kohont & Ignjatovic, 2022). 또한, 구성원의 복지를 목적으로 조직에서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할 때, 조직이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것은 구성원과 목표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각된 조직 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은 구성원이 느끼기에 조직에서 자신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조직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Eisenberger et al., 1997). 지각된 조직 지원이 높은 구성원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서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업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사회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은 처벌보다 보상을 추구하며, 상호 관계에서 한쪽이 노력을 투자했을 때, 반대쪽이 그만큼 보답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Cook et al., 2013). 따라서, 지각된 조직 지원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의 호의적 대우에 대한 감사함으로 조직에 보답하고자 한다(Eisenberger et al., 2001; Ford et al., 2018). 이는 조직 몰입, 직무 만족도 및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Eisenberger et al., 1990; Rhoaes & Eisenberger, 2002).

한편, 사내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할 때, 조직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조직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asanmi & Krishna, 2019; Tkalac Vercic, 2021). 구성원은 자신의 복지를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을 호의적으로 평가한다(Arasanmi & Krishna, 2019). 조직이 재택근무 시,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지원(e.g., 재택근무로 인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사내 상담센터 운영, 노트북 및 주변기기 등 재택근무 용 장비 지급)함으로써, 구성원은 조직이 자신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조직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조직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해주며, 조직 지원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Akkirman & Harris, 2004). 또한, 이는 재택근무 규정의 엄격성에 따른,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완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이 엄격한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할지라도, 구성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구성원이 조직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조직의 매력

조직의 건강 및 복지 제도는 구직자 및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lsey & Park, 2009; Mehta, 2020; Pink-harper & Rauhaus, 2017; Wolor et al., 2021). 조직의 매력(Organizational attraction)은 조직의 신뢰, 직무 몰입, 직무 만족도 등과 함께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평가하는 변수로 사용된다. 조직의 매력이란, 개인이 조직을 일하기 좋은 바람직한 조직, 또는 다니고 싶은 조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조직의 매력 평가는 어떤 요인이 개인의 구직 의도와 채용 수락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Williams, 2013).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조직 환경 특성(e.g., 조직 규정, 조직문화)과 적합한 조직을 매력적으로 여기며, 그러한 조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Ehrhart & Ziegert, 2005). 따라서, 조직 규정의 특성과 사람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조직을 긍정적인 직장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의 조직 매력 평가는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은 엄격하고 통제성이 강한 조직 규정을 채택한 조직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 규정을 채택한 조직에서 조직의 매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Park et al., 2012; Truxillo & Paronto, 2002). 또한, 일반적으로 구성원은 조직 지원이 있는 조직 규정을 채택한 조직을 그렇지 않은 규정을 채택한 조직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Lee et al., 2010). 다시 말해, 조직의 채택근무 규정 특성에 따라, 구성원은 조직이 자신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해당 규정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에 대한 높은 매력 평가는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와 직무 몰입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Ehrhart & Ziegert, 2005).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

연구 가설 1-1. 사람들은 의무 채택근무 규정을 채택한 조직보다 자발 채택근무 규정을 채택한 조직의 매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연구 가설 1-2. 사람들은 규정의 조직 지원이 없는 조직보다 규정의 조직 지원이 있는 조직의 매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 4)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소통하는 모든 방식을 말한다(e.g., 이메일, 채팅, 화상회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Non-face-to-face communication competence)은 비대면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ubas et al., 2003). 조직의 재택근무 규정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및 단절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Hargie et al., 2002). 따라서, 조직 내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 모든 구성원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Kirkman & Mathieu, 2005).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은 재택근무 규정과 구성원의 조직 평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과 전문적 고립감(Professional isol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실재감은 비대면 상황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를 가리킨다(Rice, 1993). 재택근무는 스몰토크 등 캐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미묘한 말투, 표정, 행동 변화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원은 다양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단(e.g., 사내 메신저, 화상 회의)을 활용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고자 한다(Fonner & Roloff, 2012). 구성원은 자신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실재감을 높게 인식하고(한영주·이상호, 2019; Rice, 1993),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Bubas, 2006; Gunawardena & Zittle, 1997; Kirkman & Mathieu, 2005).

한편, 재택근무에서는 구성원이 조직 및 동료와의 상호 작용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Cooper & Kurland, 2002; Golden et al., 2008). 전문적 고립감은 구성원이 조직 및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가 부족하여 자신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Mann & Holdsworth, 2003),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직의 지원과 보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정도를 말한다(Bentley et al., 2016). 이는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감소,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Golden et al., 2008; Morganson et al., 2010). 또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더 잘 느끼고 사회적 실재감을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전문적 고립감을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Kirkman & Mathieu, 2005). 이는 구성원의 조직 평가로 직결될 수 있다(Cooper & Kurland, 2002).

따라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지식, 능력, 기술 측면에 제약이 있는 사람일수록(i.e.,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 낮음),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고 전문적 고립감을 낮추기 위해서 재택근무의 커뮤니케이션 규정(i.e., 엄격성과 조직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에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결과 사회적 접촉으로 정보 공유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실재감 증가 및 전문적 고립감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이 낮은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담감과 불편함으로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Fonner & Roloff, 2012). 또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이 낮은 사람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직 지원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고로,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은 조직의 재택근무 규정 특성(i.e., 엄격성과 조직 지원)과 조직 평가(i.e., 조직의 매력) 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

연구 문제 1. 재택근무 규정의 특성(i.e., 엄격성 및 조직 지원)과 조직의 매력 간의 관계는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 방법

#### 1) 참가자

본 연구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인남녀 40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최근 직급 및 재택근무 경험 여부는 <표 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1> 참가자 정보

연령	성별	최근 직급	재택근무 경험
$M = 44.25$ $SD = 13.52$	여성 (n = 200, 50.0%)	사원급 (n = 167, 41.8%)	경험 있음 (n = 176, 44.0%)
20대 (n = 80, 20.0%)	남성 (n = 200, 50.0%)	대리급 (n = 57, 14.2%)	경험 없음 (n = 224, 56.0%)
30대 (n = 80, 20.0%)		과장급 (n = 60, 15.0%)	
40대 (n = 80, 20.0%)		부장급 (n = 46, 11.5%)	
50대 (n = 80, 20.0%)		임원급 (n = 27, 6.8%)	
60대 (n = 80, 20.0%)		자영업 (n = 22, 5.5%)	
		비정규직 (n = 21, 5.3%)	



## 2) 실험 및 절차

본 연구는 2(엄격성: 의무와 자발) X 2(조직 지원: 지원과 미지원) 개체 간 요인(between-subject)으로 설계하였다. 참가자는 가상 조직(GW 그룹)의 재택근무 규정 시나리오 네 가지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받았다(부록 II 참조). 해당 시나리오는 박희선과 그의 동료들(Park et al., 2012)이 조직의 금연 규정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시나리오의 가상 조직(GW 그룹)은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서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한 설정으로,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재택근무 빈도인 주 3일로 설정하였다(김기성, 2022). 가상 조직(GW 그룹)은 조직 내 효과적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재택근무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가상 조직(GW 그룹)의 목표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은 구성원에게 즉각적 소통이 가능한 환경 조성 과 자리 비움 규정, 일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자발 규정은 구성원에게 즉각적 소통을 권장하지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한편, 가상 조직(GW 그룹)의 목표를 위해 조직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조직 지원이 활발한 조직에서는 팀장과 주 1회 일대일 면담, 사내 상담센터 운영, 재택근무용 장비 지급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후, 조작 점검 항목과 종속 변수인 조직의 매력 항목의 설문을 완료하였다.

## 3) 측정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 문항은 부록 I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 (1) 조작 점검

재택근무 규정 공고문이 두 가지 유형의 규정 엄격성과 두 가지 유형의 조직 지원으로 일관성 있게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지각된 규정 엄격성은 한 유형의 규정 엄격성이 다른 유형의 규정 엄격성보다 더 엄격하게 식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참가자들이 해당 유형의 재택근무 규정을 의무 규정(i.e., 높은 엄격성) 또는 자발 규정(i.e., 낮은 엄격성)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엄격성을 측정하였다. 지각된 엄격성 척도는 박희선과 그의 동료들(Park et al., 2012)이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 중 5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Cronbach's  $\alpha = .70$ ). 높은 엄격성(i.e., 의무 규정)의 재택근무 규정 공고문을 읽은 참가자( $M = 4.80, SD = 0.83$ ) 낮은 엄격성(i.e., 자발 규정)의 재택근무 규정 공고문을 읽은 참가자( $M = 3.93, SD = 0.80$ )보다 지각된 엄격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t(398) = 10.75, p < .001, \eta^2 = .23$ . 따라서, 지각된 엄격성을 평가한 문항들은 연구에 사용하기에

알맞게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각된 조직 지원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조직이 자신의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 지원이 있는 규정 유형이 조직 지원이 없는 규정 유형보다 구성원의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인식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이 규정의 조직 지원 여부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지각된 조직 지원 척도(Eisenberger et al., 1997; Park et al., 2012)에서 6개의 항목을 채택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 = .87$ ). 조직 지원이 있는 재택근무 규정 공고문을 본 참가자( $M = 4.80, SD = 1.02$ )는 조직 지원이 없는 재택근무 규정 공고문을 본 참가자( $M = 4.17, SD = 0.97$ )보다 지각된 조직 지원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t(398) = 6.40, p < .001, \eta^2 = .09$ . 따라서, 지각된 조직 지원을 평가한 설문 문항들은 조작에 성공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 (2) 종속 변수

참가자들은 자신이 받은 시나리오(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읽은 후, 해당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한 가상 조직(GW그룹)의 매력을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직의 매력 평가를 위해, 가상 조직(GW 그룹)이 얼마나 재직하고 싶고, 매력적인 직장인지 평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직의 매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하이하우스와 그의 동료들(Highhouse et al., 2003)이 사용한 평가 항목 중 5개의 항목을 연구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8$ ). 조직의 매력을 측정한 문항들은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설문에는 참가자들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처치물을 접하기 전에, 본인의 기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을 측정하였다. 부바스(Bubas, 2006)가 사용한 CMC 역량 평가 항목 중 4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2$ ).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측정한 문항들은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표 2〉 변수의 신뢰도, 상관 분석, 평균, 표준 편차

	PS	POS	CMC	OA
PS	(.70)			
POS	-.28**	(.87)		
CMC	-.02	.23**	(.82)	
OA	-.41**	.76**	.18**	(.88)
M	4.36	4.48	4.89	4.65
SD	0.93	1.04	0.97	1.86

\*\*  $p < .01$ .

Note<sup>#</sup>. PS = 지각된 규정의 엄격성; POS = 지각된 규정의 조직 지원; CMC =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OA = 조직 매력.

Note<sup>@</sup>. 변수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는 괄호 안에 표시된다.

## 4. 연구 결과

###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어떤 재택근무 규정 유형(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에서 긍정적인 매력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개인의 특성(i.e.,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이 재택근무 규정 특성과 조직 평가 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했다.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에서 2(i.e., 엄격성: 의무와 자발) × 2(i.e., 조직 지원: 지원과 미지원) 개체 간 요인의 주요 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를 검토하고, 〈연구 문제 1〉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에서는 독립 변수인 재택근무 규정 특성(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에 따라 종속 변수인 조직 매력에 각각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문제 1〉에서는 규정의 엄격성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간의 상호 작용 및 조직 지원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간의 상호 작용을 다루었다.

연구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두 가지 재택근무 규정 특성을 두 개의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했다. 규정 엄격성의 경우, 더미 코딩하여 의무 규정과 자발 규정을 각각 0과 1로 지정했다. 규정의 조직 지원의 경우, 더미 코딩하여 조직 지원이 없는 규정을 0으로, 조직 지원이 있는 규정을 1로 코드화했다. 또한, 조절 변수는 불필요한 다중 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시행했다. 상호 작용 효과(i.e., 2차 효과)의 경우, 각각의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i.e., 예측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 항으로 회귀 되었다.

## 2) 주요 분석

본 연구는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첫 번째 모형에 두 가지 예측 변수와 한가지 조절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주요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두 가지 예측 변수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D\_PS × D\_POS(규정의 엄격성 × 규정의 조직 지원)를 지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에 의해 규정의 엄격성 또는 규정의 조직 지원에 따른 조직 매력이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CMC X D\_PS(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 규정의 엄격성)과 CMC × D\_POS(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X 규정의 조직 지원)를 입력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의 매력이 종속 변수일 때, 모든 1차 및 2차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회귀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모형에서 독립 변수(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는 조직의 매력 평가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규정의 엄격성이 낮거나(i.e., 자발 규정), 혹은 규정의 지원이 높을 경우(i.e., 조직 지원 있음) 조직의 매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의 상호 작용 효과(i.e., PS X POS)와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i.e., CMC × PS와 CMC × PO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3〉 조직 매력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B	SE	$\beta$	t	sr
첫번째 모형					
1차 효과					
D_PS	.669	.101	.308	6.655***	.317
D_POS	.402	.100	.185	4.024***	.198
CMC	.162	.052	.145	3.138**	.156
$F(3, 396) = 25.39, p < .001, \text{adj. } R^2 = .16$					
두번째 모형					
2차 효과					
D_PS X D_POS	.083	.200	.033	.417	.021
D_PS X CMC	.014	.103	.009	.137	.007
D_POS X CMC	.248	.103	.162	2.401*	.120
$F_{\text{change}}(3, 393) = 2.08, p = .102, R^2_{\text{change}} = .01$					

\* $P < .05$ . \*\* $P < .01$ . \*\*\* $P < .001$ .

Note<sup>f</sup>. sr = 준부분상관; D\_PS = 더미코딩한 지각된 규정의 엄격성; D\_POS = 더미코딩한 지각된 규정의 조직 지원; CMC =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Note<sup>g</sup>. 모형 1과 2의 공차는 0.3 이상, 다중공선성(VIF)은 3.1 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5. 결론

본 연구는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재택근무 규정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할 때, 조직 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재택근무 규정의 규제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구직자 혹은 재직자가 선호하는 재택근무 규정을 고려함으로써, 조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채택하고, 재택근무 시 조직 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정 특성(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에 대한 조직 매력을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함께 살펴보았다. 직장인과 직장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상 조직(GW 그룹)의 재택근무 규정 공고문을 제공한 후(네 가지 유형 중 하나),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조직의 조직 매력을 평가하게 하고,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인해 재택근무 규정과 조직 평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가설 1〉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사람들은 규정의 엄격성에 따라 조직 매력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재택근무 시,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 규정(i.e., 규정의 엄격성 낮음)을 시행하는 조직의 조직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규정의 조직 지원에 따라 조직 매력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재택근무 시,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조직(i.e., 규정의 조직 지원 있음)의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사람들이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을 개별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직 지원 여부는 규정의 엄격성에 따른 조직 매력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구 문제 1〉의 결과에서는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은 재택근무 규정 특성(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과 조직 매력 간의 관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재택근무 규정을 평가할 때, 본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과는 관계없이 재택근무 규정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정의 엄격성(i.e., 의무와 자발) 및 조직 지원(i.e., 지원과 미지원)이 조직 매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택근무 규정은 여러 건강 및 복지 규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도출된 결과와 같이, 규정의 엄격성이 낮고 조직 지원이 높을 때 조직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Arasanmi & Krishna, 2019; Whalen & Gates, 2010). 이는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불가피한 커뮤니케이션 제약과 업무 진행의 불편함보다 재택근무의 본질인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 간의 상호 작용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두 영역을 분리하여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규정의 조직 지원을 통해 규정의 엄격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Park et al., 2012), 사람들은 조직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규정의 엄격

성에 따라 조직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규정의 특성(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과 조직 매력 간의 관계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Fonner & Roloff, 2012),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본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과 재택근무 규정의 특성(i.e.,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을 개별적인 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본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과는 상관없이, 규정의 엄격성과 조직 지원 여부에 따라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재택근무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만 3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사람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개인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차이로 인해 전문적 고립감을 느끼거나, 구성원 간의 정보 격차 및 업무 성과 격차가 발생하는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의 장애를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상황으로 확대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시나리오에서 가상의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e.g., 업종, 규모, 연봉)가 제시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를 직장인과 직장 경험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재택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참가자들은 자신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서 가상의 재택근무 규정 시나리오를 읽고 해당 유형의 재택근무를 채택한 가상의 조직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둘째, 한국의 경우, 재택근무가 주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몇 년 뒤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재택근무는 팬데믹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확산된 새로운 업무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재택근무의 자율성과 유연성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득실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의 재택근무 규정 특성이 조직의 매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 내 재택근무 규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직이 효과적인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조직 내 재택근무 규정을 채택할 때, 원활한 업무 수행과 긍정적인 조직 평가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과 자발 규정 중 어떤 규정이 더 효용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조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재택근무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자리잡아, 사회 구성원이 기업 선택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가 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는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택근무 규정을 고안하는 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 Retrieved 11/25/22 from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301135](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301135)
- 김기성 (2022. 4. 14). “주 3회 가장 선호”...노동자와 사업체 ‘재택근무’ 모두 만족했다. <한겨레>. Retrieved 8/24/22 from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8940.html>
- 박수현 (2022. 5. 4). “주3일 출근 또는 주5일 재택”...네이버, 근무장소 자율 보장. <조선일보>. Retrieved 8/15/22 from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05/04/O3BGOS2KYFBT5IUM7WPLABUII/>
- 사람인 (2022. 6. 13). 성인남녀 2명 중 1명, 기업 선택 기준에 재택근무 포함!. <사람인>. Retrieved 11/25/22 from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8750&listType=news](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8750&listType=news)
- 잡코리아 (2021. 8. 2). 직장인 41.4% ‘코로나19이후 사내 소통 더 어려워졌다’. <잡코리아>. Retrieved 8/17/22 from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9038&schCtgr=0&TS\\_XML=](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9038&schCtgr=0&TS_XML=)
- 장형태 (2022. 6. 10). 상시 음성채팅 연결 ‘메타버스 근무제’... 직원 반발에 물러선 카카오. <조선일보>. Retrieved 8/15/22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E9S3TDK>
- 한영주·이상호 (2019). AI 스피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디어 효능감과 사회적 실재감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9권 3호, pp. 83-95.
- Berg, J. (2020). 재택근무: 전 세계적 가능성 평가. <국제노동브리프>, 18권 11호, pp. 9-28.

### 해외문헌

- Akkirman, A. D., & Harris, D. L. (2004).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the virtual workplac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4(5), pp. 397-409. <https://doi.org/10.1108/02621710510598427>
- Arasanmi, C. N., & Krishna, A. (2019). Linking the employee value proposition (EVP) to employee behavioral outcomes.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51(7), pp. 387-395. <https://doi.org/10.1108/ICT-05-2019-0043>
- Barrero, J. M., Bloom, N., & Davis, S. J. (2021). *Why working from home will stick*. (NBER Working Paper No. 28731). Bost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ntley, T. A., Teo, S. T. T., Mclead, L., Tan, F., Bosua, R., & Gloet, M. (2016). The role of

- organizational support in telework wellbeing: A socio-technical systems approach. *Applied Ergonomics*, 52, pp. 207-215. <https://doi.org/10.1016/j.apergo.2015.07.019>
- Brick, A., Blandin, A., & Mertens, K. (2020). *Work from home after the COVID-19 outbreak*. Dallas: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http://doi.org/10.24149/wp2017>
- Bubas, G., Radosevic, D., & Hutinski, Ž. (2003). Assessment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ompetence: Theory and application in an online environment. *Journal of Information and Organizational Sciences*, 27, pp. 53-71.
- Bubas, G. (2006, June). *Competence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 evaluation and potential uses of a self-assessment measur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ference, Dresden.
- Cascio, W. (1999). Virtual workplaces: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6, pp. 1-14.
- Challagalla, G. N., & Shervani, T. A. (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1), pp. 89-105. <https://doi.org/10.2307/1251890>
- Cook, K. S., Cheshire, C., Rice, E. R. W., Nakagawa, S. (2013). Social exchange theory. In D. John & W. Amanda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61-88). Dordrecht: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4-007-6772-0\\_3](https://doi.org/10.1007/978-94-007-6772-0_3)
- Cooper, C. D., & Kurland, N. B. Telecommuting, professional isolation, and employee development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4), 511-532. <https://doi.org/10.1002/job.145>
- Cravens, D. W., Ingram, T. N., LaForge, R. W., & Young, C. E. (1993). Behavior-based and outcome-based salesforce control systems. *Journal of Marketing*, 57(4), <https://doi.org/10.2307/1252218>
- Dalsey, E., & Park, H. S. (2009). Implication of organizational health policy on organizational attraction. *Health Communication*, 24(1), pp. 71-81. <https://doi.org/10.1080/10410230802607016>
- Dambrin, C. (2004). How does telework influence the manager-employe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anagement*, 4(4), pp. 358-374. <https://doi.org/10.1504/IJHRDM.2004.005044>
- Duxbury, L., Higgins, C., & Neufeld, D. (1998). Telework and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Is telework part of the problem or part of the solution? In, M. Igarria & M. Tan



- (Eds.) *The virtual workplace* (pp. 218-255). Hershey: IGI Global.
- Ehrhart, K. H., & Ziegert, J. C. (2005). Why are individuals attracted to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31*(6), pp. 901-919. <https://doi.org/10.1177/0149206305279759>
- Eisenberger, R., Cummings, J., Armeli, S., & Lynch, P. (1997).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discretionary trea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5), pp. 812-820. <https://doi.org/10.1037/0021-9010.82.5.812>
- Eisenberger, R., Fasolo, P., & Davis-LaMastro, V. (1990).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e diligence, commit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1), 51-59. <https://doi.org/10.1037/0021-9010.75.1.51>
- Eisenberger, R., Armeli, S., Rexwinkel, B., Lynch, P. D., & Rhoades, L. (2001). Reciprocation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pp. 42-51. <https://doi.org/10.1037/0021-9010.86.1.42>
- Fonner, K. L. & Roloff, M. E. (2012). Testing the connectivity paradox: Linking teleworkers' communication media use to social presence, stress from interruptions,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9*(2), pp. 205-231. <https://doi.org/10.1080/03637751.2012.673000>
- Ford, M. T., Wang, Y., Jin, J., & Eisenberger, R. (2018). Chronic and episodic anger and gratitude toward the organization: Relationships with organizational and supervisor supportiveness and extrarole behavi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3*(2), pp. 175-187. <https://doi.org/10.1037/ocp0000075>
- Golden, T. D., & Veiga, J. F., & Dino, R. N. (2008). The impact of professional isolation on teleworker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s: Does time spent teleworking, interacting face-to-face, or having access to communication-enhancing technology matt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6), pp. 1412-1421. <https://doi.org/10.1037/a0012722>
- Gossett, L. M. (2009). Organizational control theory. In S. W. Littlejohn & K. A. Foss (Eds.), *Encyclopedia of management theory* (pp. 705-709).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Ltd.
- Gunawardena, C. N., & Zittle, F. J. (1997). Social presence as a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in a computer-mediated conferencing environment.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1*(3), pp. 8-26. <https://doi.org/10.1080/08923649709526970>
- Hargie, O., Tourish, D., & Wilson, N. (2002). Communication adults and the effects of

- increased automation: A follow-up study.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9(4), pp. 414-436. <https://doi.org/10.1177/002194360203900402>
- Highhouse, S., Lievens, F., & Sinar, E. F. (2003). Measuring attraction to organiza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6), pp. 986-1001.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8403>
- Hynes, M. (2014). Telework isn't working: A policy review.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45(4), pp. 579-602.
- Kirkman, B. L., & Mathieu, J. E. (2005). The dimensions and antecedents of team virtuality. *Journal of Management*, 31(5), pp. 700-718. <https://doi.org/10.1177/0149206305279113>
- Kohont, A., & Ignjatovic, M. (2022). Organizational support of working from home: Aftermath of COVID-19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and leaders. *Sustainability*, 14(9), 5107. <https://doi.org/10.3390/su14095107>
- Kumar, A. (2021). Impact of work from home (WFH) on the work performance of the employee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Management & Humanities*, 4(3), 4215-4223.
- Kurland, N. B., & Egan, T. D. (1999). Telecommuting: Justice and control in the virtual organization. *Organization Science*, 10(4), pp. 500-513.
- Lee, S. A., Hong, S., Cherry, J., Kang, Y. F., Yun, D., Klautke, H., & Park, H. S. (2010). Smoke-free workplace policies and organizational attraction.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2(1), pp. 96-105. <https://doi.org/10.5539/gjhs.v2n1p96>
- Mann, S., Holdsworth, L. (2003).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eleworking: Stress, emotions and health. *New Technology, Work & Employment*, 18(3), pp. 196-211. <https://doi.org/10.1111/1468-005X.00121>.
- Mehta, P. (2021). Work from home-work engagement amid COVID-19 lockdown and employee happiness. *Journal of Public Affairs*, 21(4), pp. 1-12. <https://doi.org/10.1002/pa.2709>
- Moore, S. T., Kelly, M. J. (1998). Three fundamentals of service quality in welfare reform. *Family and Community Health*, 21(2), pp. 31-39.
- Morganson, V. J., Major, D. A., Oborn, K. L., Verive, J. M., & Hellan, M. P. (2010). Comparing telework locations and traditional work arrangements: Differences in work-life balance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inclusion.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6), pp.

- 578-595. <https://doi.org/10.1108/02683941011056941>
- Nambiar, D. (2020). The impact of online learning during COVID-19: Students' and teachers'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8(2), pp. 783-793. <https://doi.org/18.01.094/20200802>
- Park, H. S., Dalsey, E., Kang, Y. F., Hong, S., & Lee, S. A. (2012). Organizational attraction toward a company that adopts a smoke-free policy.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9(1), pp. 169-189. <https://doi.org/10.1007/s10490-010-9194-8>
- Pink-Harper, S. A., & Rauhaus, B. (2017). Examining the impact of federal employee wellness programs and employee resilience in the federal workplace.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40(3), pp. 353-387.
- Rhoades, L., & Eisenberger, R. (200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pp. 698-714. <https://doi.org/10.1037//0021-9010.87.4.698>
- Rice, R. E. (1993). Media appropriateness: Using social presence theory to compare traditional and new organizational media.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9(4), pp. 451-484. <https://doi.org/10.1111/j.1468-2958.1993.tb00309.x>
- Shin, B., El Sawy, O. A., Liu Sheng, O. R., & Higa, K. (2000). Telework: Existing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10(2), pp. 85-101. [https://doi.org/10.1207/S15327744JOCE1002\\_2](https://doi.org/10.1207/S15327744JOCE1002_2)
- Tkalac Vercic, A. (2021). The impact of employee engagement,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r branding on inter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Public Relations Review*, 47(1), pp. 1-7. <https://doi.org/10.1016/j.pubrev.2021.102009>
- Truxillo, D. M., Baier, T. N., & Paronto, M. E. (2002). Reactions to organization alcohol testing and treatment program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7, pp. 31-45.
- Tudy, R. A. (2021). From the corporate world to freelancing: the phenomenon of working from home in the Philippines. *Community, Work & Family*, 24(1), pp. 77-92. <https://doi.org/10.1080/13668803.2020.1809994>
- Varona, F. (1996).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ree Guatemala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3(2), pp. 111-140. <https://doi.org/10.1177/002194369603300203>
- Vyas, L., & Butakhieo, N. (2021). The impact of working from home during COVID-19 on work and life domains: An exploratory study on Hong Kong. *Policy Design and Practice*,

- 4(1), 59-76. <https://doi.org/10.1080/25741292.2020.1863560>
- Whalen, T., & Gates, C. (2010). Watching the watchers: “Voluntary monitoring” of infosec employees. *Information Management & Computer Security*, 18(1), pp. 14-25. <https://doi.org/10.1108/09685221011035232>
- Williams, J. K. (2013). Theory of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In E. H. Kessler (Ed.), *Encyclopedia of management theory* (pp. 862-864).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Ltd. <https://doi.org/10.4135/9781452276090.n291>
- Wolor, C. W., Pratama, A., Musyaffi, A. M., Nurkhin, A., & Citriadin, Y. (2021). Understanding employee performance during work from home in Indonesia. *The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6(3), pp. 99-108.
- Yap, C. S., & Tng, H. (1990).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s telecommut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19(4), pp. 227-235. [https://doi.org/10.1016/0378-7206\(90\)90032-D](https://doi.org/10.1016/0378-7206(90)90032-D)
- Zuboff, S. (1992). New worlds of computer-mediated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60(5), pp. 142-152.

## 부록 I. 연구에 사용된 가상 시나리오

### 지각된 엄격성

1. GW 그룹의 재택근무 규정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2. GW 그룹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택근무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GW 그룹의 규정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GW 그룹의 재택근무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GW 그룹의 재택근무 규정은 자발적으로 따라도 될 것이다.\*

### 지각된 조직 지원

1. GW 그룹은 나의 성공적인 재택근무를 지원할 것이다.
2. GW 그룹은 나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3. GW 그룹은 나의 성공적인 재택근무를 진심으로 돕고자 노력할 것이다.
4.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GW 그룹은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5. GW 그룹은 나에게 대해 관심이 전혀 없을 것이다.\*
6. GW 그룹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1. 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메일, 사내 메신저, 오디오 및 화상회의 등)를 능숙하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때, 내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상대방과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호 작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호 작용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 매우 적합할 것이다.

### 조직의 매력

1. 나에게 GW 그룹은 일하기 좋은 직장일 것이다.
2. GW 그룹에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3. 나는 GW 그룹의 채용 제안이 온다면, 이를 수락할 것이다.
4. 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GW 그룹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GW 그룹이 취업처로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 역코딩이 필요한 항목

## 부록 II. 연구에 사용된 가상 시나리오

### 조직 내 재택근무 시 커뮤니케이션 의무 규정

우리 GW그룹은 전체 사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사원 복지를 위해 앞으로 일주일에 3일씩 순환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우리 GW 그룹은 모든 사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재택근무 시,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동안 사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부서 내 소통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GW 그룹의 모든 사원은 엄격히 시행되는 이 규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사내 프로그램에는 PC화면이 일정시간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자리 비움”으로 자동 변경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원은 재택근무 시, 퇴근 전에 일일보고서를 각 부서의 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모든 사항들은 필요에 의해 GW 그룹에 모니터링 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사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재택근무 시 커뮤니케이션 자발 규정

우리 GW그룹은 전체 사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사원 복지를 위해 앞으로 일주일에 3일씩 순환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우리 GW 그룹은 모든 사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재택근무 시, 자발적으로 사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원들은 재택근무 시 일일 업무상황 확인을 위한 어떠한 보고 및 증명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택근무 상황은 GW 그룹 어디에서도 모니터링되지 않으며,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사원들은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GW 그룹은 재택근무 방법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 조직 내 재택근무 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규정

우리 GW 그룹은 재택근무가 가진 한계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전문적 고립과 불편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원의 원활한 재택근무를 돕기 위해 팀장과 주 1회 일대일 면담, 재택근무로 인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사내 상담센터 운영, 노트북 및 주변기기 등 재택근무용 장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원의 원활한 재택근무와 관련된 모든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GW 그룹은 재택근무 규정 시행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직장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조직 내 재택근무 시 커뮤니케이션 미지원 규정

우리 GW 그룹은 재택근무가 가진 한계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전문적 고립과 불편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원들이 이 과정에서 원활한 재택근무 환경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권장 사항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GW 그룹은 사원의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한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원이 효과적으로 원활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부차적이며, 모든 사원은 업무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GW 그룹은 위 재택근무 규정 시행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직장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Abstract

# Non-face-to-face communication in workplac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elework policies

Yeseul Choi(Master,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purpose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telework policy rigidity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 individuals' attraction toward the organization.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whether individuals' non-face-to-face communication competence moderates the effects of telework policy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s' attraction toward the organization. The rigidity of policy was characterized by mandatory versus voluntary adherence, and the organizational support was categorized into organizations providing sufficient support versus no support.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2 (policy rigidity) X 2 (organizational support) between-subject conditions and responded to items measuring non-face-to-face communication competence. Findings showed that policy rigidity and organizational support affected attraction toward the organization. The less rigid and more organizational support led to greater attraction. Organizational support, however, did not influence the effect of policy rigidity on attraction toward the organization. Likewise, individuals' non-face-to-face communication competence did not work as a significant moderator either. These findings may indicate that people prioritize 'autonomy' over other values when it comes to telework.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thereof are further discussed in detail.

Keywords : Severity of telecommuting policy, Organizational Support, Non-face-to-face communication competence, Organizational attraction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